
교육기회균등을 위한 지역대학 지원 정책의 추진실태 및 개선 과제

오 세 희(연구책임자)

2024. 08. 28.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교육기회균등을 위한 지역대학 지원 정책의 추진실태 및 개선 과제

2024. 08.

연구책임자: 오세희 (인제대학교)

참여연구원: 김한나 (충신대학교)

이창원 (우석대학교)

이형석 (우석대학교)

이영신 (서원대학교)

(사)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

이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정책연구용역사업으로 수행된 것으로서,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한 연구자의 의견이며,
국회입법조사처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제 출 문

국회 입법조사처장 귀하

본 보고서를 「교육기회균등을 위한 지역대학 지원 정책의 추진실태 및 개선 과제」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4년 8월

연구책임자 오세희

요 약

I. 서론

- 현 정부는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 혁명, 교육격차 해소,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등을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제시함
 - 많은 지자체에서 대학-지자체-지역산업체 등의 혁신을 지원하는 ‘글로벌 대학 30’ 등의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대학에 대한 지원계획을 마련 중임. 그러나 예산 배분 및 운용의 합리성 여부 및 초기 추진계획에 부합한 추진, 점검 및 관리, 컨설팅 체계의 구축·운영이 적절한지 등에 대한 점검과 대책은 미흡한 실정임
- 본 연구는 지역대학의 지원 정책과 관련된 연구 및 정책 동향, 지역대학의 지원 관련 법률 분석, 실태에 대한 인식 조사를 통해 교육기회 균등을 위한 실질적 지역대학 지원에 대한 입법적·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II. 지역대학 지원 연구 및 정책 동향

- 국가 및 지자체의 지역대학 지원 정책 관련 연구 동향 및 정책 분석을 실시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국가 및 지자체의 지역대학 지원 정책 관련 선행연구 분석 결과, 국내 연구에서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한 대학재정지원사업 관련 연구가 수행되고 있었음. 또한, 지역대

학을 위한 재정지원 확보 및 정책 수립, 대학의 산학협력 촉진,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인프라 및 협력 체계 구축을 제시하고 있음. 국외 사례로 각국의 대학재정지원제도와 대학재정지원을 위한 별도의 전담 기구와 관련된 연구 및 지역사회와 대학 간에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대학이 함께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방향으로 변화함

- 국가 및 지자체의 지역대학 지원 정책 동향 분석을 위해 노무현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의 지역대학에 대한 지원 정책을 분석하였음
 -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 기제로서 인구감소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대학의 지속가능성과 생존, 지역소멸의 방지 등을 위해 지역대학의 발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원 정책을 강화해 오고 있음. 또한, 역대 정부의 지역대학지원은 산학협력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
 - 특히, 역대 정부의 지역대학에 대한 지원에서 지자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되어 왔고, 현 정부는 RISE 사업을 통해 지역대학에 대한 지원을 지자체 중심으로 재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III. 지역대학 지원 관련 법률 분석

- 지역대학 지원 관련 법률로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학육성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헌법 제31조 제1항은 정신적·육체적 능력에 따른 교육 보장을 의미하며 모

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는 경제적 상황, 사회적 지위 등 비전속적 능력을 포함함

- 교육기본법 제4조, 제7조, 제28조에서는 모든 국민이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등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 및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장학금과 학비보조금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교육 접근성을 규정하고 있음
- 고등교육법은 고등교육의 목적과 기본 원칙을 규정, 대학의 설립과 운영, 교육과정, 교원, 학생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 지방대학육성법은 지방대학의 교육 및 연구 역량 강화,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제공함. 제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학 및 지역 인재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함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로 지역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동법 제13조, 제22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여 사업 공모 시 일정 부분을 인구감소지역에 배정하고, 위기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인구감소지역에 대학 등 교육시설을 설치하고 유치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IV. 지역대학의 지원 정책에 대한 인식 분석

- 지역대학의 지원 정책에 대한 인식 분석과 개선 과제 도출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대학 의견수렴과 지역대학 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사항 파악을 위해 국내 대학 기획처장 및 기획, 예산팀장 등 재정지원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24. 05. 23. ~ 05. 30. (8일간)동안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음. 총 102명이 참여하였으며 SPSS 27, EXCEL 등을 활용한 빈도분석, 교차분석 등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음
- 분석 대상 응답 인원은 많지 않지만, 대학에서 실제로 재정지원 기획과 실행에 대한 프로세스 이해도가 높은 핵심 참여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분석하였음. 일반적인 교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보다 심층적 결과 도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음
- 분석 결과, 국고지원의 대학재정 확충이나 대학의 실질적 발전에 대한 기여도(대학의 의존도)는 매우 높고(5점 만점에 4.64), 기존 대학 재정지원 사업은 지·산·학 협력과 평생교육에 가장 높게 기여하며(3.82), 인력양성(3.70), 지역 정주 여건 개선(3.53), 창업지원(3.37) 등의 순으로 기여도가 높게 나타남
- 우리나라 고등교육 지원 정책의 전반적 방향성에 대해 대부분의 대학이 보통(3.18)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정책 개편을 위해 지역 및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대학지원정책 사업이 최우선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를 통해 기존 대학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지·산·학 협력과 평생교육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기여도가 낮게 나타난 지역 정주 여건 개선과 창업지원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또한, 향후 대학지원정책 사업(RISE, 글로벌대학 30)의 지자체 권한 이양과 관련하여 고등교육 부분에 대한 지자체의 전문성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대학지원정책 사업에 관한 입법 필요성 여부 분석 결과, 대부분의 대학이 보통 이상(3.84)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전문대학이 4년제 일반대학에 비해 특별법 필요성이 높게 나타남

○ 이는 대학재정지원 사업의 주 혜택 범위가 4년제 일반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별법이 필요하지 않은 답변의 경우, 대학재정지원 사업이 특별한 것이 아닌 기존 법률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보는 인식 및 기존 법률에 기반한 주요 혜택층이 전문대가 아닌 4년제 일반대학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서 기인한 결과임

○ 또한, 대학재정·세제 분야에서 규제 개혁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영역은 국가 장학금 II 유형 등록금 연계 정책 폐지, 국책과제에 대한 대응 자금 부담 폐지 및 국가 R&D 사업 간접비 사용규제 완화 등으로 나타남

V. 교육기회균등을 위한 지역대학 지원 정책 개선 방안

□ 지역대학 지원의 입법적 개선 방향 및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인식조사에서 도출된 특별법 도입의 필요성 여부에 기반하여 특별법은 특정한 사안에 대해 명확한 목표 설정과 빠른 정책 실현을 가능하게 하며 일관된 법적 틀을 제공하여 정책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또한, 기존의 법제를 유지하며 특별법 제정을 검토할 수 있기에 기존체도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요구에 신속 대응할 수 있음. 하

지만 본 연구결과 특별법을 제정하기보다 관련 내용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포함시키는 방안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의 보완 필요성 가장 선호되었음

- 지방대학육성법 개정을 통해 지역대학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음. 현재 법률이 지역대학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재정지원 방법과 규모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 개정이 필요함. 일정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대학을 지원하고, 지역별 특성에 따른 세부 육성 및 지원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함. 이를 통해 지역대학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인재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음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 역시 지역대학 지원을 명확히 포함해야 함. 현재 법에는 지역대학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며, 세출 항목이 불충분함. 고등교육·평생교육지원특별법은 목적 조항에 지역대학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세출 항목에 지역대학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지출 항목을 추가하고,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보장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지역대학 지원의 정책적 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정책적 개선 방향 및 과제로서 설문조사 분석 결과의 시사점 등과 연계하여 글로벌대학 30과 RISE 사업을 중심으로 일곱 가지 제시함
- 첫째, 정부는 대학에 대해 지원은 하되 간섭은 최소화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재정지원 사업의 목적을 명확히 구분하여 중복지원 등에 대한 우려

가 불식될 수 있도록 글로벌대학 30 사업과 RISE 사업 간의 차별화를 통한 사업 설계 및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함

- 셋째, 특정대학으로의 재정지원 쏠림 현상에 대한 방지 노력이 필요함
- 넷째, 대학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지원금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을 설정, 재정지원금의 일부를 경상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용방안 완화가 필요함
- 다섯째, RISE의 실행과 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RISE 센터의 역할과 기능의 제도적 및 재정적 기반조성 및 지방대학 육성법 등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역할 활성화 노력이 필요함
- 여섯째, 지자체의 고등교육 지원에 대한 적극적 입법 논의가 필요함
- 일곱째, 지자체의 역할 강화에 따른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고등교육과 대학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역량 함양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VI. 결론

- 본 연구는 선행연구 및 정책 분석, 현장의 인식 및 요구사항의 실질적 진단 및 관련 법률을 분석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입법적·정책적 개선과제를 도출하였기에 현장 적용가능성이 높음
- 본 연구를 통해 지역대학 지원의 입법적, 정책적 개선이 이루어져 실질적 교육 기회의 균등과 고등교육의 균형적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차 례

I. 서론 /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의 범위 2
- 3. 연구 방법 3
- 4. 본 연구의 차별성 4

II. 지역대학 지원 연구 및 정책 동향 / 6

- 1. 국가 및 지자체의 지역대학 지원 정책 관련 연구 동향 분석 6
- 2. 국가 및 지자체의 지역대학 지원 정책 동향 분석 24
- 3. 종합 및 시사점 37

III. 지역대학의 지원 관련 법률 분석 / 43

- 1. 지역대학 지원의 법적 근거 43
- 2. 헌법 제31조 제1항 45
- 3. 교육기본법 47
- 4. 고등교육법 53
- 5. 지방대학육성법 60
- 6.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70
- 7.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76
- 8. 종합 및 시사점 80

IV. 지역대학의 지원 정책에 대한 인식 분석 / 83

1. 설문조사 분석	83
2. 설문조사 결과	84
3. 종합 및 시사점	107

V. 교육기회균등을 위한 지역대학 지원 정책 개선 방안 / 110

1. 입법적 개선 방향 및 과제	110
2. 정책적 개선 방향 및 과제	117

VI. 결론 / 122

참고문헌

부록

표 차례

[표 1] 지역대학 지원 정책 관련 주요 선행연구	6
[표 2] 역대 정부별 지역발전 정책과 지방대학 정책	29
[표 3] 역대 정부별 지방대학 지원 정책 성과와 한계	33
[표 4] 글로벌대학 30과 RISE 사업의 비교	37
[표 5] 지역대학의 지원 정책 관련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주요 내용	38
[표 6] 교육기본법	48
[표 7] 고등교육법	54
[표 8] 지방대학육성법	62
[표 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71
[표 10]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77
[표 11] 설문 문항 및 설문지 구성	83
[표 12] 지방대학육성법에 근거한 각종 위원회	119

그림 차례

[그림 1] 지역주도 대학재정지원사업 체계(안)	35
[그림 2] 소속 대학 설립 유형	84
[그림 3] 신분 유형	84
[그림 4] 근무 경력	85
[그림 5] 소속 대학 유형	85
[그림 6] 소속 대학 권역	85
[그림 7] 소속 대학 재학생 수	85
[그림 8] 대학 유형별 국고지원의 대학 재정 확충 및 발전 기여도	86
[그림 9] 대학 규모별 국고지원의 대학 재정 확충 및 발전 기여도	86
[그림 10] 기존 교육부 지원 정책 문제점	87
[그림 11] 대학 유형별 기존 교육부 지원 정책 문제점	88
[그림 12] 대학 규모별 기존 교육부 지원 정책 문제점	88
[그림 13] 대학 유형별 우리나라 고등교육 지원 정책의 전체적인 방향성 분석 결과 ..	89
[그림 14] 대학 규모별 우리나라 고등교육 지원 정책의 전체적인 방향성 분석 결과 ..	90
[그림 15] 대학지원정책 사업 개편시 우선 고려사항 분석	91
[그림 16] 대학 유형별 대학지원정책 사업 개편시 우선 고려사항 분석	92
[그림 17] 대학 규모별 대학지원정책 사업 개편시 우선 고려사항 분석	92
[그림 18] 대학지원정책 사업의 대학 재정 확충이나 대학의 실질적인 발전 기여도 분석	93
[그림 19] 대학지원정책 사업의 지자체 권한 이양시 고려사항 분석 결과 ..	95
[그림 20] 대학 유형별 대학지원정책 사업의 지자체 권한 이양시 고려사항 분석 결과	95

[그림 21] 대학 규모별 대학지원정책 사업의 지자체 권한 이양시 고려사항 분석 결과	96
[그림 22] RISE 체계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분석	97
[그림 23] 대학 유형별 대학 지원 정책에 관한 특별법이 필요성 여부 분석	98
[그림 24] 소속 대학 규모별 대학지원정책 사업에 관한 특별법이 필요성 여부 분석	98
[그림 25] 특별법이 필요하지 않는 이유 분석	99
[그림 26] 대학 특별법 대신 대학지원정책 사업을 포함시킬 법률 분석	100
[그림 27] 대학유형별 대학 특별법 대신 대학지원정책 사업 포함시킬 법률 분석	100
[그림 28] 대학 규모별 대학 특별법 대신 대학지원정책 사업 포함시킬 법률 분석 ...	101
[그림 29] 대학 유형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과 관련 추가 보완 사항 ·	102
[그림 30] 대학 규모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과 관련 추가 보완 사항 ·	102
[그림 31]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과 관련 추가 보완 사항	103
[그림 32] 대학 유형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과 관련 추가 보완 사항 ·	103
[그림 33] 대학 규모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과 관련 추가 보완 사항 ·	104
[그림 34] 대학 재정·세제 분야에서 규제 개혁이 필요한 영역 1순위	105
[그림 35] 대학 재정·세제 분야에서 규제 개혁이 필요한 영역 2순위	105
[그림 36] 대학 재정·세제 분야에서 규제 개혁이 필요한 영역 3순위	106
[그림 37] 지역 대학 인식 분석에 대한 기타 의견	107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육기본법」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 정부에서는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 혁명, 교육격차 해소,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등을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 여건에 적합한 인재 양성과 교육격차 해소, 지역특화발전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지역대학 지원 등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과 입법을 추진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역 여건에 적합한 인재 양성과 지역특화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지역대학 등에 대한 지원을 효율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많은 지자체에서 대학-지자체-지역 산업체 등의 혁신을 지원하는 ‘글로벌대학 30’ 등의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대학에 대한 지원 계획을 마련 중이다. 또한 제주, 세종, 강원, 전북은 특별자치시·도 출범 이후 지역 특성에 적합한 지역발전 및 인재 양성 등을 위해 지역교육 지원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지역대학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은 확대되고 있으나, 예산 배분 및 운용의 합리성 여부 및 초기 추진계획에 부합한 추진 여부, 점검 및 관리, 컨설팅하기 위한 체계의 구축·운영이 적절한지 등에 대한 인식 점검과 대책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지역대학에 대한 선행연구 및 현 정부의 관련 정책, 유관 법률을 분석하고, 재정 지원 실태와 문제점, 현장의 요구 등을 진단하여 재정지원의 효율성과 합리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적·

정책적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나. 연구내용

이를 위하여 국가 및 지자체, 지역대학의 지원 정책과 관련된 연구 및 정책 동향, 법률 및 인식 분석을 통해 실질적 교육기회 균등을 위한 지역대학 지원 정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이는 아래와 같다.

- (1) 국가 및 지자체의 지역대학 지원 관련 연구 동향 분석
- (2) 국가 및 지자체의 지역대학 지원 정책 동향 분석
- (3) 국가 및 지자체의 지역대학 지원 관련 법률 분석
- (4) 국가 및 지자체의 지역대학 지원 정책에 대한 인식 분석
- (5) 교육기회균등을 위한 지역대학 지원정책 개선 방안 도출

2.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 지역대학 지원 정책에 대한 선행연구 및 정책 동향 분석, 법률 분석 및 인식 조사 등을 수행하고자 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역대학의 지원 정책의 현황과 지역대학 지원 정책 및 관련 법률을 살펴보고 실태조사를 통한 인식 파악을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제안한 입법적 및 정책적 개선 과제는 전반적인 지역대학을 대상으로 한 개선안을 다루고 있으므로 지역에 따라 야기되는 대학이 처한 특수한 상황과 맥락은 고려되지 않았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연구 방법으로 국가 및 지자체, 지역대학의 지원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정책 동향을 분석하는 문헌연구, 국가 및 지자체, 지역대학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법률 분석, 대학 지원에 대한 인식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또한, 입법 및 정책에 관한 실효성 높은 제언을 위해 관련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이는 아래와 같다.

가. 문헌 연구

(1) 국가 및 지자체, 지역대학 지원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2) 국가 및 지자체, 지역대학 지원에 관한 정책 동향 분석

나. 국가 및 지자체, 지역대학 지원 관련 법률 및 법률안 분석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다. 설문 및 인식조사

(1) 설문 및 인식조사

- (가) 설문 목적: 국내 대학 기획처장, 예산팀장 등 지원 정책 수행 경험자 및 직책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기회균등을 위한 지역 대학 지원 정책의 인식 분석 및 개선 과제 도출을 위한 대학의 견을 수렴하여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정책 및 입법 추진 전략과 방안 마련을 위한 기반 조사 추진

- (나) 설문조사 내용: 기본 현황조사 및 지원 정책 사업 문제점 및 향후 방향성에 대한 의견 수렴
- (다) 기본 현황: 대학 설립 유형, 신분 유형, 근무 경력, 소속대학 유형, 소속 대학 권역, 소속 대학 재학생 수 등
- (라) 대학지원 사업 문제점 및 향후 방향성에 대한 의견 수렴: 지원 정책의 대학 기여도, 기존 교육부 지원 정책 문제점 및 방향성, RISE 및 글로컬 30 대상 대학 여부, 대학 지원 정책 재개편시 우선 고려할 사항, RISE 체계 고려사항 및 발전 기여도, 대학 지원 사업 지자체 권한 이양 고려사항, 지원 정책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 여부 등

라. 입법 및 정책 제언 관련 전문가 자문

4. 본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는 교육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한 지역대학 지원 정책의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법적, 정책적 개선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그러기에 그간 국가 및 지자체가 추진한 지역 대학 지원 정책의 현황과 인식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관련 법률을 탐색하였다. 특히 지역대학의 지원 정책의 정책 변화를 통한 전반적 지원 정책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RISE 사업과 글로컬대학 30 사업의 고찰을 통해 향후 고등교육 지원 정책 사업들의 방향을 모색하고 개선 과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 가치가 있다.

그리고 행정학, 교육학, 법학, 경영학의 다방면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문헌 연구, 설문조사 및 법률안 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지역대학의 지원 정책의 인식 실태와 현장의 인식 및 요구사항을 실질적으로 진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입법적·정책적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제언 및 개선과제는 현장 적합성이 높다고 하겠다. 또한, 기수행된 선행연구들은 고등교육의 재정 지원, 법제 개선, 지역대학의 육성, 고등교육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이 제시하는 해결책과 방향성은 지역대학 지원 정책의 발전에 중요한 기초를 제공하지만, 다소 미비한 수준으로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차별성 있는 접근을 통해 다차원적인 지원체계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연구가 재정 지원에 주로 비중을 두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교육의 질, 연구 역량,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등 다차원적인 입법적 지원 체계를 설계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대학이 단순히 교육기관의 역할을 넘어서 지역대학과 지역사회, 지역 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입법적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지역대학 지원 연구 및 정책 동향

1. 국가 및 지자체의 지역대학 지원 정책 관련 연구 동향 분석

가. 국내 선행연구 분석

우리나라는 정부 수립 이후 고등교육기관에 다양한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해 재정을 지원하고자 했으며 학계에서도 선행연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국가 및 지자체의 지역대학 지원 정책 중 재정 지원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지역대학의 재정 지원 정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 연구는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지원 정책을 추진했는지를 다룬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선행연구의 동향 분석을 위해 정책연구보고서, 학술논문 등의 문헌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는 [표 1]과 같다.

[표 1] 지역대학 지원 정책 관련 주요 선행연구

저자(연도)	제목
김병주 외(2007)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고등교육재정 확보방안
이달곤, 김철회(2007)	지역혁신체제 구축과 지방대학 지원정책연구
김병주 외 (2010)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한 대학 특성화실태 분석
나민주, 장지현(2010)	지방자치와 고등교육재정의 성과와 과제
류장수 외(2010)	지방대학·전문대학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저자(연도)	제목
김정희(2013)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정책 연구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김정희(2013)	중앙정부 재정지원사업을 통해서 본 지방대학육성정책의 한계와 과제: 수도권과 동남권을 중심으로
정영길 외 (2013)	지방거점대학 육성 및 특성화 방안 연구: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중심으로
하봉운, 강호수(2013)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 지원 현황과 과제: Cooper의 4차원 정책분석 모형을 중심으로
박지윤, 조정래(2014)	지방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과 영향요인 분석: 기초자치단체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변기용 외 (2016)	지방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본 현행 대학 재정지원 사업 및 평가체제 발전 방안
변기용 외 (2017)	교육부 대학 재정지원 사업 평가체제에 대한 메타평가연구
변기용 외 (2017)	지방대학의 관점에서 본 현행 대학재정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김병주 외(2017)	고등교육 재정지원 계획 수립 연구
서영인 외 (2017)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 진단 및 개선 방안 연구
장아름(2018)	대학재정지원정책 변화에 대한 역사적 신제도주의 분석
장후은, 이종호(2018)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대학 지원사업 추진 실태와 정책과제: 산학협력사업을 중심으로
김종성(2019)	지방정부의 지역대학 지원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안
이필남, 홍지인(2019)	정부 재정지원이 대학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김선연, 김병주(2020)	대학의 재정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대학 성과 및 교육여건 차이 분석
이태호, 엄태호(2022)	지방자치단체의 고등교육재정지원에 관한 탐색적 연구: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소멸위험을 중심으로

저자(연도)	제목
신하영, 박소영(2023)	지역연계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나타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쟁점
채윤정(2023)	윤석열 정부의 지방대학 정책의 전망과 과제: RISE와 글로벌 대학 30 정책을 중심으로
정재민(2023)	옹호연합모형(ACF)을 활용한 대학재정지원정책 분석
김학표 외 (2024)	지방대학의 생존을 위한 행·재정 효율화 연구: K대학 실증사례 중심
박동찬(2024)	기초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 재정지원과 대학의 교육·연구 기능이 지역사회 경제적 발전에 미치는 영향

국가 및 지자체의 지역대학 지원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 주제별로 지역대학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포함하여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전반을 분석한 연구, 지역대학의 고등교육재정지원 확충 방안 연구, 지역대학 재정지원 현황·실태 분석과 개선 방안 연구, 고등교육재정지원을 통한 성과 분석 연구, 지역대학 육성·생존·발전 방안 연구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특히 2000년대 초반부터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주요 주체가 국가에서 지자체로 확대됨에 따라 지자체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지역연계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관련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1) 전반적인 대학재정지원사업 분석

지역대학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대학재정지원사업을 분석한 선행연구로는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체제 메타분석(변기용 외, 2017)과 대학재정지원정책의 변화과정(장아름, 2018; 정재민, 2023)에 대한 연구가 있다.

변기용 외(2017)는 2017년 교육부가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추진된 대학 재정지원사업인 PRIME, CORE, CK, LINK+, ACE+, BK21 PLUS에 대해 ERPOU 모형을 중심으로 평가환경, 평가자원, 평가수행, 평가산출, 평가활용을 분석 준거로 메타평가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대학재정지원사업이 사업 간 연계 없이 중복 및 과편화되어 운영되고 있었고, 평가위원의 전문성과 평가지표 개선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또한 중·소규모 대학이 재정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장아름(2018)은 역사적 신제도주의 관점의 통합적 접근 방식을 활용하여 1980년대부터 2018년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대학재정지원정책의 변화과정을 분석하였다. 구조적 수준인 정권교체가 대학재정지원정책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고 교육부와 기재부는 대학재정지원정책의 경로를 유지하는 반면, 국회 교육위원회와 감사원, 대학사회는 대학재정지원정책의 경로에 균열을 강하는 행위자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정재민(2023)은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의 제정을 중심으로 옹호연합모형을 활용하여 대학재정지원정책의 형성과정을 분석하였다. 정책형성과정에서 입법 찬성 옹호연합(진보진영, 대학직능단체)과 입법반대 옹호연합(보수진형, 교육청 등)이 대립하였고 정부연합이 정책중개자가 되어 관련 법을 형성하고자 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지역대학의 고등교육재정지원 확충 방안

고등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방안을 모색한 연구(김병주 외, 2007)와 지역대학을 포함하여 고등교육재정지원 계획 수립 및 진단에 관한 연구(김병주 외, 2017; 서영인 외, 2017)가 수행되었다.

김병주 외(2007)는 문민정부 이후 교육재정의 지자체 역할은 확대되어 왔지만 초·중등교육에 비해 고등교육에 대한 관심은 미흡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지자체의 대학재정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기능(교육, 연구, 봉사)을 통해 지역대학의 가치를 존중하는 공감대 확산과 장학금 재원으로 부동산 교

부세의 활용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지자체 내 학생이 지자체 내 대학 진학시 장학금을 지급하는 지역인재장학금의 대폭 확대와 지자체가 재학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들에 대해 매칭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요건 등을 제시하였다.

김병주 외(2017)는 고등교육재정지원의 이슈와 재정 소요를 추정하고, 고등교육재정지원 계획을 검토하였다. 고등교육재정지원의 이슈로 일반적인 대학재정지원방식으로 활용되는 포물러 편당은 정부지원액의 부담 가중, 효율적 운영에 대한 유인가에 대한 미흡, 통계 자료의 불확실성이 제기되었다. 특수목적재정지원의 이슈로는 사업 간 중복성, 국·공립대, 수도권, 대규모 대학의 재정지원 편중 현상과 대학 간 형평성 문제 등이 있었다. 따라서 고등교육 당면 과제별 재정소요에 기반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의 필요성과 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향후 고등교육재정지원의 기본 방향으로 학자금 지원의 지속가능성 확보, 투입 중심에서 과정 및 성과 중심의 재정지원으로 대학교육의 질 제고와 교육서비스에 대한 투자 확대, 재정지원사업의 효율적 재구조화, 대학과 지역 간 연계 등이 논의되었다.

서영인 외(2017)는 고등교육재정지원정책을 확보(충족성, 안정성), 배분(합리성, 적정성), 운용(효율성, 자율성), 평가(효과성, 책무성) 등의 단계를 진단할 수 있는 준거를 개발하여 고등교육재정지원정책을 진단하고 세부 과제를 제시하였다. 진단 결과, 확보 측면에서는 전체적인 재정지원 총액의 확대로 실제로 지원되고 있는 고등교육재정의 정확한 재산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안정적인 확보와 배분을 위한 고등교육재정지원 관련 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배분 측면에서는 고등교육재정지원의 기본계획과 실제 추진되는 정책 및 사업의 일관성 확보, 심의·의결 기구의 구성을 통한 질 관리(CQI), 사업운동을 위한 총괄기구 마련을 제시했다. 운용에서는 사업 주체와 운영 방식의 총괄적 관리가 필요하며 국고 지원 예산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표준 가이드 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집행에 관한 사항은 대학 자율 운영 방식을 고

려하고 평가에서는 대학의 의견 수렴 확대와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3) 지역대학 재정 지원 현황·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지역대학의 재정 지원 현황·실태를 분석거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었다(김병주 외, 2010; 김종성, 2019; 박지윤, 조정래, 2014; 변기용 외, 2016; 변기용 외, 2017; 이달곤, 김철회, 2007; 장후은, 이종호, 2018; 하봉운, 강호수, 2013). 특히 지역과 지자체, 지방대학의 관점에서 지방대학의 문제점과 현황을 제시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지역대학의 재정 지원은 중앙정부 외에도 지방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인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과 역할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신하영, 박소영, 2023; 이태호, 엄태호, 2022).

이달곤과 김철회(2007)는 참여정부의 지방대학 재정 지원 정책을 지역체제의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하여, 지방대학 재정 지원 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지방대학을 위주로 하는 재정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NURI), 산학연협력활성화사업, 지방연구중심대학지원사업 등으로 총 고등교육예산 중 약 10%를 지방대학 지원에 할당하였다. 그 외에도 지방대학은 BK21사업, 대학구조개혁사업, 학술연구구조성사업등에 지원하여 경쟁적으로 재정 지원을 받고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수도권대학의 연구비 수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대학 재정 지원사업의 문제점으로 재정 지원 체계의 복잡성, 성과지표의 체계성 및 타 사업과 성과의 중복, 예산집행의 적절성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른 개선 방안으로 사업 분류의 단순화를 통한 재정의 투명성 제고, 지방의 여건에 맞는 비목별 지출 비중 및 지방 소재의 기업 평가 강조 등이 논의되었다.

김병주 외(2010)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해 대학 특성화의 실태를 분석

하였다. 2008년 정부는 총 276개의 재정 지원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교육부 84개, 지식경제부 80개, 국토해양부는 32개 순으로 다양한 부처에서 추진되었다. 대학재정지원사업은 목적에 따라 인재양성사업 61개와 R&D 사업 172개, 그리고 이 두 분야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사업은 43개로 나타났다. 특성화 분야별 재정지원사업을 살펴보면 서울(312개)이 가장 많았고 충남, 경기, 부산, 경북, 경남, 광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권역에 따른 특성화 경향을 보여주었는데 수도권과 대경권은 정보·통신 분야, 동남권은 기계 분야, 충청권은 문화·예술·체육, 정보·통신분야, 강원권은 보건·의료분야, 호남권은 특화교육시스템, 제주권은 문화·예술·체육 분야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특성화 분야별 집중도에 따라 특성화 분야의 재설정 필요하며, 대학재정지원사업과 대학특성화의 관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하봉운과 강호수(2013)는 지방자치단체의 고등교육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지원사업은 지역인재의 육성지원, 장학금 지원, 연구지원, 시설지원, 프로그램의 공동 운영·지원, 인적 교류 등으로 영역을 구분할 수 있었다. 지자체의 고등교육비용 부담 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는 고등교육법 제7조 1항, 교육기본법 제25조, 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제3항이 있으며, 각 시·도별로 대학교육지원 전담조직이 구축되어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향후 과제로 고등교육재정지원의 명확한 대상과 목표 설정이 필요하고 유관 부처 및 기관과의 연계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추진 조직의 강화와 조례 및 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안정적인 제도 운영 기반 마련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박지윤과 조정래(2014)는 지방정부의 고등교육재정지원 사업 현황과 기초자치단체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규모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지방정부의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은 대학의 교육 기능을 지원하기보다 주민복지 또는 지역발전을 위한 관학 협업사업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

치단체 간에 고등교육 재정지원 규모는 현저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그 원인으로 조직의 내적 요인인 지방정부의 재정 특성 및 단체장 특성 요인보다 조직 외적 요인으로 지역 주민의 학력 수준, 지역 내 위치한 대학 수, 이웃 정부와 같은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변기용 외(2016)와 변기용 외(2017)는 대학재정지원사업 및 평가체제의 문제점으로 평가지표에 대한 적정성·공정성 문제와 정원감축이라는 과도한 정책 유도 지표와 평가지표 관리를 위한 편법 초래를 제시하였다. 또한 사업 간 유사한 평가지표 중복 및 과도한 평가 준비로 본연의 대학 역할 수행에 지장이 있으며, 단기간 재정지원사업의 추진으로 학내 갈등 유발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방대학 관점에서 비수도권 대학에 비해 수도권 대학의 평균당 재정지원액이 많고 정원대비 학생 수 감축 비율도 수도권 대학이 높기 때문에 지방대학과 수도권 대학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제기했다. 특히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지역 및 지방대학 발전 기여도에 대해 수도권과 지방대학 모두 낮은 평가를 보였고 지방대학에서 사립대·소규모 대학일수록 부정적인 태도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개선 방안으로 지역의 편차를 고려한 분리평가 실시와 대학의 특성(설립유형, 규모, 역량)을 고려한 정교한 평가와 지표 설계, 대학의 자율성 고려, 재정지원 단절에 따른 대책 및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학육성법”이라 함) 취지에 맞게 지방대학의 지원책을 구조적으로 마련하여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장후은과 이종호(2018)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계획 및 운영하는 사업은 중앙부처 대응투자사업보다 지원 금액의 규모가 2배 이상이지만, 지방자치단체 사업 가운데 산학협력에 해당되는 자체사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은 단순 보조사업이나 중앙부처사업의 대응투자사업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성과 지역발전을 고려하여 산

학협력에 초점을 둔 자체적인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지자체 기획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김중성(2019)은 지역대학에 대한 지원은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지방자치단체는 배제 또는 부수적인 역할만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했다고 보았다. 기존의 법령과 조례, 행정기구와 인력, 예산 등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 및 조례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미비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지역대학을 지원하기보다 교육부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에 대해 지자체가 매칭펀드하는 형식으로 일부 재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담 조직의 경우 불충분한 인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방대학육성법과 조례에서 지역대학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고, 지자체의 재정력을 강화하고 지역대학을 지원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 및 관련 인력을 배치하여 예산을 배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태호와 엄태호(2022)는 2015년~2019년의 지방자치단체의 고등교육재정 지원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정지원 목적과 규모의 변화, 그리고 지방소멸위험수준이 고등교육재정지원에 미치는 영향의 가능성에 대해 탐색했다. 분석 결과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수도권의 지원 규모가 큰 경우도 있으나, 비수도권 지역에서 기초자치단체를 위주로 재정지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또한 소멸위험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고등교육재정지원에 관심을 기울였는데 이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원이 경쟁력 강화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소멸위험수준이 높은 지역은 재정역량에 따라 재정지원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의 고등교육재정지원을 보완하는 투자전략이 필요하며 이는 단기적으로 재정보조금을 지원하거나 또는 장기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지원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구조적 변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신하영과 박소영(2023)은 정부와 지역이 연계하여 실시한 대학재정지원사

업의 변화과정을 분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쟁점을 제시하였다.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은 구조조정,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등의 변화되는 정책기조에 따라 변화하였고 그에 따라 지자체는 연계와 협력 등 다양한 형태로 양상이 나타났다. 지역-대학 간 연계에 대한 요구와 기대 수준에서 지자체의 역할과 정책 참여도는 단순히 선언적인 수준에서 그쳤고, 이는 촉진자의 역할보다는 또 다른 관리자에 가까운 역할이 주어지고 있었다. 또한 지역혁신주체, 대학 연구기관, 지역인재 양성기관 등 역할 간에 혼란이 나타났으며 지자체는 연계를 주도할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4) 고등교육재정지원의 성과 분석

지자체가 고등교육재정에 미친 영향(나민주, 장지현, 2010)과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지역대학을 포함한 전반적인 대학의 성과를 분석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이필남, 홍지인, 2019; 김선연, 김병주, 2020).

나민주와 장지현(2010)은 확보, 배분, 운영, 평가의 측면에서 지방자치가 고등교육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본 결과, 지방자치 실시 후 고등교육재정 지원 규모가 확대되었다고 보았다. 지자체의 지원 사업과 고등교육재정이 다원화되었고, 예산 운용 과정에서 재정운영의 분권화와 예산편성의 합리화되는 성과도 나타났다. 아울러 지역대학 발전에 대한 관심과 함께 지역사회의 대한 반응성과 책무성이 높아지며 지역연계를 통한 대학재정을 확충하려는 노력이 확산되고 있었다. 따라서 지방의 고등교육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재정의 확충과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체제의 확립, 지자체의 고등교육지원사업의 확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및 법규의 제·개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필남과 홍지인(2019)은 2014년~2018년까지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대학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정부의 대학재정지원금을

학생 1인당 수혜액으로 간주하였을 때 수도권 대학, 대형 규모, 이·공·의학 계 비율이 높았고, 연구중심대학과 재학생의 소득 수준이 높은 대학일수록 정부 재정지원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교육성파로 재학생 충원율과 취업률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였지만 수도권 대학, 대형, 연구 중심 대학은 재학생 충원율과 국제 연구 성과가 높았으며, 이·공·의학 계열 비율이 높은 대학은 높은 취업률을 보였다. 또한 전체 대학에서 정부재정지원금이 많을수록 재학생 충원율이 높았으며 취업률에는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정부재정 지원금이 많을수록 국내 연구 성과는 감소하고 국제 연구 성과가 증가하였다. 소득수준에 따라 재정 지원의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상위소득대학은 정부의 재정 지원이 재학생 충원율을 높인 반면에 하위 소득 대학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이 대학의 수월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지만, 공평성이라는 가치와 균형은 고려되지 못하였으므로 사회적·경제적으로 열악한 조건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이 많이 재학하는 대학의 경우 재정 배분 시 적극적인 가중치를 고려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선연과 김병주(2020)는 2008년~2017년까지 4년제 일반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재정지원사업 선정 여부와 횟수에 따른 대학 성과와 교육여건 차이를 분석하였다. 재정지원사업에 많이 선정된 대학일수록 대학 성과가 긍정적이었고 선정 횟수가 많은 대학의 경우 여러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대학 성과의 향상과 타 학교의 우수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대학 특성에 따라 접목시킬 필요가 있고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된 대학의 균형적인 성장을 언급하였다. 또한 한정된 재정예산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취약한 요소를 찾아 투자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5) 지역대학 육성·생존·발전 방안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사업 한계를 살펴보고 지방대학의 육성정책, 즉 지역

대학의 육성·생존·발전 방안을 살펴본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었다. 류장수 외(2010)는 대학의 연구 활동이 산학협력의 주체인 기업에 두기보다는 정부의 관심 사항에 집중하고, 산학협력의 활동 지원에서 정부는 공동연구와 맞춤형 또는 산업별 인력양성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산학협력 강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수 산학협력 프로그램의 확산과 산학협력 재정지원사업 개편과 확대,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지역대학생들을 위한 장학 및 취업 지원 확대, 비수도권 지역대학 출신에 대한 공공기관 채용목표제 도입을 제시하였다.

김정희(2013)는 참여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분석하여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박근혜 정부의 지방대학육성을 위한 함의점을 도출하였다. 참여정부는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NURI), 산학협력 중심 대학 육성 사업, 2단계 연구 중심 대학 육성 사업, 지방 연구 중심 대학 육성 사업을 추진하였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수월성 및 효과성의 관점에서 지방대학 경쟁력 기반 확충 사업을 중심으로 대학 간에 경쟁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집권 말기에는 지역대학발전방안을 발표하였고 지역대학과 지역산업 발전을 연계시키는 지역대학육성정책으로 선회하여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세계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WCU) 육성 사업, 광역 경제권 선도 사업 인재 양성 산업, 산학협력 선도 대학(LINC) 육성 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서울을 제외한 지역 소재 대학으로 지역대학을 규정하여 실질적으로 비수도권의 지방대학을 수혜자로 선정하지 않아 수도권 대학의 편중이 심화되었고 지방대학의 지원이 감소되었다. 이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틀 안에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지방대학육성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세부 과제로 지방대학을 위한 파격적인 재정 지원 및 수도권 대학편중지원 해소와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차등지원원칙 적용, OECD 평균비율인 GDP대비 1%까지 고등교육재정 확대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 김정희(2013)는 노무현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까지의 중앙정부 재정 지원사업의 한계를 살펴보고 실질적으로 지방대학육성에 필요한 함의와 대안을 모색했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은 결과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간, 수도권 명문대학과 그 외 대학 간에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이는 대다수 재정지원사업에서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을 일괄적으로 평가하고 재정지원대상 선정 시 대학의 기능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대학이 참여하도록 하는 개방, 무차별적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전국 대학을 일괄적으로 평가하여 지원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 광역권역별 명문대학 육성과 권역별 재정투자를 위해, 정부의 재정을 광역권별로 배분하고 다시 광역권 안에서 기능별로 분배하는 권역별 및 기능별 지원 체제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역균형발전과 연계된 지방대학 육성과 지역단위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정영길 외(2013)는 지방대학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으로 학령인구 감소 및 대학 수 증가에 따른 대학 진학률 저하, 각종 인프라 및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구조적 악순환 지속, 대학 자체의 구조개혁과 특성화 노력 부족, 수도권과 지방대학 간 격차 심화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이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대학의 역할과 대학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발전에 대한 관점이 부족하며 정부별로 추진된 재정지원사업이 갖고 있는 자체의 한계점을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대학 특성화와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지방대학 육성 인프라 구축을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대학특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교육, 산학협력, 연구로 구분하고 분야별로 재정지원예산의 일정비율과 사업을 유지하여 대학이 정부재정지원사업의 틀에서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

다고 보았다.

채윤정(2023)은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정책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RISE와 글로벌대학30 정책을 살펴보고 과제를 제시하였다. 대학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재정지원과 지역혁신 주체간의 협업과 지원 체계 구축 및 안정적인 대학재정지원정책의 마련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또한 지방대학정책은 대학과 지자체의 협력,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지역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산업체 유치와 인프라 개발 등이 마련되어야 함을 논의하였다.

김학표 외(2024)는 지방대학의 생존을 위한 행정 및 재정전략을 탐색하기 위해 K-대학원의 2021년과 2022년도의 재정자료 실증분석을 통해 지방대학 생존 전략을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 해당 대학원은 재정 지원의 집중화로 신입생의 충원을 증대와 연구 중심, 지역정주기반의 대학특성화 강화를 이끌었다. 또한 대학원에 관한 행정정보의 서비스 효율화 전략과 홈페이지의 글로벌화와 같은 행정의 디지털화로 국내 및 외국인 신입생에 대한 홍보와 확보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였음을 제시하였다.

박동찬(2024)은 기초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재정지원이 대학의 교육 및 연구 기능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자본, 인력, 시설이 투입되어 대학의 교육 및 연구 기능으로 고급 인력이 양성되고 지식 및 기술이 이전되면서 지역사회 내 취업 및 교육 기회의 상승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지역발전 관점에서 선순환을 이루며 기초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재정지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소재 대학 또는 인근 대학은 지역의 고유한 자원, 환경을 고려하여 대학의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단발적 또는 일시적인 사업인 고등교육재정지원을 지양하고 기초지자체별 산업구조와 인구구조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고등교육재정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및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간의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나. 외국 선행연구 분석

외국의 대학 지원 정책 관련 선행연구에서 대학재정지원을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는 주요 외국 사례를 분석한 김종성(2019)의 연구와 미국을 살펴본 연구들이 있다(류연택, 정희선, 2007; 최미리, 2008). 또한 영국의 대학재정지원 제도와 대학재정지원기구(나민주, 2003; 김수경, 2022)와 일본의 대학재정지원 정책 동향(송선영, 2007)을 분석한 연구가 있었다.

류연택과 정희선(2007)은 미국의 대학과 지역사회 협력 프로그램을 연방정부 주도 프로그램과 개별대학 추진 프로그램으로 사례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방정부는 지역사회 영리 및 비영리 단체들과 대학을 연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 목표를 설정하는데 초점을 두고, 소수민족 및 소외계층이 집중적으로 자리잡은 지역에 위치한 대학들을 선정하여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연방정부 차원의 대학과 지역사회 협력 프로그램으로 연방정부 산하 주택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가 소수민족과 관련된 재정지원 프로그램(Office of University Partnership: OUP)이 있다. 또한, 대학이 도시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인 지역사회봉사협력센터(Community Outreach Partnership Center: COPC)가 있다. 그 외에도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해 HUD가 주정부 또는 도시정부를 통해 지역사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 CDBG)이 있다. 또한 대학 차원에서 대학이 속한 지역사회개발과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 및 운영하고 있다.

일례로 존스 홉킨스 대학은 지역사회 협력 프로그램을 가장 일찍부터 시작한 대학 중 하나로 교육, 보건, 안전 강화 등의 분야에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지역사회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대학과 지역사회 간 네트워크를 강화시키고 있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은 지역사회 개발에 대한 공적 책임 의식을 강조하면서 지역사회 개발 및 재활성화 프로그램들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파트너십센터(Center for Community Partnership: CCP)를 설립하여 지역사회와 연계된 협력 프로그램 추진, 대학과 지역사회 관계에 대한 비전 제시와 네트워크 형성, 지역사회 프로그램 간의 역할 분담 및 조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연방정부는 지역사회 단체와 대학 연구자들을 네트워크화 할 수 있는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프로그램의 운영 목표 및 방향 설정, 재정적 지원에 관심을 두며 프로그램 운영 주체에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었다. 대학별 지역사회 협력 프로그램은 파트너십을 통해 참여 주체간의 공동책임과 공동성이 강조되며, 지역사회가 처한 상황에 따라 지역 수준에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인력 및 자원에 기반하여 프로그램이 개발·운영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최미리(2008)는 미국 사립대학인 Smith College, Barnard College, Mount Holyoke College, Wellesley College의 교육재정을 살펴보았다. 미국 사립대학의 운영수익은 등록금, 지원금, 기본재산수입이 각 3분의 1로 고르게 구성된 반면, 한국의 사립대학 수입은 대부분 등록금을 차지하고 있었다. 미국 여자대학의 경우 등록금이 약 5분의 3, 지원금과 기본재산 수입이 나머지를 차지하지만, 한국 여자대학은 등록금이 약 5분의 4를 차지하고 지원금과 기본재산수입의 비중이 5분의 1로 낮았다. 미국 여자대학은 한국 여자대학보다 높은 등록금을 받고 있지만, 높은 장학금 지급액과 등록금 환원율을 보였다. 이는 등록금 및 인건비를 자율로 책정할 뿐만 아니라 자율적인 투자 정책으로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고자 하며 대학이 기부금 유치를 위해 전심으로 노력하여 탄

탄한 재정구조를 확립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정부의 통제 중심의 교육재정정책으로 대학 투자 수익율이 낮고, 정부의 대학에 대한 지원도 저조한 실정임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한국 대학은 기부금 유치와 투자를 통한 수익률로 기본재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나민주(2003)는 영국의 대학재정지원제도를 살펴본 결과 영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대학교육에 대한 공공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대학재정지원을 전담하는 법정기구들이 역할을 그 담당하였는데 이러한 기구(HEFCE, HEFCW, SHEFC 등)를 통해 대학재정의 전체 약 40%를 지원하고 있었다. 즉 대학 정부지원금의 총액은 중앙정부가 결정하지만, 각 대학에 대해 재정지원금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재정지원기구의 권한이었다. 즉 정부는 대학생 수 및 대학 교육 참여율에 대한 정부의 정책, 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대학교육에 대한 재정지원규모를 결정하고 대학재정지원기구들은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대학별 금액을 결정한다. 재정지원기구들은 기관별 금액을 배분공식(Formula)을 활용하여 결정하되, 일괄보조금(block grant)로 지급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재정 운용시 회계 지침, 연차보고서, 성과공개 등을 통해 책무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경(2022)은 한국(NRF)과 영국의 대학재정지원기구(HEFCE)를 분석하였다. 영국의 고등교육재정위원회(HEFCE)는 1992년 계속고등교육법을 통해 대학과 비대학(Polytechnics, Colleges and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Voluntary College, Independent Further Education Colleges) 구분을 폐지함에 따라 재정배분기구의 재편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HEFCE는 정부와 대학의 사이에서 중재자(broker)로서 결합기제(coupling), 완충(buffer)기능을 수행하며 자금 지원 방식도 일괄교부금 외에 대여(loan), 지불(payment) 등으로 확대하면서 대학평가의 기능까지 수행하며 대학의 성과와 재정지원의 연계를 정교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선영(2007)은 일본의 대학재정지원정책 동향을 분석하였다. 2000년 이후 문부과학성은 국·공·사립대학을 통한 대학교육개혁의 지원에 초점을 두고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대학이 시행하는 개혁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쟁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특색있는 대학을 선정 및 지원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연구 거점형성과 대학원 교육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각종 대학재정지원과 대학정책들은 경쟁적 자금 확보로 시장 논리에 기반한 경쟁체제를 추구하였다. 정부는 대학지정지원정책에서 선정된 사업단에 대해 단계적으로 재정을 지원하였고 사업 중에도 사업 내용의 개선을 추구하여 사업 종료 후 발전한 형태의 모습을 추구하였다. 또한 재무성, 산업경제성도 각종 개혁사업을 통해 대학에 직·간접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면서 대학개혁은 각 부처간 충돌이 있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정부의 역할은 조력자 및 지원자 성격으로 변모하였다. 기존의 재정지원 방식이 거대 규모의 대학에 집중되었다면, 많은 대학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의 대학들도 각 대학의 사정에 적합한 사업을 선택하여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대학의 책무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전심사, 중간평가, 사후평가가 이루어졌으며 문부과학성이 재정을 배분하지만 독립행정기구(과학기술진흥기구 등)와 경제부처 등과의 연계 및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언급하였다.

김종성(2019)은 외국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대학 지원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일례로 영국은 2013년 12월 대학 비즈니스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기업촉진기구 조성을 발표하였고 이는 첨단산업과 스타트업기업이 대학의 연구자와 협력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특별지역이었다. 아울러 고등교육혁신기금(Higher Education Innovation Fund)를 통해 대학이 기업 및 지역단체와 정보 교환과 지식 생산으로 지역에서 대학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

본의 경우 지역사회와 대학 간의 협력으로 대학콘소시엄교도가 대표적인 사례로, 대학과 기업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대학이 발전하도록 시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코하마시도 대학-도시 파트너십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즉, 일본은 관련법 개정과 정부지원을 통해 대학 및 지자체의 협력사례가 증가하고 있었다. 문부과학성은 COC(Center of Community) 사업을 시행하고 대학-지역 협력 촉진을 위해 대학당 연간 최대 5천 8백만엔을 5년간 지원하였다(김태현, 이태희, 윤기학, 2017).

이상으로 외국의 대학재정지원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각국에서는 정부가 대학을 직접적인 재정지원 외에도 지역사회와 대학 간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역에서 함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정 국가에서는 정부와 대학 간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는 대학재정기구를 통해 대학별 재정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재정지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었다.

2. 국가 및 지자체의 지역대학 지원 정책 동향 분석

가. 역대 정부별 지역대학 지원 정책

역대 정부는 지역대학에 경쟁력과 지속성을 위해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왔다. 이러한 지원 정책에 대해 대부분의 대학들은 재정지원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대학재정은 대학의 운영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대학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투입 요인의 하나이며, 특히 정부의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은 대학교육의 효과성, 자원 활용의 효율성, 대학의 운영행태 등을 연결하는 중요한 기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윤정일, 2004). 반면, 최근 우리 대학은 학령인구의 감소 등을 포함한 다양한 환경 변화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과 동시에 구조조정을 비롯한 경쟁력 강화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는 실

정이다. 특히,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의 악화 등으로 자구노력을 요구받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도 지속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나라 대학들은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을 익숙하고 당연한 것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정부는 대학교육에 설립자부담원칙과 수익자부담원칙의 적용으로 대학재정지원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러한 기조로 인해 대학재정지원 규모는 크지 않았으며 모든 대학에 지원하는 일반재정 지원이 대세였으며, 평가를 통한 차등지원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송기창, 2000)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지금과 같이 대학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교육재정 GNP 5% 확보정책에 따라 교육예산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대학지원예산도 크게 늘어나게 되었고 정부는 대학의 다양화 및 특성화 지원 등을 통해 대학의 질적 수준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송기창, 2000).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안 발표 이후 지방대학 특성화지원, 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 지원, 국제전문인력 양성지원 등 대학재정지원사업들이 평가와 연계하여 시행되면서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고 동시에 탈락된 대학들의 불만 역시 증대 되었다(송기창, 2000).

이에 따라, 대학의 재정지원사업은 모든 대학에 지원하는 일반지원에서 평가를 통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으로 변화되었는데, 대학평가 결과에 따른 선별적 차등지원 도입은 대학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재정배분 정책이자 시장모형을 근간으로 한다(윤정일, 2004). 현재와 같은 대학평가에 의한 재정지원을 일반화하여 정부의 평가기능이 강조하고, 재정지원 방식은 대학 간 경쟁, 정부주도의 평가에 의한 선별적이고 차등적인 지원의 특수목적지원사업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윤정일, 2004). 이러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연혁에 있어서 1990년대 중반을 전후로 큰 변화가 나타났는데, ‘대학재정지원사업과

평가의 연계'와 모든 대학에 지원하는 '일반지원사업의 폐지'라 할 수 있다(문보은 외 2021),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추진으로 일정 부분 일반재정지원이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대학재정 지원과 관련된 거버넌스는 중앙정부가 대학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구조로 이루어지다가 참여정부가 지역 소멸의 위기를 국가적 당면 과제로 인식하였다.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지역대학을 전면 부각하여 지원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최정윤 외(2022)를 토대로 역대정부별 지역대학 재정지원 정책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참여정부는 3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을 통해 사회국가균형발전을 국정운영의 핵심과제로 제시하였다. 고등교육 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근거한 경쟁체제로의 전환과 산업발전과 경제부흥을 위해 인적자원 개발 주체로서 대학의 역할 강화를 강조하였다. 이전 정부에서 시작된 경쟁 기반의 대학재정지원과 대학구조조정, 대학 특성화는 참여정부 고등교육 정책을 이끄는 주축이었다(교육인적자원부, 2005). 특히, 국가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서 내세운 참여정부는 지방대학 육성을 고등교육 정책의 전면에 내세웠다. 국가균형발전 중장기계획의 7개 기본과제 중에서 교육부 주관 과제는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로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운영지원, 지방대학 육성 및 인적자원 개발, 지역혁신주체 역량 강화, 신산학협력 모델의 정립 및 확산 등 4개이다. 특히 지역혁신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RIS)는 참여정부의 지방대학 정책을 이끄는 핵심으로 볼 수 있다(최정윤, 2022).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는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의 전략을 지역발전과 연계된 특성화 분야를 집중지원으로 설정하고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이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졸업생들의 취업 능

력을 제고하였다. 궁극적으로는 지자체, 산업체, 연구소, 지역 시민단체 등이 상호협력에 기반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대학이 중핵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대학을 거버넌스의 중심축으로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003년 4월에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정책의 종합 계획을 제시한 ‘지방대학발전 방안’에서는 지역혁신시스템의 주축으로서 지방대학의 역할을 제시하고 지방대학이 산·학·연·관 네트워크의 허브 기능의 수행을 강조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경쟁과 효율성, 실용주의를 강조하고 지역발전정책의 비전을 일자리와 삶이 보장되는 경쟁력 있는 지역 창조로 설정하고 추진하였으며, 광역경제권전략을 통한 분산중복 투자를 지양하고 시·도 협력을 도모하고 지역 간 연계 협력 추진 등을 강조하였다. 고등교육 정책은 대학의 자율성 확대와 이를 보완할 대학 책무성 제고,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 이명박정부는 정부 출범 초기에는 지방대학 지원을 위한 종합 정책을 발표하거나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둔 재정지원사업을 별도로 추진하지 않았다. 대신 경쟁과 수월성에 기반한 집중지원의 논리에 따라 지방대학 경쟁력 기반 확충 사업으로 대학 간 경쟁 풍토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즉 지방대학만을 대상으로 한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대신 자구노력을 기울이는 대학을 지원하는 접근방식을 취하였으나(신현석 외, 2011), 집권 말기에 제시된 ‘지역대학 발전방안’에는 지역대학을 지역성장거점을 육성하여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다만, 이명박정부의 지역대학 발전방안에서 지역대학은 비수도권대학을 통칭하는 지방대학과는 다른 개념으로 서울을 제외한 인천과 경기도 소재의 수도권 대학을 포함하였다(최정운 외, 2022), 이전 정부에 비해 고등교육 정책에서 지방대학 육성에 대한 강조가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중앙정부 중심의 지방대학을 지원하는 정책은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산학협력의 강조는 대학이 산업계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는 기제로 작용하였다.

박근혜정부는 지역발전 정책에 대한 관심이 수도권과 지역 간의 불균형이 경제적 문제 뿐만 아니라 삶의 질 격차로 확대되는 것을 지역의 주요 문제로 인식하여, 이의 개선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였다(지역발전위원회, 2013), 5개의 중점추진과제 중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에서는 지역교육의 혁신을 통해 지역인재들이 지역에서 교육받고 지역에서 일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초중등교육의 여건 개선, 지방대학 육성, 지역인재와 기업의 선순환 성장,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교육을 연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박근혜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은 2013년 9월에 발표된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에서 제시되었는데,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열린 고등교육체제 구축, 고른 접근성과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 보장, 학생 중심의 잘 가르치는 대학 육성,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연구역량 강화로 설정하고 4개 영역에 걸쳐 13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교육부, 2013). 고등교육 정책의 특징은 과거 정부에서는 고등교육 정책의 주요 아젠다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고등직업교육과 평생교육에 관심을 기울였고 특히 지역발전의 중핵 역할을 담당하는 대학 육성을 강조하면서 지방대학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이며, 국정과제 중 지방대학 지원 확대는 부처 간 협업과제로 추진되어 대학재정지원에서 교육부의 조정 역할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었다. 특히, 지방대학 육성방안의 일환으로 지방대학육성 특별법 제정을 추진과제로 계획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정을 통하여 대학재정 지원에 대한 지역단위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문재인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은 중앙정부의 획일적 계획에 의한 처방보다는 지역 주도의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러한 접근은 참여정부 때보다 지역위기가 더욱 심각해지고 복합적인 문제로 진화되어 중앙정

부의 획일적 개입에 의해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한다.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을 교육 슬로건으로 제시한 문재인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은 대학의 자율 혁신 지원, 공유·협력을 통한 대학혁신, 고등교육 공공성 강조하여 국립대학 중심의 대학재정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도 고등교육정책의 주요 과제로서 추진되었다(교육부, 2021). 특히, 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RIS) 사업은 지자체, 대학, 지역협업기관 등이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이 선정한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교육체제 개편과 연구개발을 포함한 지역협업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에서 지자체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지자체는 총사업비의 30%를 대응투자하고 핵심분야를 선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지자체장, 대학총장, 협업기관장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업위원회가 사업의 심의의결기구 기능을 가지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대학재정지원 방식에서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 모델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대학의 협력 및 공유가 강조되고, 이전 산학협력 사업에서는 단순 지원·협력에 머물렀던 기업, 지역협업기관도 과제 수행을 통해 직접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었다는 측면에서(교육부, 2020) 거버넌스의 구축과 역할이 확대되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역대 정부별 지역발전 정책과 지방대학 정책을 요약하면 다음 [표 2]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표 2] 역대 정부별 지역발전 정책과 지방대학 정책

구분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지역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자리와 삶이 보장되는, 글로벌 경쟁력 갖춘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고른 기회 보장. 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혁신적 포용 성장중심 국가균형발전 지역주도의

구분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 •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2004-2008) • 균형발전특별회계 도입 • 지역혁신체계 구축 •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p>발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균형발전보다 지역특성 발전전략 • 광역경제권 전략 • 지역발전 5개년계획 (2차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2009-2013 수립) 	<p>활권 중심의 주민 정책 체감도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행복생활권구축, 맞춤형패키지 • 지역발전 5개년계획(3차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2014-2018) 수립 	<p>자립적 성장 기반 마련에 추진체계/특별회계/계획체계 정비와 개편: 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차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18-2022) 수립
고등교육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산업 발전과 대학경쟁력 연계 • 선택과 집중 경쟁체제로 전환 시작 • 대학특성화와 대학구조개혁 강조 • 산학협력 제도정비 및 재정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택과 집중 경쟁체제 강화 • 시장원리 작동기제에 의한 책무성 확보,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 대학정보공시제 도입 • 평가기반 차등적 재정지원을 통한 구조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수요와 고등교육 공급 간 미스매치 해소 • 강력한 특성화 전략, 재정지원확대 (CK, ACE, PoINT, BK+, LINC+) • 평생교육, 전문대, 지방대 강조 • 정원감축 중심의 강력한 구조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의 자율혁신 지원, 공유·협력을 통한 대학혁신, 고등교육 공공성 강조 • 대학 자율적인 정원감축 • 대학재정지원 사업의 통합·개편: 대학혁신 지원사업, 평생교육지원사업

구분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지방대학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대학 발전방안 발표 • NURI사업 • 산학협력중심 대학육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적 지방대학 지원 정책 • 산학협력사업 통합재편 →LINC 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대학육성 특별법 제정, 제1차기본계획 • 적극적 지방대학 정책, 지역발전정책과 지방대학 정책 연계 • 부처 협업과제로 지방대 정책 추진: 지방대학 육성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대학 역할 강조, 제2차기본계획 수립 • 지방대학 특화 재정지원사업 확대 • 국공립대 중심의 지방대학 지원 • LINC 3.0,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출범

자료 : 최정운 외(2022: 55)를 토대로 수정·보완

나. 역대 정부별 지역대학 지원 정책 성과와 한계

그 동안 정부는 대학지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대학의 혁신과 경쟁력 제고, 구조조정을 유도해 왔으나 역대 정부별로 지향하는 바와 성과는 차이가 있었다. 특히,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정부가 고등교육을 지원하고 방향을 유도하는데 유용한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정부의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정책의 성과는 국가균형발전의 큰 틀에서 지방대학육성의 방향과 내용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종합 계획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지방대학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대규모 재정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실현을 지원하였으며 처음으로 지방대학육성을 고등교육 정책의 주요 의제로 정하였다는 것이다(최정운 외, 2022).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중심이 되기 보다는 중앙정부 차원의 주도로 추진되었으며,

산학연관 협력에서도 양적 교류 실적은 있었으나 실질적 협력은 제한적인 등 대학이 주도적으로 역할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당초 계획하였던 지방대학육성 지원법 제정에 실패하여 지방대학 지원 정책의 체계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었다.(김정희, 2013). 나아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계획된 다양한 정책수단들을 상호연계하여 집중력 있게 추진하지 못했다는 점은 중요한 한계로 지적된다(최정운 외, 2022).

이명박정부는 대학을 산학협력 친화형 체제로 개편하고 이를 통해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전략수립은 대학과 산업계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하였으며 이후에도 강조되어 오고 있다. 다만, 수월성과 효과성의 관점에서 대학 간 경쟁을 강조한 나머지 국립대와 사립대를 동일한 경쟁 구도에 두고 지원함으로써 특성화보다는 대학 간 동일화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대학재정지원에서 지방대학과 수도권 대학을 동시에 경쟁하게 함으로써 수도권 대학, 지방대학 중에는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 편중 지원의 결과를 초래하였다(김정희, 2013).

박근혜정부의 지방대학 정책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정을 통하여 지방대학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지방대학 정책의 전반적 조율을 돕는 기제를 마련하고(최정운 외, 2022), 지역단위 차원에서 대학지원 및 인재양성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옹고 법제도와 기본계획, 재정지원사업을 연계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박근혜정부의 지방대학 정책에서 추진한 지역 산업과 대학 특성화 간의 연계의 강조, 산학협력 및 평생교육을 통한 지방대학 문제 해결, 지역의 국공립 대학 간 연계·협력, 부처 간 협력을 통한 지방대학 문제 해결 노력, 대학-산업체-지자체-

중앙정부 협력 등 이후 정부에서 추진될 지방대학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다(최정윤 외, 2022).

대학재정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 측면에서 문재인정부의 RIS 사업은 지자체 중심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다양한 기관의 참여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이전 정부에서 추진된 제1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 기본계획이 2020년에 종결됨에 따라 문재인정부에서는 1차 기본계획 운영 결과에 대해 성과분석과 제2차 계획(2021~2025) 수립이 이루어졌다. 2차 기본계획은 교육부와 지역대학육성지원위원회의 기본계획 지침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와의 협의를 통해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에 대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협업 네트워크로서 지자체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역대 정부별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요약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역대 정부별 지방대학 지원 정책 성과와 한계

구분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지방대학 정책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교육 정책의 핵심 축으로 지방대학 육성을 최초로 제시 국가균형발전/지역혁신체계와 연계한 지방대학 발전 정책 설계 지방대학 타깃의 대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학협력 친화형으로 대학 체제 개편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대학 육성지원의 법적·행정적 기반 구축 지역사업-대학특성화 연계 강조, 정책 전략으로서 산학협력, 평생교육 강화, 부처간, 지방 국립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RIS 사업을 통한 대학-지역 연계협력 전략 고도화, 지방대학 육성정책 추진 주체 확장 시도 이전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 정책의 연계·지속·확장 부처 협업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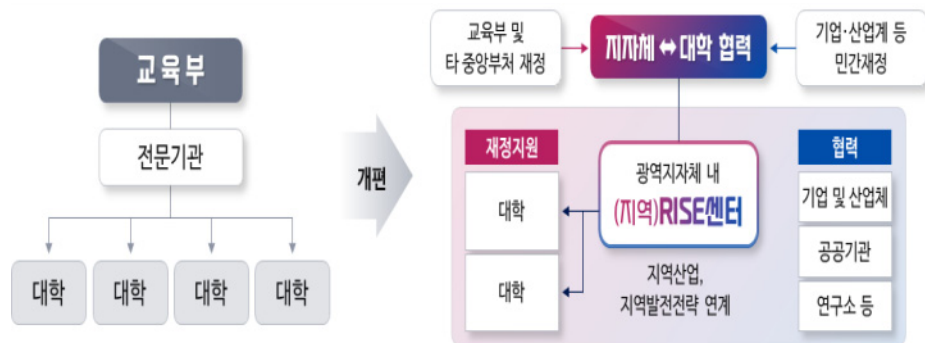
구분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지원 지방대학 발전 정책의 원형 제시: 특성화, 산학협력, 지역전략사업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간 연계 통한 역량강화, 대학-지역-중앙정부 협력 등을 통한 정책 전략의 토대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반한 지방대학 육성 정책 활성화 노력
지방대학 정책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과 달리 산발적 정책 추진, 통합, 연계, 집중적 정책 추진 미흡 중앙정부, 지역, 대학 간 협력 미흡 지역특화산업 인력양성·산학협력에 대한 대학재정 지원 사업의 낮은 실효성 지방대학육성 지원법 제정 실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월성과 호과성 기반의 지방대학 경쟁 유도의 결과 수도권-지방 격차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지원의 수도권 대학, 지방국립대로의 쏠림 심화 대학 간 동조화, 동질화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과 지방대학 지원 정책의 상충 특성화 전략을 통한 지방대학 문제 해결 실효성 불확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대학 정책 이해관계자 확장에 대비한 세밀한 추진전략 수립 미흡과 이에 따른 혼란 정책의 조율·총괄의 세부 추진전략 미흡; 정책수단간, 정책주체별 정책 국공립대학 중심의 지방대학 지원정책, 사립대학 역할 활용 미흡

자료 : 최정운 외(2022: 55)를 토대로 수정·보완

다. 현 정부의 지역대학 지원 정책

윤석열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은 지역주도 균형발전, 좋은 일자리, 지역특화 등으로 특히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어 지역의 주도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율과 규제혁신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로서 지역대학 정책에서는 지역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의 위임과 이양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RISE)로 구체화되어 나타나는 바, 지자체 주도성을 강화하여 지역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설계되어 지역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기체인 재정과 거버넌스에 관한 전략적 장치를 새롭게 마련하여 2023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그림 1] 지역주도 대학재정지원사업 체계(안)



자료 : 교육부(2023).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시범지역 선정·운영 계획

또한, 지역과 대학 혁신을 위한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에서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을 공고히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재정에 이어 거버넌스 구조 개편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첨단인재양성, 학술진흥, 연구개발, 일반재정지원 등 국가 차원에서 고등교육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은 교육부가 주관한다. 반면, 지역혁신-산학협력-직업교육-대학평생교육 등 지역의 특성과 수요

를 반영한 전략 수립이 필요한 사업들은 지역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주관하도록 함으로써 역할 분담도 제시하고 있다.

현 정부의 지역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정책의 두 가지 축은 RISE사업과 글로컬대학 30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RISE는 시·도 지정 전담기구(비영리 법인, 가칭 RISE 센터)에 지역주도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을 지원하고, 지자체 주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대학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며 2023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글로컬대학 30 사업은 지역사회와 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 발전을 이끌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육성하는 것으로, 규모면에서나 교육과정과 학과개편에 대한 강력한 준수사항 등의 기준 등에서 향후 지역연계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신하영 외, 2023). 사업의 목적과 체계 면에서 글로컬대학 30 사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2023년 선정을 거쳐 2027년까지 총 30개 대학을 선정는 것으로, 선정된 각 대학에는 5년간 총 1000억원이 지원된다. 대학의 생존과 지역 발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학이 위치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대응 투자 등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는 등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글로컬대학 30 사업은 지자체 내의 소수의 대학이 영향을 받는 반면, RISE 사업은 대부분의 지역대학이 영향을 받는 구조라는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으며, 아직까지는 그 성과를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향후 광역지자체가 설립한 RISE센터가 대학재정지원의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으므로 지자체와 RISE 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재정지원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대학재정 지원 성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대학에 대한 핵심 지원 정책인 글로컬대학 30사업과 RISE 사업을 비교하면 다음 [표 4]와 구분하여 볼 수 있다.

[표 4] 글로벌대학 30과 RISE 사업의 비교

구분	글로벌대학 30	RISE 사업
주체	교육부-대학	교육부-지자체-대학
목적 및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개의 글로벌대학 육성 • 대학의 혁신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조 • 비수도권 대학의 경쟁력 강화 • 선정과 동시에 즉시 사업의 수행 • 대학단독, 대학간 통합, 대학의 연합 형태의 유형으로 공모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대학 혁신과 지역소멸 방지 • 지역산업과 연계한 인력양성 및 지역 산업 진흥, 직업평생교육 등을 강조 • 모든 지역의 대학을 대상 • 시범지역 선정후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 • 시·도사업계획과 연계한 공모 및 대학 지원
재정지원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지원(소수대학 집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지원다수 대학 대상)
시작년도 및 지원대상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10개 선정 • 2025년까지 총 30개 대학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7개 시범지역 선정 • 2025년부터 모든 지역의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해당 대학
사업진행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의 사업계획서 심사 후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지역의 RISE 사업의 프로젝트 및 단위과제와 연계하여 지원
실무지원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연구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RISE 센터
재정지원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당 1,000억원으로 총 3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의 RISE사업계획과 관련 과제와 연계하여 대학별로 개별 지원하므로 대학별 지원 규모는 파악이 어려움

3. 종합 및 시사점

본 절에서 살펴본 지역대학의 지원 정책 관련 선행연구들이 제시하는 주

요 내용을 지역대학의 재정지원 문제점, 개선 방안, 그리고 지역대학의 육성·생존·발전 방안을 중심으로 제시하면 [표 5]와 같다. 먼저 재정지원 문제점은 평가지표 중복 및 체계, 재정지원의 형평성, 정부와 지자체의 관계, 지자체 내 전담 부서의 인력 등이 있다. 개선 방안은 지자체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 지자체와 대학의 자체 노력, 재정지원 사업체계 및 관리, 대학간 형평성 해소, 관련 법·제도 등 정비로 제시할 수 있다. 향후 지역대학의 육성·생존·발전 방안을 위해서는 재정지원 및 정책, 인프라, 산학협력 관련 등의 측면에서 체제 및 제도 개선 등의 보완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었다.

[표 5] 지역대학의 지원 정책 관련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주요 내용

영역		세부내용
재정지원의 문제점	평가지표 중복 및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지원으로 활용되는 포물러 펀딩은 정부 지원액의 부담가중 및 효율적 운영에 대한 유인가 미흡 사업 간 유사한 평가지표 중복 및 과도한 평가준비로 대학 역할 수행에 지장 성과지표의 체계성 및 타 사업 성과와 중복 재정지원체계의 복잡성
	재정지원의 형평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 대학재정지원 편중 현상·형평성 문제 기초자치단체 간 대학재정지원 규모 차이
	정부와 지자체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은 단순 보조사업 및 중앙부처사업의 대응투자사업으로 이루어진 한계 정부중심으로 이루어진 지역대학의 지원과 지자체의 배제
	지자체 내 전담 부서 및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을 지원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인력 불충분

영역	세부내용	
개선 방안	지자체의 예산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한 목표 설정 필요 • 지자체의 대학재정지원 재정력 확충 • 기초자치단체의 대학재정지원을 보완하는 투자 전략 필요 • 부동산 교부세 활용 및 지역인재장학금 확대
	지자체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특성 및 발전을 고려한 지자체의 자체적인 대학재정지원 사업 확대 및 역량 강화
	재정지원 사업체계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지원사업의 효율적 재구조화 • 고등교육재정의 정확한 재산정 절차 필요 • 심의 및 의결 기구 구성을 통한 질 관리(CQI) • 국고 지원 예산 운용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대학 간 형평성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과 지역대학 간 지역 편차를 고려한 분리평가 실시 • 대학의 특성(설립유형, 규모, 역량)을 고려한 정교한 평가와 지표 설계 • 사회적·경제적으로 열악한 조건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이 많이 재학하는 대학의 경우 재정배분 시 적극적인 가중치를 고려 • 지방 여건에 맞는 비목별 지출 비중 및 지방 소재 기업 평가 강조
	정부·지자체·대학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대학의 가치를 존중하는 공감대 형성 • 재정지원 단절에 따른 대책 및 지방대학의 지원책을 구조적 마련 • 각 지역 특성화 분야의 재설정 및 재정지원사업과 대학특성화의 관계 모색 • 유관 부처 및 기관의 연계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추진 조직의 강화 • 대학 자율 운영 방식 고려 및 대학 의견 수렴 확대

영역		세부내용
	대학 자체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성과의 향상과 타 학교의 우수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
	관련 법·제도 등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대학육성법 및 조례에 지역대학에 대한 지원 의무화 필요 •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및 법규 제·개정이 필요 • 지자체에 대학을 지원하는 전담조직 신설 및 인력 배치
지역대학의 육성·생존·발전 방안	산학협력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산학협력 프로그램의 확산과 산학협력 재정지원사업 개편과 확대 • 산학협력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 지역대학생들을 위한 장학 및 취업지원 확대 및 비수도권 지역대학 출신에 대한 공공기관 채용목표제 도입
	재정지원 및 정책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대학편중지원 해소 •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차등지원원칙 적용 • 정부재정을 광역권별로 배분하고 다시 광역권 안에서 기능별로 분배하는 권역별 및 기능별 지원 체제로 개편 •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지방대학육성정책 수립
	인프라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균형발전과 연계된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단위 거버넌스 구축 • 지역인재 유출 방지를 위한 사업체 유치 및 지방대학 육성 인프라 구축 •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지자체 및 대학의 협력체계 구축

이와 같은 국가 및 지자체의 지역대학 재정 지원 관련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국가 및 지자체가 지역대학을 포함한 대학을 지원하는 전반적인 대학재정지원사업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있었다. 국내 연구로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전반을 분석한 연구, 지역대학의 고등교육재정지원 확충 방안 연구, 지역대학

재정지원 현황·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대학재정지원을 통한 대학 성과 분석 연구, 지역대학 육성·생존·발전 방안 연구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즉, 전반적인 대학재정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지역대학의 대학재정지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역대학 재정 지원 현황·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역대학의 재정 지원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연구들이 있었다. 그동안 정부에 따라 지방대학의 육성정책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학령인구 감소 등 지방대학의 당면하고 있는 현실에 따라 지역대학의 육성·생존·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들도 수행되었다(김학표 외, 2024; 박동찬, 2023; 채운정, 2023).

국외 연구로는 외국 사례인 미국, 영국, 일본의 대학재정지원제도를 살펴본 연구들이 있었다. 미국의 경우 지자체와 지역대학의 협력 사례를 바탕으로 지역대학 지원 체제를 분석한 선행연구와 미국 여자사립대학의 교육재정과 한국 여자사립대학을 비교한 연구가 있었다. 또한 영국의 대학재정지원을 담당하는 법정기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분석과 일본의 지역사회와 대학 간의 협력에 대한 사례(대학콘소시엄 교토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국외 사례의 경우 지역대학의 재정 지원에 초점을 둔 연구보다는 각국의 대학재정지원제도와 별도의 전담기구와 관련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본 절의 2장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역대 정부는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 기제로서 지역대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감소에 따르는 학령인구 감소에 직면해 지역대학의 지속가능성과 생존, 나아가 지역소멸의 방지 등을 위하여 지역대학의 발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지원 정책을 강화해 오고 있으나, 한편에서는 대학 지원을 위한 재정을 도구로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제약 우려 역시 제기되고 있으나 10여년 이상 지속된 등록금 동결 정책에 따라 대학의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

어 정책도구로서의 중요성은 오히려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재정지원 방식이 특별지원 방식에서 일반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점은 향후 대학구조조정 등과 맞물려 어떤 효과가 나타날 지에 대해서는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끝으로, 지역대학 지원 정책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역대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에서 지역대학에 대한 지원에서 지자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되어 오다, 현 정부는 RISE 사업을 통해 지역대학에 대한 지원을 지자체 중심으로의 재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인력양성, 지산학 협력, 평생교육 등에서 지자체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의 마련과 담당자의 역량 제고를 위한 뒷받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Ⅲ. 지역대학의 지원 관련 법률 분석

1. 지역대학 지원의 법적 근거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한 지역대학 지원 정책을 논의할 때, 헌법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인구감소특별법, 지방대학 육성법은 각각 교육의 기회균등과 지역대학 지원 정책을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법적 틀을 제공한다. 이 법률들을 분석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 법적 근거, 그리고 실행 가능성을 명확히 할 수 있다.

헌법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우선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그 내용으로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을 받게 할 의무, 무상의 의무교육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의무, 교육제도의 법정주의로 구성된다. 특히 헌법 제31조 제1항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는 지역대학의 지원 정책의 포괄적 근거가 되는 헌법규정이다.

교육기본법은 대한민국 교육제도의 근본적인 철학과 원칙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모든 국민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가질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교육의 기회균등은 교육기본법의 핵심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지역대학 지원 정책도 이러한 철학적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 교육기본법을 분석함으로써 지역대학 지원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교육기본법은 교육 기회균등을 법적 권리로 명확히 하고 있으며, 따라서 지역대학 지원 정책이 이 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중요하다.

고등교육법은 고등교육의 체계와 구조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고등교육법은 대학의 설립, 운영, 평가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다. 지역대학 지원 정책을 수립할 때,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분석하여 정책이 법적 요건

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고등교육법은 대학에 대한 지원과 평가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을 분석함으로써 지역대학이 어떤 조건 하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평가 기준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책이 대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면서도 법적 요건을 준수하도록 설계될 수 있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은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근거이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은 지역대학이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틀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을 분석함으로써 지역대학 지원 정책이 재정적으로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와 재정 지원의 구체적인 방법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구감소특별법은 인구감소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 법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별한 지원과 정책적 배려를 규정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지역대학은 이러한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지역대학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검토할 수 있다. 지역대학은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사회와 긴밀히 연계되어야 한다. 인구감소특별법의 규정을 통해 지역대학이 지역사회와 어떻게 협력하고,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지방대학 육성법은 지역대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 법은 지역대학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대학 지원 정책이 어떻게 지역대학의 발전을 도울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지역대학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는 근거가 된다. 이를 통해 지역대학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법률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한 지역 대학 지원 정책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될 수 있다. 또한, 법률 분석을 통해 정책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이로써, 지역대학이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2. 헌법 제31조 제1항

가.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할 때 ‘능력’이란 개인의 능력을 말하며, 경제적 상황이나 사회적 지위, 지리적 위치 등 비전속적인 능력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능력에 따른 교육이란 정신적·육체적 능력에 상응하는 교육을 말하며 이러한 능력을 무시하고 균등한 교육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도 ‘교육을 받을 권리란, 모든 국민에게 저마다의 능력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그에 필요한 설비와 제도를 마련해야 할 국가의 과제와 아울러 이를 넘어 사회적·경제적 약자도 능력에 따른 실질적 평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실현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뜻한다고 하여 교육의 기회균등이 형식적 평등이 아닌 실질적 평등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로 판시하였다(헌재결 2000. 4. 27. 98헌가16, 98헌마429(병합)).

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할 때 ‘균등’이란 우선 능력에 따른 차별 이외에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교육을

받을 기회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개개인이 받고자 하는 교육의 내용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수학적능력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이들에게 획일적인 교육을 할 수는 없다. 결국 교육의 기회균등은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의 형태로, 즉 수학적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만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장영수, 2023).

그러나 여기서 ‘균등’이란 이러한 소극적 차별금지에 한정되지 않는다. 교육의 기회균등은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국가의 의무를 의미한다. 특히 능력은 있으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자들이 실질적인 평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란 구체적으로 첫째, 취학의 평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

둘째,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도록 적극적 정책을 시행할 의무를 부과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기본법은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하며(제7조),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사람을 위한 장학제도(제28조) 등 각종 지원제도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3. 교육기본법

가. 의의

교육기본법은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의 근본적인 틀을 제공하며, 교육의 목적, 기본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틀은 지역대학 지원 정책의 방향성과 실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교육 기회균등의 실현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제공한다.

첫째, 교육기본법은 대한민국 교육의 목적과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목적은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인격을 도야하며, 창의력을 개발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과 원칙은 지역대학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며, 교육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근거를 제공한다.

둘째, 지역대학 지원 정책의 근거가 된다. 지역대학은 지역사회의 교육, 연구, 문화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간의 교육 격차의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다. 지역대학 지원 정책은 이러한 격차를 줄이고, 모든 학생들이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받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다.

셋째, 교육기본법은 지역대학 지원 정책의 연계성 및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육의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역대학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가 되며, 지역대학에 대한 재정적 지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환경 조성 등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나. 조문분석

[표 6] 교육기본법

조문	내용	해석
제4조 (교육 의 기회 균등)	<p>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교육여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함 ▷ 교육 시설 및 자원의 균형적 배분을 통해 지역대학의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도출됨 ▶ 학습환경 등의 개선 ▷ 지역대학의 교육 인프라(예: 도서관, 연구실, 실험실 등)를 개선하여 학생들이 우수한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대학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여 교육 여건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함
제7조 (교육 재정)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p> <p>②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 재정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대학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보장해야 함. 이는 예산 배정 시 지역대학에 대한 우선적인 고려와 더불어, 특별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실현할 수 있음 ▶ 관련된 법률 제정 및 위임

조문	내용	해석
	<p>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p>	<p>▷ 지역대학 지원을 위한 재정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률을 개정하여, 지역대학의 재정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함. 예를 들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배분 기준을 지역대학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p> <p>▷ 투명한 재정 관리를 통하여 확보된 재정이 지역대학의 교육여건 개선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투명한 관리와 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함. 이는 재정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지원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p>
<p>제28조 (장학제도 등)</p>	<p>제28조(장학제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사람을 위한 장학제도(獎學制度)와 학비보조제도를 수립·실시하여야 한다.</p>	<p>▶ 경제적 장벽 해소</p> <p>▷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장학금과 학비보조금을 제공함으로써 교육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음. 이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함</p> <p>▷ 장학금과 학비보조금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더 많은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하게 됨. 특히 지역대학의 경우, 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입학률과 졸업률을 높일 수 있음</p>

다. 시사점

교육기본법 제4조는 지역대학 지원 정책의 추진실태와 부합하게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대학 학생들도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아 사회적, 경제적, 지리적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이 해석하면, 제4조는 지역대학 지원 정책의 추진실태와 부합하게 교육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대학이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동등한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1) 교육기본법 제7조

교육기본법 제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대학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예산 배정 시 지역대학에 대한 우선적인 고려와 더불어, 특별한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지역대학 연구지원 프로그램, 지역 경제와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둘째, 재정지원을 위하여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배정액을 설정하고, 지역대학이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지원을 명시해야 한다. 지역대학 지원을 위한 재정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률을 개정하여, 지역대학의 재정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배분 기준을 지역대학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지원을 위하여 법률 제정 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대학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역대학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투명한 재정 관리 체계 구축해야 함. 확보된 재정이 지역대학의 교육 여건 개선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투명한 관리와 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재정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지원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재정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와 평가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지원의 목적과 성과를 명확히 할 수 있다(이덕난 외, 2024, 70면).

넷째, 지역대학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재정지원의 사용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 및 교직원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재정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대학의 교육여건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2) 교육기본법 제28조

교육기본법 제28조는 경제적 장벽 해소를 통하여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장학금과 학비보조금을 제공함으로써 교육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조문이다. 이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육기본법 제28조의 시사점 첫째, 사회적 통합 촉진이다. 경제적 지원을 통해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둘째,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하여 고등교육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 장학금과 학비보조금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하게 될 수 있다. 고등교육 참여 확대는 학생들의 취업 기회를 넓히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사회에 공급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지역대학 지원을 통한 교육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 재정적 지원

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입학률과 졸업률을 높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지역대학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학생들이 지역에서 학업을 이어가며 소비 활동을 통해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장학금의 제한된 수혜 대상의 불균형과 선발의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 장학금과 학비보조금의 수혜 대상이 제한적일 경우, 모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수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혜 대상의 확대와 선정 기준의 유연화가 필요하다. 또한 장학금 선발기준이 공정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투명하고 공정한 선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3) 검토

교육의 기회균등과 지역대학 재정지원에 대한 조문들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정책의 일관성, 예산 확보의 어려움, 법률의 실효성 부족 등 한계점들이 존재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투명한 재정 관리와 함께, 지역대학의 특수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교육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 장학금 및 학비보조금의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장기적인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교육 기회균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조인식, 2022, 43면). 이를 통해 모든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대학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4. 고등교육법

가. 의의

고등교육법은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며, 대학의 설립과 운영, 교육과정, 교원, 학생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틀은 지역대학 지원 정책의 방향성과 실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교육기회균등의 실현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고등교육법은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목적과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목적은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사회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과 원칙은 지역대학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며, 교육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근거를 제공한다.

둘째, 지역대학 지원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 법제이다. 지역대학은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간의 교육 격차는 여전히 큰 문제이며, 그 간극은 더욱 넓어지고 있다. 지역대학 지원 정책은 이러한 격차를 줄이고, 모든 학생들이 균등한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다. 이 법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고, 지역대학이 교육과 연구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는 지역대학이 지속적으로 교육과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교육기회균등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된다(조인식, 2022, 43면).

셋째, 고등교육법은 지역대학 지원 정책과 교육기회균등의 실현에 중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이 법은 고등교육의 목적과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대학의 설립과 운영, 교육과정, 교원, 학생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지역대학이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고등교육법을 분석함으로써 지역대학 지원 정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교육기회균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지역대학 지원 정책은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고등교육법은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이다.

나. 조문분석

[표 7] 고등교육법

조문	내용	해석
제7조 (교육재정)	제7조(교육재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는 지역대학이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이를 통해 지역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함. 특히, 재난 상황에서의 긴급 지원은 지역대학이 교육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이러한 해석은 지역대학 지원 정책의 추진실태와 부합하며, 교육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데 적용될 수 있는 조문임
제7조의2 (재정지원에 관한 계획 및 협의·조정)	제7조의2(재정지원에 관한 계획 및 협의·조정) ①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략적으로 재원을 투자하	▶ 제7조의2는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전략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계획 수립 및 협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협력적 계획의 수립 이 규정은 지역대학 지원을 포함하여 고등교육 전체의 재정지원 방향과 기준을 설정하는 중요한 절차임. 연도별 지원계획

조문	내용	해석
	<p>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재정지원 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포함하는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재정지원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중장기 투자 목표 및 방향 2. 고등교육 환경의 변화와 대학의 재정 여건 전망 3. 학교의 역할 및 특성에 따른 재정 지원 배분 방향 	<p>수립 시 지역대학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재정 지원이 일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음.</p> <p>▷ 중장기 투자 목표 및 방향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중장기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여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지역대학의 장기적인 발전과 교육 기회균등 실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도록 함</p> <p>▷ 교육환경 변화와 재정여건 전망 고등교육 환경의 변화와 대학의 재정여건을 전망하여, 지역대학이 직면할 수 있는 도전과 기회를 고려하여 지역대학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p> <p>▷ 학교의 역할 및 특성에 따른 재정지원 배분 각 학교의 역할과 특성에 맞춘 재정지원 배분 방향을 설정하여, 지역대학이 고유의 특성을 살려 발전할 수 있도록 함. 예를 들어,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산업과 협력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함. 이를 위하여 지역대학 지원을 포함한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주요 추진과제와 구체적인 추진 방법을 명확히 해야 함. 또한 효과적인 정책 실행을 통해 지역대학의 교육 질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p> <p>▷ 성과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재정지원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성과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의 효과성을 높여 지역대학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필요한 개선을 통해 지속적인 발</p>

조문	내용	해석
	<p>4.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p> <p>5.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의 성과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p> <p>6.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배분 방향</p> <p>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신설·변경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과의 부합 여부, 중장기 고등교육 정책 방향 및 학교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의 협의·조정</p>	<p>전을 도모함</p> <p>▷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배분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재정지원 배분 방향을 설정하여,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여야만 지역대학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학생들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요함</p> <p>▶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과의 부합성 검토 지역대학 지원 정책이 일관되게 실행되고, 중장기 고등교육 정책 방향에 맞춰 추진되도록 해야 함</p> <p>▷ 중장기 고등교육 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지역대학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이를 근거로 학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 변화가 지역대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함</p> <p>▶ 성과 조사 및 분석 교육부 장관은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의 성과를 조사·분석하여 지역대학이 받은 지원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또한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정책 개선을 권고함으로써 지역대학이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음</p> <p>▶ 위원회 운영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및 연도별 지원계획 수립, 그리고 재정지원 사업의 협의·조정을 위한 위원회를</p>

조문	내용	해석
	<p>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p>	<p>운영할 수 있음. 이 위원회는 지역대학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한 재정지원 방안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 또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지역대학 지원 정책이 더욱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p> <p>▶ 대통령령에 위임 재정지원 정책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보장하여, 지역대학이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p>
<p>제34조의8 (사회통합 전형의 운영)</p>	<p>제34조의8(사회통합전형의 운영) ①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차별 없는 고등교육 기회 제공을 위하여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전형의 모집인원이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대학 모집인원, 설립목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하 이 조에서 “기회</p>	<p>▶ 차등적 교육 보상의 필요성 차별 없는 고등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교육적으로 보상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전형을 운영해야 함. 이는 경제적, 사회적, 지역적 불리한 여건에 처한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기회균등을 실현하려는 목적임</p> <p>▶ 기회균형선발비율 전체 모집인원의 15% 이내에서, 대학 모집인원과 설립목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이 되도록 기회균형선발비율을 설정하도록 함. 이는 소외계층의 학생들이 일정 비율 이상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p> <p>▶ 의견수렴 절차 교육부장관은 기회균형선발비율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대학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p>

조문	내용	해석
	<p>균형선발비율”이라 한다)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제 34조의5제4항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포함하여 공표하여야 한다.</p>	<p>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함. 이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현실적인 비율을 설정함으로써, 교육기회균등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절차임</p> <p>▶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노력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은 전체 모집인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입학전형에 할당하도록 노력하도록 함.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교육 격차를 줄이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임. 지역 출신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 교육기회균등을 촉진하기 위함임</p>

다. 시사점

고등교육법 제7조의 2는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전략적 확대와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교육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지역대학 지원 정책의 추진실태와 부합하게 해석할 때,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시사점이 있다. 첫째, 지역대학의 특수성을 반영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지역대학의 특성과 필요에 맞춘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 학생들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특수성의 반영은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한 대응도 포섭할 수 있다.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계획적으로 제공하여,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개선해야 한다.

둘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배분 방향을 설정하여, 전국적으로 교육 기회균등을 실현한다. 제7조의2는 지역대학이 교육 기회균등을 실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데 중요한 정책적 기반을 제공한다.

셋째, 성과 기반 정책 개선을 위하여 재정지원 사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실효성 높은 정책을 유지하고 개선해야 한다. 이는 지역대학이 받은 지원이 실제로 교육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데 효과가 있는지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체계적 지원계획 수립과 일관성도 선행되어야 한다. 5년마다 수립되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과 연도별 지원계획을 통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대학이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아, 지속적인 발전과 교육 기회균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등교육법 제7조의2는 지역대학 지원 정책의 추진실태와 부합하게 교육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대학이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 8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교육기회균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첫째, 차별 없는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였다. 기회균형선발비율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지역적 여건이 불리한 학생들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의 형평성을 높이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둘째,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기회균형선발비율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대학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실적이고 공정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고, 교육기회균등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입학전형제도를 통하여 수도권 대학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입학전형을 통해, 비수도권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고, 전국적으로 교육기회균등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조문이다.

5. 지방대학육성법

가. 의의

지방대학육성법은 대한민국의 지역대학이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의 주요 목적은 지역대학의 교육 및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며, 지역 경제와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지방대학의 교육 및 연구 역량 강화이다. 지방대학육성법은 지방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교육과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지방대학이 스스로의 특성과 장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이

를 위해 지역대학의 물리적 환경과 교육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대학이 최신 교육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지역대학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수도권 대학과의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

둘째,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 강화이다. 지방대학 육성법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지역대학이 지역 경제와 밀접하게 연계된 교육을 제공하여, 졸업생들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전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예를 들어, 지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지역대학이 지역사회 발전의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지방대학육성법은 지역대학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여, 일관된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단기적인 정치적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한다.

지방대학육성법은 지역대학의 발전과 교육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 법은 지역대학의 교육 및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인재를 양성하며, 국가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방대학육성법의 의미는 지역대학이 자율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교육기회균등을 실현하는 데 있다. 이러한 법적 기반을 통해 지역대학은 지역사회 발전의 중심축으로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와 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나. 조문분석

[표 8] 지방대학육성법

조문	내용	해석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 등의 책무)	<p>제3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수도권 이외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역인재의 취업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 종합적인 시책 수립 및 시행 교육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의무를 명시한 것임.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지역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인프라 확충, 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함</p> <p>▶ 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재정적 뒷받침 없이는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거두기 어려움을 강조한 것임. 또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지역대학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제공해야 함</p> <p>▶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대책 수립과 교육과 고용의 연계를 강화하여 교육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 의무를 규정함</p> <p>▶ 사회적·경제적 환경 마련 지역인재가 취업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함. 이는 지역 내 고용 창출, 산업 발전, 기업 유치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음</p>

조문	내용	해석
<p>제13조 (공공 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p>	<p>제13조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하 이 조에서 “기업”이라 한다)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제2항 제3호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 지역인재의 채용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 그 채용실적을 공개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 지역인재 채용 촉진 ▷ 공공기관 및 대기업의 의무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기업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함. 이는 지역 인재들에게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 기회균등의 실질적 실현을 도모하는 중요한 조치임</p> <p>▷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인재 채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의 경제적 발전을 촉진함. 이는 지역대학 졸업생들이 지역 내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하여, 지역 대학의 입학률 및 졸업 후 정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p> <p>▶ 채용실적 공개 및 요청 ▷ 투명성 확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 채용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채용실적을 공개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지역인재 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가하여 채용 확대를 유도함</p> <p>▷ 책임성 강화 채용실적 공개를 통해 공공기관 및 기업이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지역인재 채용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함</p> <p>▶ 지원 방안 마련 ▷ 인센티브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를 일정</p>

조문	내용	해석
	<p>1. 지역인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는 경우</p> <p>2.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특별 채용제도를 개발·시행하는 경우</p> <p>3. 지역인재의 현장 실습 및 인턴채용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p>	<p>비율 이상 채용하거나,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특별 채용제도를 개발·시행하는 경우, 그리고 지역인재의 현장실습 및 인턴채용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 이는 지역인재 채용을 유도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함</p> <p>▷ 지속가능한 지원</p> <p>이러한 지원은 대통령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해지며, 이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을 가능하게 함</p>
<p>제15조 (대학의 입학기회 확대)</p>	<p>제15조 ②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의 입학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의 수가 학생 입학 전 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대학의 장은 해당 지역의 시·군·</p>	<p>▶ 입학자 구성 비율</p> <p>▷ 선발 기준 설정 지역 우수인재가 지역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대학의 학문적 수준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임</p> <p>▷ 지방대학의 장은 해당 지역의 시·군·구 간 균형 있는 선발을 위해 노력해야 함. 이는 특정 지역에 우수 인재가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 지역 간 교육 기회균등을 실현하고, 모든 지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임</p> <p>▷ 지역 특성 고려</p> <p>각 시·군·구의 특성과 필요를 고려한 선발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고, 균형 잡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p>

조문	내용	해석
	<p>구 간 균형있는 선 발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 지역 우수인재의 지역 대학 유치 ▷ 지역 내 인재 유출 방지 전략 지역 내 우수인재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 내 대학에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하도록 유도하여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함. 이를 통해 지역대학의 학문적, 연구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음 ▷ 교육 환경 조성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 최신 시설, 다양한 학습 기회 등을 제공하여 지역 우수인재가 타 지역으로 떠나지 않고 지역대학을 선택하도록 유도해야 함</p>
<p>제16조 (국가 등의 지원)</p>	<p>제16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교원 및 교육용·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실험실습비·연구조성비·장학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 교육 및 연구 환경의 질적 향상 ▷ 교원 및 시설 지원 교원과 연구·교육 시설의 지원을 통해 지방대학의 교육 및 연구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교육기회균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함. 이는 지역대학의 학문적 수준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함 ▷ 교육 인프라 강화: 최신 교육 설비와 연구 장비의 확보를 통해 학생들이 최적의 학습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함</p> <p>▶ 연구 활성화 ▷ 연구비 지원 실험실습비, 연구조성비 등의 지원을 통해 지역대학의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고, 학문적 성과를 높일 수 있음. 이는 지역</p>

조문	내용	해석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대학이 지역사회와 긴밀히 연계되어,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임</p> <p>▷ 연구 역량 강화</p> <p>다양한 연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대학 교수진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연구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p> <p>▶ 인재 정착</p> <p>▷ 정착 지원</p> <p>지역인재가 졸업 후 지역에 정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유지할 수 있음. 이는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p> <p>▷ 사회적 인프라 제공: 주거 지원, 생활비 보조, 취업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통해 지역인재의 지역 정착을 돕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함</p>
<p>제17조 (특성화 지방 대학의 지정 등)</p>	<p>제17조 ① 교육부장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및 초광역권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방대학을 특성화 지방대학으</p>	<p>▶ 지역특화 및 초광역권산업 육성</p> <p>▷ 산업 맞춤형 교육</p> <p>특성화 지역대학 지정을 통해 지역특화산업 및 초광역권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음. 이는 산업 맞춤형 교육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산업계의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함</p> <p>▷ 지역 경쟁력 강화</p> <p>특성화 지역대학이 해당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내 고용 창출 및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p> <p>▶ 행정적·재정적 지원</p>

조문	내용	해석
	<p>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교육부장관은 제 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지방대학이 특성화 분야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지속적 지원 특성화 지역대학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중요함. 이는 특성화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장기적인 교육 및 연구 성과를 창출하는 데 기여함</p> <p>▷효율적 자원 배분 교육부의 지원을 통해 특성화 지역대학이 필요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질과 연구 역량을 높일 수 있음</p>
<p>제21조 (대학과 지역의 협업)</p>	<p>제21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지방대학의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협업체계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교육부장관은 제 1항에 따른 협업체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전담기관</p>	<p>▶ 지역대학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 협업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대학 간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역혁신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대학의 혁신역량을 높일 수 있음. 이는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방안임</p> <p>▶ 전담기관의 역할 ▷ 통합적 지원 각 지역별로 지정된 전담기관이 협업체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보장함. 이는 지역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가능하게 함</p> <p>▷ 재정적 안정성 전담기관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하여,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기관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도모함</p>

조문	내용	해석
	<p>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p>	
<p>제22조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 등)</p>	<p>제22조 ① 교육부장관은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의 신청(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이 둘 이상일 경우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에 따라 지방대학의 학과 개편 및 교육과정 개선 등 고등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p>	<p>▶ 지역 맞춤형 교육 혁신 ▷ 지역 특성 반영 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지역의 특성과 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혁신을 추진할 수 있음. 이는 지역사회와 대학이 협력하여 지역 경제와 교육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데 기여함 ▷ 산업 연계 교육 교육과정 및 학과 개편을 통해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된 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졸업 후 지역 내에서 바로 활용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갖추도록 함</p> <p>▶ 협력 강화 ▷ 협업 구조 활성화 지역협업위원회의 공동 신청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지역 내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협력 구조를 강화함. 이는 대학, 산업체, 지역사회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 혁신을 이루는 데 중요함 ▷ 종합적 접근 교육 혁신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종합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교육과정 개선 및 학과 개편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p>

다. 시사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는 교육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의무를 명시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첫째, 포괄적,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 단순한 재정지원을 넘어, 지역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인프라 확충, 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교육과 관련된 모든 요소, 예를 들어 교수진의 질 향상, 학습 자원의 확충, 학생 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재정적 지원을 위한 의무와 예산도 선행되어야 한다. 지역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지원이라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재정적 뒷받침 없이는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거두기 어려움을 강조한 것이다.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지역대학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셋째,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확대도 필요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는 교육과 고용의 연계를 강화하여 교육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인재가 취업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역대학 지원 정책과 지역인재 채용정책이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교육과 취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교육과정에서 취업 연계를 강화하고, 졸업생들이 지역 내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6.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가. 의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인구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사회의 위기와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법제이다. 인구가 줄어들면 지역 경제 활동이 축소되고 노동력 부족 문제로 인해 지역사회가 지속가능성을 잃게 되는데, 이 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도록 제정하였다.

이 법은 지역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역대학이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교육 기회균등을 실현하며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근거가 된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을 제공한다. 이 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지역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고, 경제적 활력을 되찾도록 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인구감소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나. 조문분석

[표 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조문	내용	해석
제11조 (생활권 연계· 협력 추진)	<p>제11조①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와 협의를 거쳐 인구감소지역의 주민 생활편의 증진 등을 위한 권역(이하 “생활권”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p> <p>⑤ 국가는 생활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연계·협력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자리·교육·의료·환경·복지·문화·교통 등 시설의 설치와 서비스의 운영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p>	<p>▶ 지방자치단체가 협의를 통해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조항은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임. 이는 주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임</p> <p>▶ 생활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다양한 시설과 서비스의 설치 및 운영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와 자원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됨</p> <p>▷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지방자치단체들이 생활권 설정을 통해 협력하는 과정에서 지역대학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해야함. 예를 들어, 지역대학과의 정기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교육, 연구, 지역사회 봉사 활동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음</p> <p>▷ 국가 지원의 체계화 국가가 생활권 설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지역대학 지원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이를 통해 지역대학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음</p>

조문	내용	해석
제13조 (국가지 원의 원칙)	<p>제13조 ②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정책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사업 공모 시 일정 부분을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배정하거나 인구감소 지역 맞춤형 사업을 설계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③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을 인구감소 위기 수준에 따라 구분하여 우선 지원 및 차등 지원할 수 있다.</p>	<p>▶ 중앙행정기관의 역할</p> <p>▷ 중앙행정기관은 자신들이 관할하는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이 정책 및 사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임</p> <p>▷ 사업 공모 시 우선 배정 정책이나 사업 공모를 할 때 일정 부분을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배정해야 하도록 함. 즉,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사업의 일부는 반드시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되도록 하였음</p> <p>▷ 맞춤형 사업 설계 인구감소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설계해야 함. 이는 일률적인 지원이 아니라, 각 지역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춘 지원을 의미함</p> <p>▷ 지원 방안 마련 중앙행정기관은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의미함</p> <p>▶ 국가의 역할</p> <p>▷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 위기 수준을 기준으로 이들을 구분해야 함. 이는 인구감소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지역을 분류하는 것을 의미함</p> <p>▷ 우선 지원 및 차등 지원 인구감소 위기 수준에 따라 각 지역을 다르게 지원할 수 있음. 위기 수준이 높은 지역에는 더 많은 자원과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위기 수준이</p>

조문	내용	해석
		<p>낮은 지역에는 적절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는 차등 지원을 하여 실질적 평등을 구현</p>
<p>제16조 (주민 및 지역 역량 강화)</p>	<p>제16조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 및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학연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대학·기업·연구소·비영리단체·지방자치단체 등의 교류·협력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p>▶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함</p> <p>▷ 지역 여건과 특성 고려 시책을 추진할 때 지역의 구체적인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이는 일률적인 접근이 아닌, 각 지역의 고유한 상황과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의미함</p> <p>▷ 산학연 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 산업(기업), 학계(대학), 연구소 간의 협력을 활성화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음</p> <p>▷ 대학, 기업, 연구소, 비영리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p>
<p>제22조 (교육기 반의 확충)</p>	<p>제22조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학 등의 교육시설(「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을 말한다. 이</p>	<p>▶ 행·재정적 지원</p> <p>▷ 인구감소지역으로 교육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해당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하여 유치와 이전을 적극 장려</p> <p>▷ 지역대학의 교육 질 향상, 연구 활동, 인프라 개선 등을 목적으로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음</p> <p>▷ 학생 및 졸업생 지원</p>

조문	내용	해석
	<p>하 같다)이 적절히 설치되고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8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대학 등의 교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대학 등의 교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게는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대학(이하 “지방대학”이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지원보다 강화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⑫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및</p>	<p>인구감소지역의 지역대학 출신 학생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이 지역 내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p> <p>▷ 재정지원 계획 포함</p> <p>고등교육 재정지원 계획에 인구감소지역 대학에 대한 지원을 포함시켜, 이들 대학이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p>

조문	내용	해석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대학에 대한 지원 또는 보조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시사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생활권을 설정하면서 지역대학과의 협력을 강화할 기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정기적인 협의체를 통해 교육, 연구,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다. 이는 지역대학이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지역대학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은 지역대학 졸업생들이 지역 내에서 정착하고 일자리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인구감소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각 지역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지역대학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한 지원 정책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대학의 강점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해당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내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다.

둘째, 인구감소 위기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은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위기 수준이 높은 지역에는 더 많은 자원과 지원을 제공하여 지역대학의 생존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재정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교원 확충, 연구 활동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셋째,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해 지역대학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는 대학과 지역 산업체, 연구소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술 혁신과 인재양성을 촉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협력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대학 졸업생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할 수 있다.

넷째, 대학, 기업, 연구소, 비영리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협력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은 지역대학이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다양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

위 조문들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한 지역대학 지원 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대학의 교육 질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역대학 지원을 체계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인재의 유출을 막아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7.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가. 의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미래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이 지역 혁신 거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학령인구의 급감과 재정난으로 인해 대학의 재정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기반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적용되는 한시법이며, 예산 규모는 총 9조 7,400억 원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인 11조 2,000억 원에서 1조 4,600억 원이 감축되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고등교육 부문 간 재정 여건 불균형을 해소하고, 고등·평생교육의 안정적 지원,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와 내국세 수입 증가를 고려할 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학의 혁신 방안 마련 없이 유·초·중·고 예산 일부를 떼어 대학에 지급하는 방식은 유·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지역대학혁신 방안과 함께 안정적인 재정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별도 재원을 마련해 지속적인 지역대학교육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나. 조문분석

[표 10]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조문	내용	해석
제1조 (목적)	제1조 이 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역대학들이 지속적으로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간의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함. 이를 통해 지역 인재들이 자신의 지역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교육기회균등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임

조문	내용	해석
제5조 (세출)	<p>제5조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p> <p>4.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인재양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p>	<p>▶ 지역대학들의 교육 및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이들 대학이 필요로 하는 경비를 충당할 수 있게 함. 이는 지역대학들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밀접한 연구를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됨</p>
	<p>제7조(차입금) ① 특별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p> <p>② 특별회계는 그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p>	<p>▶ 특별회계가 부족할 때 장기차입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긴급한 재정 필요에 대응할 수 있음. 이는 지역대학들이 갑작스러운 재정 부족으로 인해 교육 및 연구 활동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함</p>
제8조 (세출 예산의 이월)	<p>제8조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p>	<p>▶ 예산의 유연한 운용을 가능하게 하여, 지역대학들이 긴급하게 필요한 자금을 제때 사용할 수 있음. 이는 지역대학들이 장기적인 계획 하에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지속할 수 있음</p>

다. 시사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지역대학들이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교육과 연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법이다. 이를 통해 지역대학들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밀접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교육기회균등의 실현을 위한 법제이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간의 교육격차를 줄이고, 지역인재들이 자신의 지역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하다. 지역대학들은 종종 재정적인 불안정성으로 인해 질 높은 교육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법의 특별회계 규정을 통하여 다양한 재원(일반회계 전입금, 특별회계 전입금, 차입금 등)을 통해 지역대학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지역대학의 교육 및 연구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다. 법 제5조의 지출 항목은 지역대학이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 뒷받침을 제공하여 지역대학이 특성화된 교육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또한 연구지원 경비를 통해 지역대학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실질적인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셋째, 법 제5조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인재양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명시하여, 지역대학이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수도권으로의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고용 기회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근거 조문이 된다.

넷째, 예산의 유연한 운용과 긴급 재정지원이 가능하다. 법 제7조는 특별회계의 차입과 일시차입을 허용하여, 지역대학이 예상치 못한 재정적 어려움에 빠졌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법 제8조는 세출 예산의

이월을 허용하여, 지역대학이 특정 회계연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가능하게 하여, 지역대학의 재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다섯째, 잉여예산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 법 제9조는 결산상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하도록 규정하여, 잉여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였다. 잉여금의 이입은 지역대학이 재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한 재정 환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시사점들은 지역대학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기회 균등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대학은 지역의 핵심 교육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발전 모델을 구현할 수 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3년간 적용되는 한시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속가능성 부족, 행정적 부담 증가, 재정 계획의 불안정성, 정책의 일관성 부족, 그리고 효과성 평가의 한계와 같은 여러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점들은 법의 연장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지속 가능한 지역대학 지원 정책을 위해서는 한시법보다는 장기적이고 일관된 법적·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이덕난 외, 2024, 30면)

8. 종합 및 시사점

지역대학 지원 정책은 교육의 형평성, 지속가능성, 투명성과 책임성, 포용성과 접근성, 지역 특수성 반영의 원칙을 중심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동등한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으며, 지역대학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기존에 제정된 법제들에서도 출되는 원칙과 시사점을 정리하면 첫째, 지역대학의 역할과 교육적 성과를 위하여 교육자원의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

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특히, 지역대학에 대한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각 지역대학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분야 연구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각 지역 대학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특화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지속가능한 재정지원과 정책적 기반을 법제화해야 한다. 지역대학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재정 지원과 정책적 기반이 필수적이다. 단기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재정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지원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대학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대학의 교육 인프라를 개선하여 모든 학생이 동등하게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원거리 지역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지원, 교통비 지원 등 현실적인 접근성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이다. 재정지원과 정책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원정책의 핵심이다. 정기적인 회계 감사와 성과 평가 보고서를 통해 재정 사용 내역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책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마련하여 재정지원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넷째, 지역 특수성 반영한 지원정책을 검토해야 한다. 지역대학의 특성, 지역사회와의 연계, 산업과의 협력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대학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된 교육과정 개발, 지역사회 봉사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지역 대학

이 지역 경제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역 대학이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특화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IV. 지역대학의 지원 정책에 대한 인식 분석

1. 설문조사 분석

가. 설문조사 개요

본 연구는 조사 목적은 교육 기회균등을 위한 지역대학 지원 정책의 인식 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을 위한 대학 의견을 수렴과 지역대학 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정책 및 입법 추진 전략과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조사 대상은 국내 대학 기획처장, 예산팀장 등 재정지원 사업 업무담당자 9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답변대상은 102명이 답변(응답률 11.3%) 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통계적 표본의 유의미성을 갖는 표본 수는 50개 이상 요구)임을 알 수 있었다. 조사일시는 2024. 05. 23. ~ 05. 30. (8일간) 진행하였다. 조사방법은 E-mail 발송 및 네이버 폼 작성을 활용하였다.

또한 설문지 설계는 기존 선행 연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 문항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통해 최종 설문 문항을 결정하였고, 분석 방법은 SPSS 27, EXCEL 등을 활용한 빈도분석, 교차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한 설문 문항과 설문지 구성 중 설문 문항은 기본 현황 조사와 지원 정책 문제점 및 향후 방향성 분석으로 구분하였다.

[표 11] 설문 문항 및 설문지 구성

평가내용	주요내용	비고
기본 현황조사	· 대학 설립 유형, 신분 유형, 근무 경력, 소속대학 유형, 소속 대학 권역, 소속 대학 재학생 수 등	6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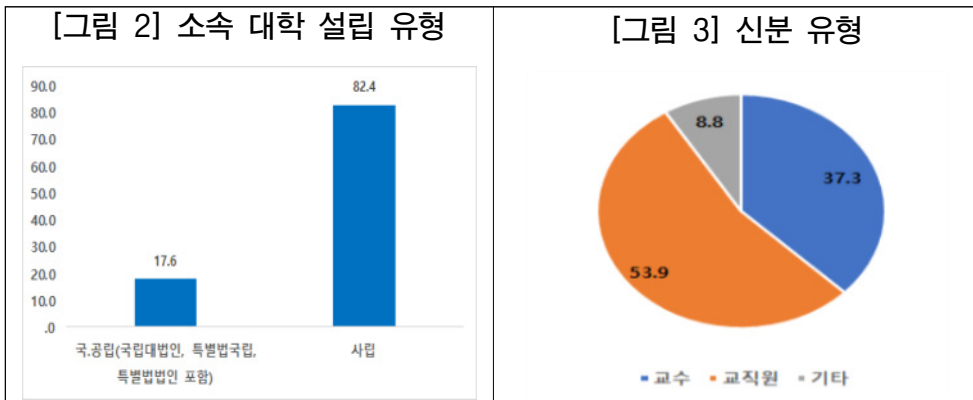
지원정책 문제점 및 향후 방향성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지원 대학 기여도, 기존 교육부 지원 정책 문제점 및 방향성, RISE 및 글로벌 30 인지 여부, 대학 지원 정책 재 개편시 우선 고려할 사항 • RISE 체계 고려사항 및 발전 기여도, 대학지원정책 사업 지자체 권한 이양 고려사항, 지원 정책을 위한 특별법 여부 등 	17문항
----------------------------------	---	------

2.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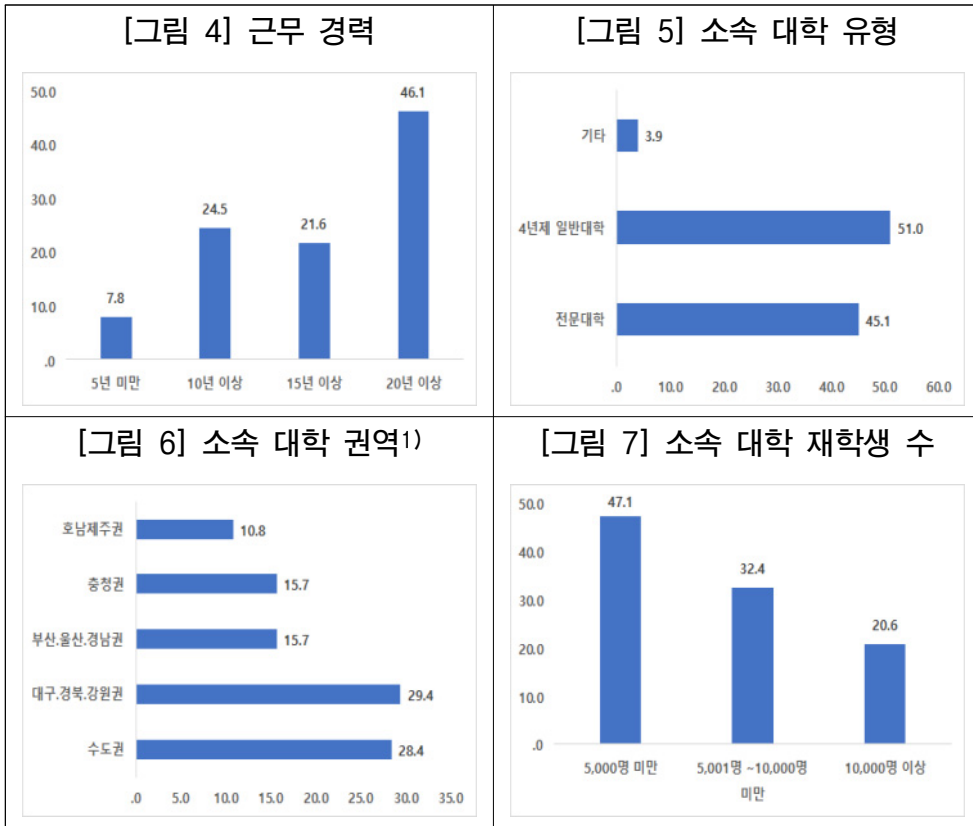
가. 기초 현황 분석

교육 기회균등을 위한 지역대학 지원 정책의 추진 실태 및 개선 과제 도출을 위한 대학 의견 수렴 시 본 설문에 응답한 인원은 102명이며, 각 설문조사에 관한 기초 현황은 다음과 같다. 본 설문에 응답한 인원 비율은 적으나, 대학재정지원 사업 기획부터 실행까지 각 단계별 이해도가 높은 대학 관계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결과에 대한 신뢰도는 높다고 할 수 있다.

(단위: %)



- 1) 수도권 대학 포함의 경우 RISE 체계로의 정책 변화에 대한 의견수렴으로 인하여 설문조사에 포함됨



나. 국고지원 정책 문제점 및 향후 방향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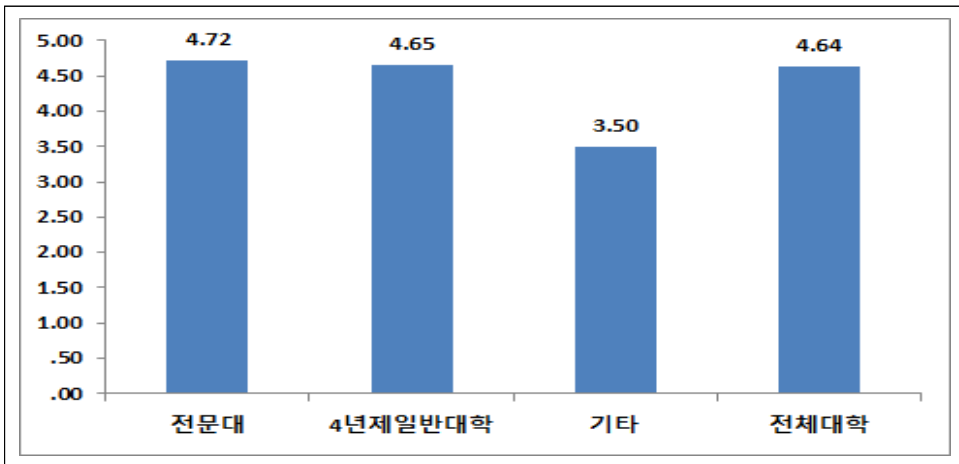
(1) 국고지원의 대학 재정 확충이나 대학의 실질적 발전 기여도

국고지원 정책 문제점 및 향후 방향성 분석 중 대학 유형별 국고지원의 대학 재정 확충이나 대학의 실질적 발전 기여도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대학 재정 확충에 국고지원 필요성이 높았으며 전문대가 4년제 일반대학보다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효과는 더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소속 대학 규모별 국고지원의 대학 재정 확충이나 대학의 실질적 발전 기여도 분석 결과 대학 규모가 클수록 국고지원의 기여도는 더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향후 연

구가 필요한 부분이나, 현 대학재정지원 사업 체계내에서 규모가 큰 대학들의 대학재정지원 사업 참여 비율과 혜택 정도가 더 큰 결과라고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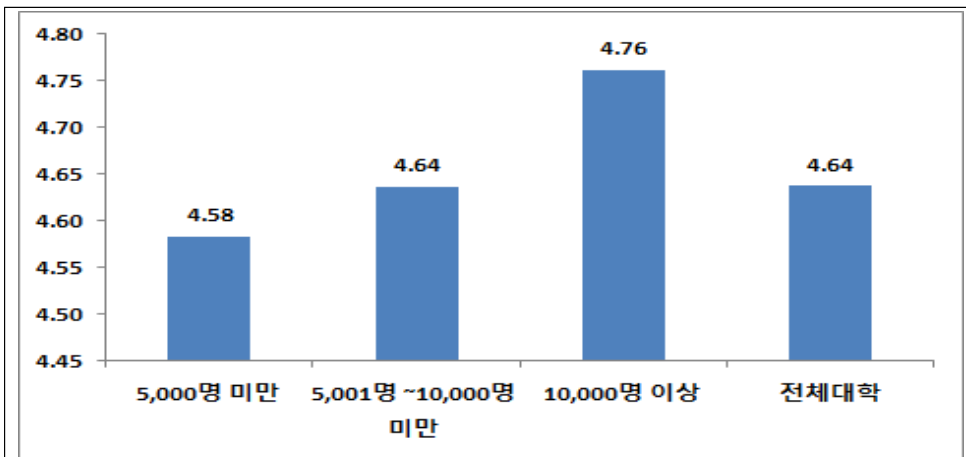
[그림 8] 대학 유형별 국고지원의 대학 재정 확충 및 발전 기여도

(단위: %)



[그림 9] 대학 규모별 국고지원의 대학 재정 확충 및 발전 기여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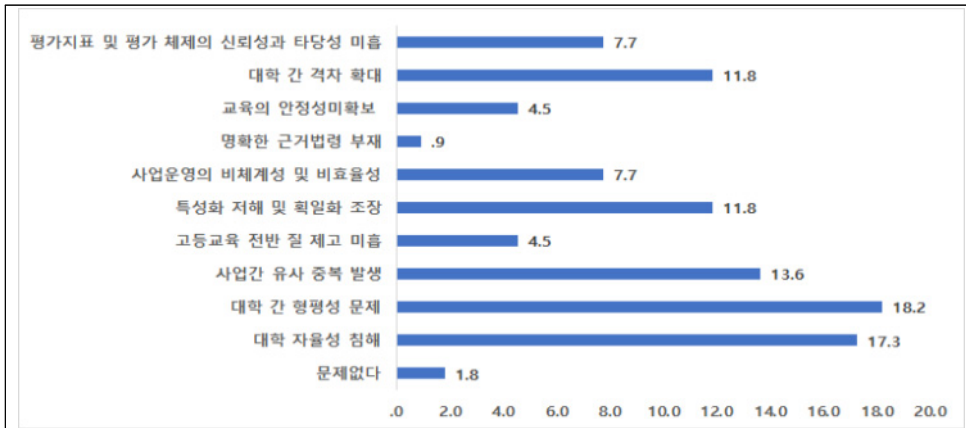
(2) 기존 교육부 지원 정책의 문제점 분석

기존 교육부 지원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대학 간 형평성(18.2%)과 자율성 침해(17.3%)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업간 유사 중복성(13.6%), 대학 간 격차 확대(11.8%), 특성화 저해 및 획일화 조장(11.8%), 사업 운영의 비체계성 및 비효율성(7.7%), 평가지표 및 체제의 신뢰성과 타당성 미흡(7.7%) 등의 순으로 기존 교육부 지원 정책에 대한 문제점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에 있어 대학 유형별 기존 교육부 지원 정책의 문제점 분석 결과, 인식 차이는 없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대학 규모별 등에 있어서의 차이점 또한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국내 모든 대학들이 기존 교육부 지원 정책 대해서 대학 간 형평성과 자율성 보장을 최우선적으로 희망하고 있으며, 특성화와 획일성 조장 방지를 요청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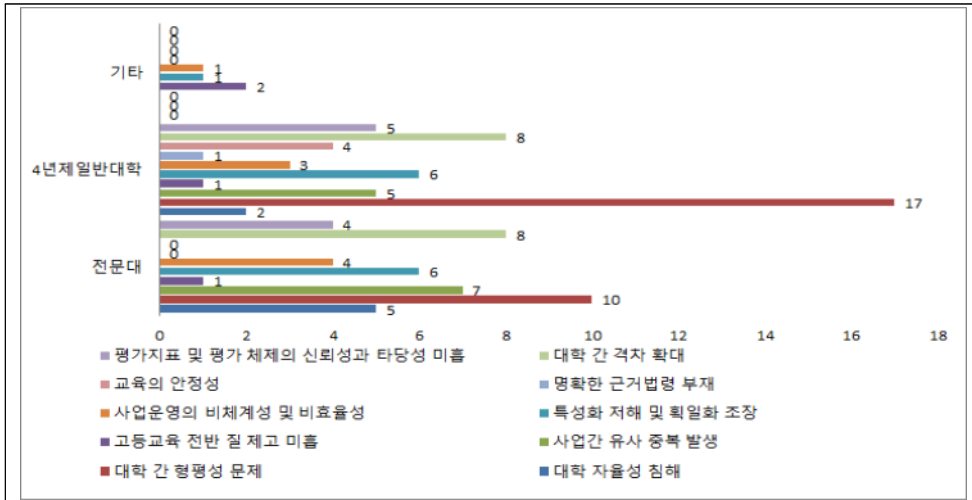
[그림 10] 기존 교육부 지원 정책 문제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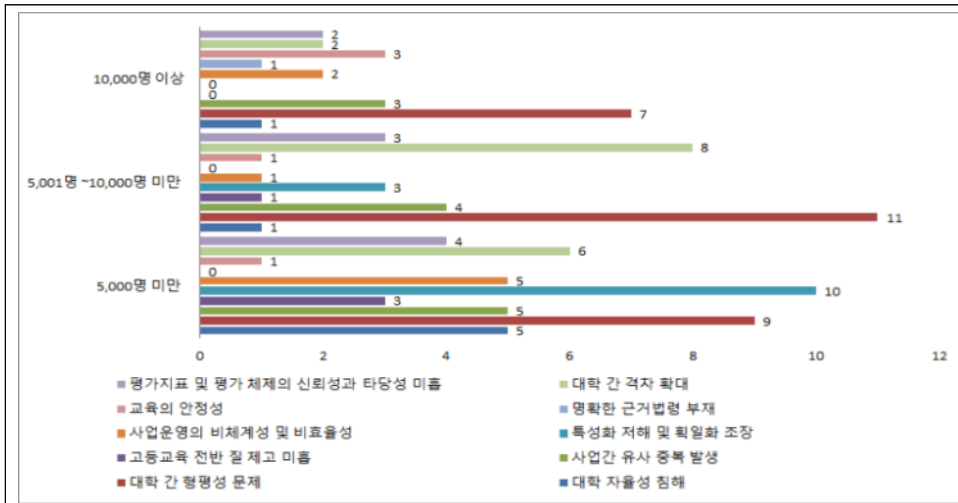
[그림 11] 대학 유형별 기존 교육부 지원 정책 문제점

(단위: %)



[그림 12] 대학 규모별 기존 교육부 지원 정책 문제점

(단위: %)



(3) 우리나라 고등교육 지원 정책의 전체적인 방향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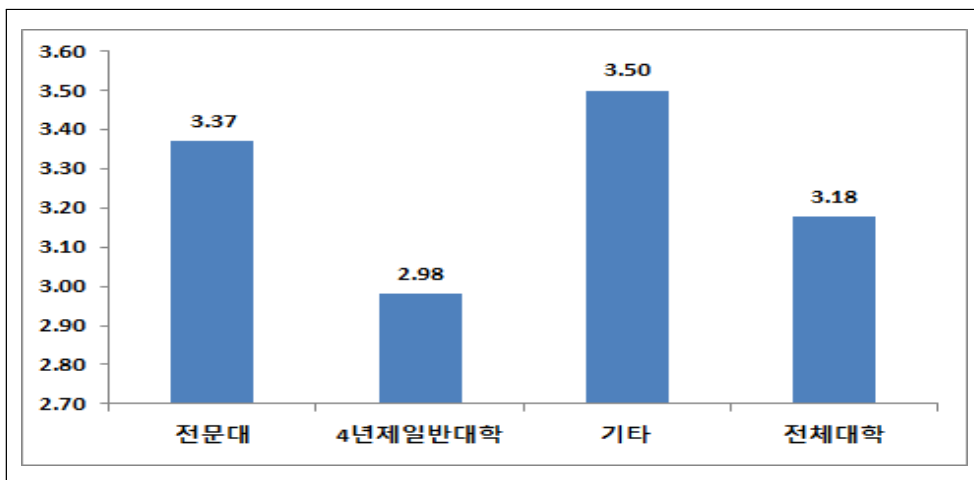
우리나라 고등교육 지원 정책의 전체적인 방향성에 있어 대학 유형별 우리나라 고등교육 지원 정책의 전체적인 방향성 분석 결과, 전문대(3.37/5점), 4년제 일반대학(2.98/5점)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3.18점으로 대부분이 우리나라 고등교육 지원 정책의 방향성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4년제 일반대학의 인식이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대학 유형별 우리나라 고등교육 지원 정책의 전체적인 방향성 분석 결과, 전문대학의 경우 보통 이상으로 방향성이 좋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4년제 일반대학의 경우에는 전체적 방향성이 좋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학 규모별 고등교육 지원 정책의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중소 규모 대학의 경우 방향성에 대해서 보통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대규모 대학의 경우에는 방향성이 좋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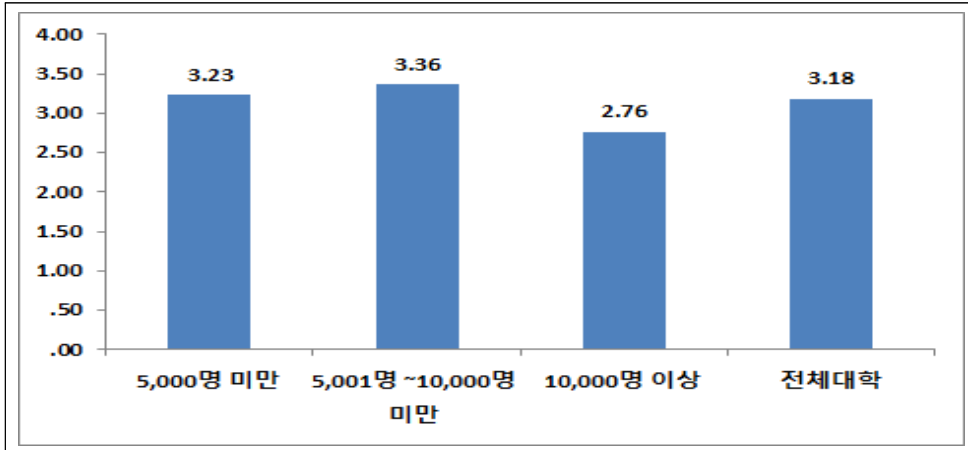
[그림 13] 대학 유형별 우리나라 고등교육 지원 정책의 전체적인 방향성 분석 결과

(단위: 점/5점)



[그림 14] 대학 규모별 우리나라 고등교육 지원 정책의 전체적인 방향성 분석 결과

(단위: 점/5점)



(4) 정부가 대학 지원 정책을 재개편한다고 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분석

향후 정부가 대학 지원 정책을 재개편한다고 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지역적 특성과 대학들의 특성을 반영한 대학지원정책 사업(27.6%)이 가장 높았으며, 대학 지원 정책 목표와 수단에 공정한 배분 및 평등 고려(19.2%), 대학 특성화 저해 및 획일화 조장 방지(17.8%), 고등교육 전반 질 제고 확보(12.1%) 등의 순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

그리고 대학 유형별 정부가 대학지원정책 사업을 재개편한다고 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분석 결과, 4년제 일반대학은 대학 특성화 저해 및 획일화 조장 방지, 평가지표 및 평가체제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 등의 순이었으며, 전문대학의 경우 대학 지원 정책을 통한 대학 발전 목표와 수단에 공정한 배분 및 평등 고려, 대학 특성화 저해 및 획일화 조장 방지 등의 순으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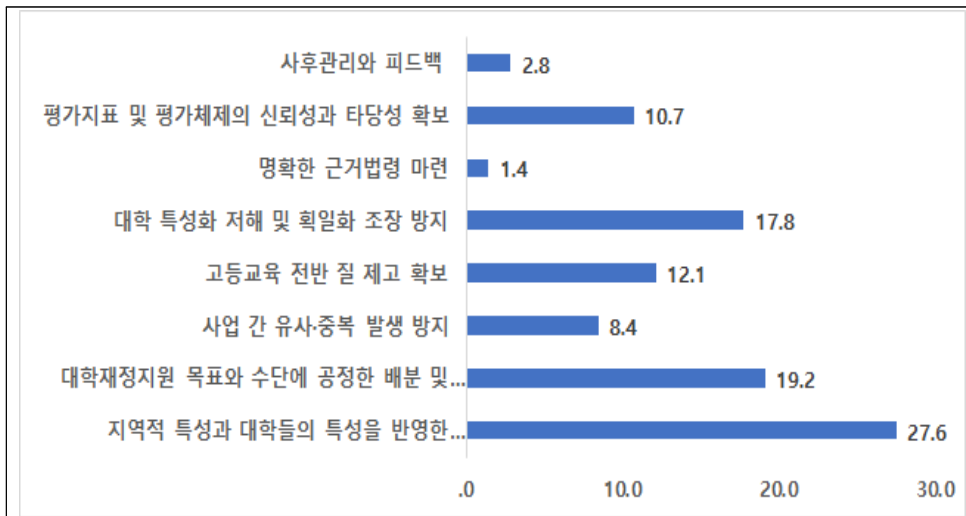
또한, 소속 대학 규모별 정부가 대학 지원 정책을 재개편한다고 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분석한 결과 대규모 대학의 경우 평가지표 및 평가 체제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 대학 특성화 저해 및 획일화 조장 방지 등의 순이었다.

그리고, 중규모 대학의 경우 대학 특성화 저해 및 획일화 조장 방지, 대학 재정지원 목표와 수단에 공정한 배분 및 평등 고려, 고등교육 전반 질 제고 확보 등의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대학의 경우 대학 특성화 저해 및 획일화 조장 방지와 지역적 특성과 대학들의 특성을 반영한 대학 지원 정책이 가장 높았으며, 대학 지원 정책 목표와 수단에 공정한 배분 및 평등 고려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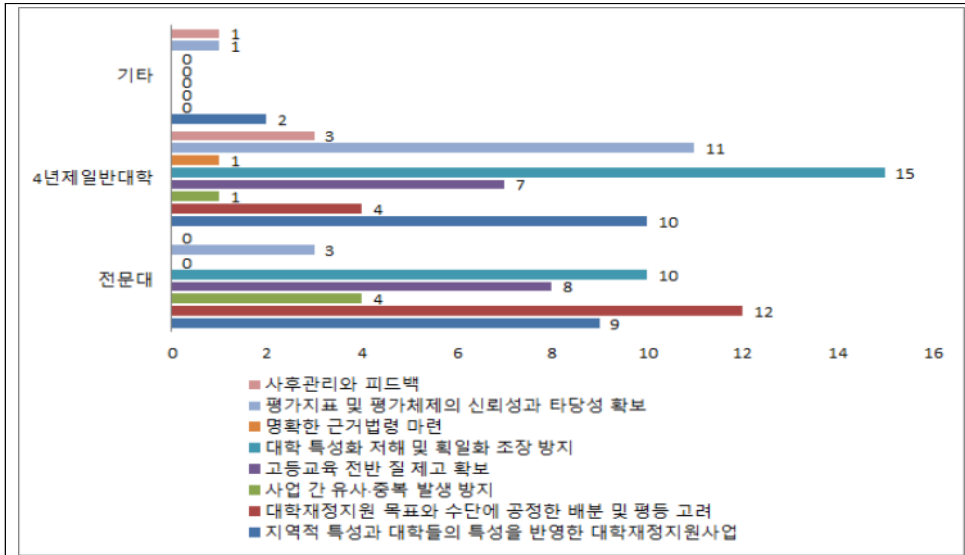
[그림 15] 대학지원정책 사업 개편시 우선 고려사항 분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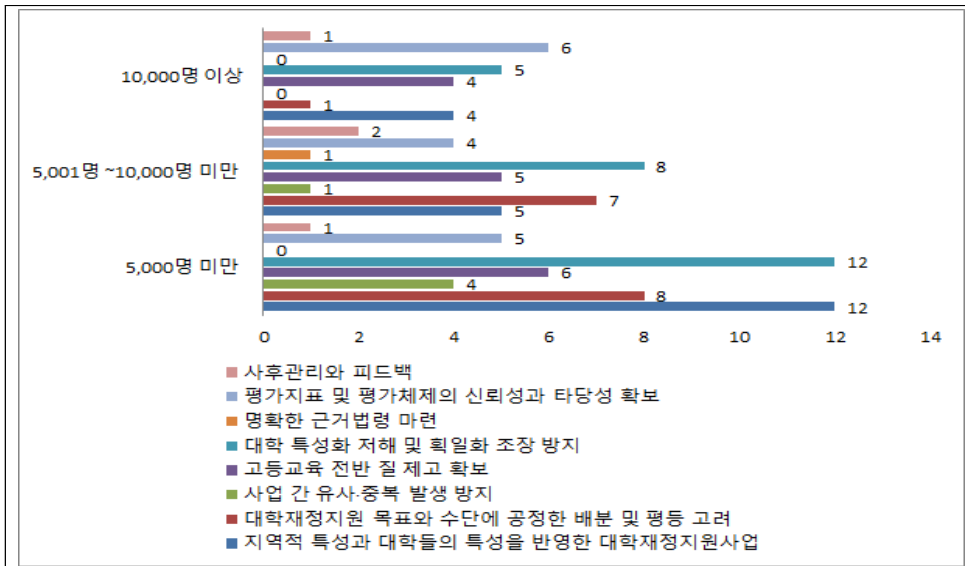
[그림 16] 대학 유형별 대학지원정책 사업 개편시 우선 고려사항 분석

(단위: %)



[그림 17] 대학 규모별 대학지원정책 사업 개편시 우선 고려사항 분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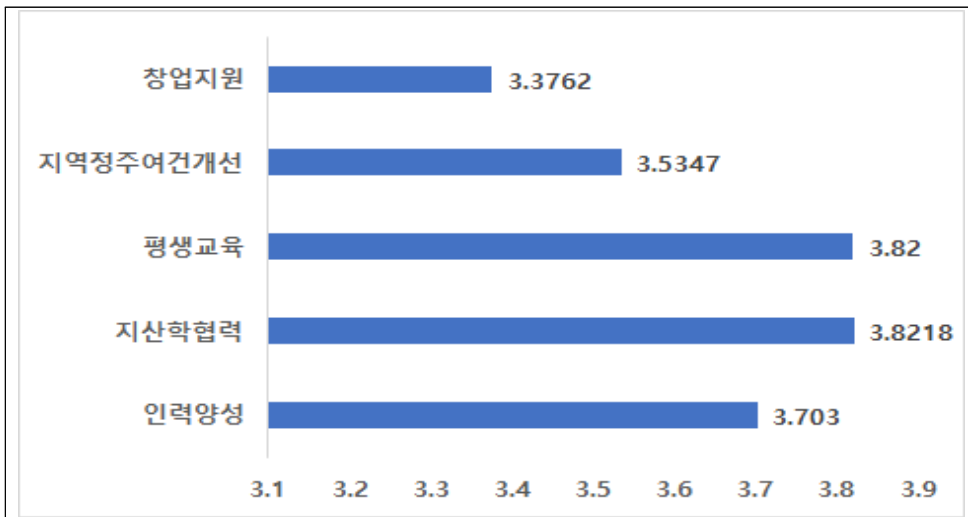
(5) 대학지원정책 사업이 대학 재정 확충이나 대학의 실질적인 발전에 어떤 측면에서 기여 정도 분석

대학지원정책 사업이 대학 재정 확충이나 대학의 실질적인 발전에 어떤 측면에서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자산학협력과 평생교육에 가장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인력양성, 지역정주 여건 개선, 창업지원 등의 순이었다.

그리고 대부분 측면에 있어 기여도는 보통 이상을 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특히 창업지원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으나, 이는 대학지원정책 사업에서 창업에 대한 중요도를 강조하고 있는 현 정부 정책과는 괴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 향후 대학지원정책 변경 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8] 대학지원정책 사업의 대학 재정 확충이나 대학의 실질적인 발전 기여도 분석

(단위: 점/5점)



(6) 향후 대학지원정책 사업(RISE, 글로벌대학 30)의 지자체 권한 이양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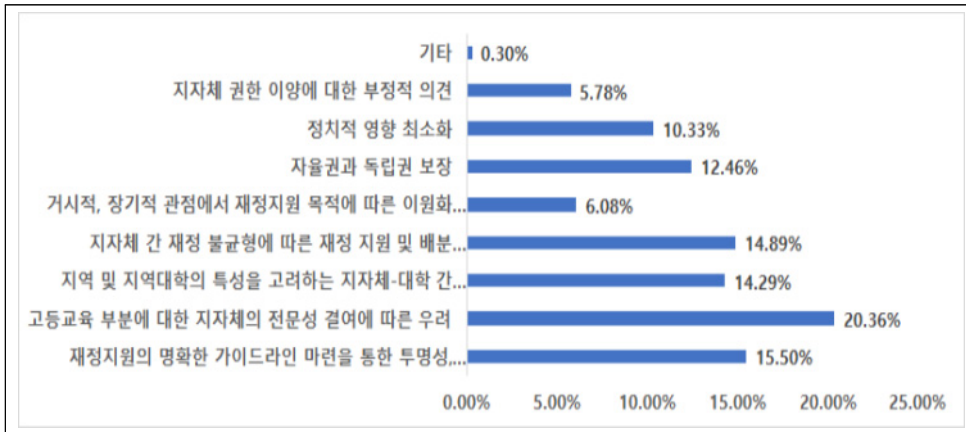
향후 대학 지원 정책사업(RISE, 글로벌대학 30)의 지자체 권한 이양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 분석 결과, 고등교육 부분에 대한 지자체의 전문성 결여에 따른 우려(20.36%)²⁾, 재정지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한 투명성(15.50%), 공정성 보장(14.89%)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자체 권한 이양시 기존 행정 관점에서 교육 문제를 접근하는 것에 대한 우려에서 기인한다고 평가되며, RISE 시범 사업 지역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확률이 높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의 다양한 교육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대학 유형별 대학지원정책 사업(RISE, 글로벌대학 30)의 지자체 권한 이양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 분석 결과 4년제 일반대학의 경우 고등교육 부분에 대한 지자체의 전문성 결여에 따른 우려, 지역 및 지역대학의 특성을 고려하는 지자체-대학 간 협력 거버넌스,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에 따른 재정 지원 및 배분 방식에 따른 우려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사항으로 선정하였다. 전문대의 경우에는 고등교육 부분에 대한 지자체의 전문성 결여에 따른 우려, 재정지원의 명확한 가이드 라인 마련을 통한 투명성, 공정성 보장,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에 따른 재정 지원 및 배분 방식에 따른 우려 등의 순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글로벌대학 30과 RISE 사업에 대한 협의회 결성 등에 있어 4년제 일반대학이 전문대학에 비해 지역내에서의 참여도 및 목소리의 크기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국회입법조사처의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지원 현황과 향후 과제’(2022)에서 제시한 것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대학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력의 양적 확대와 함께 관련 인력의 전문성 강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동일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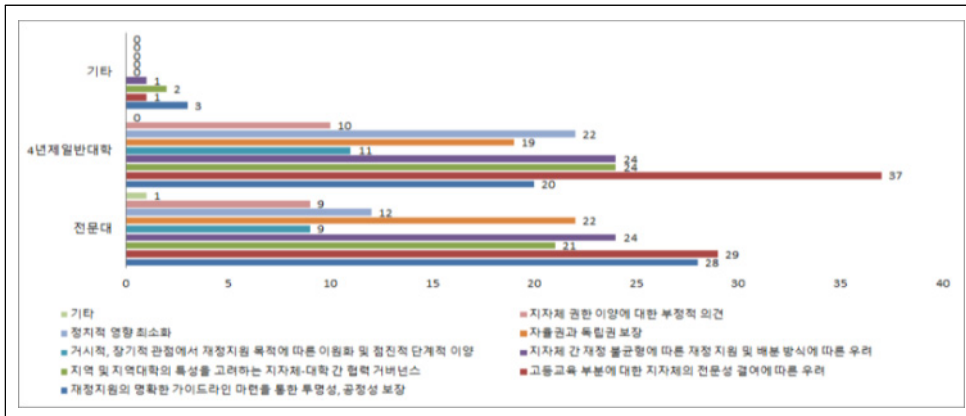
[그림 19] 대학지원정책 사업의 지자체 권한 이양시 고려사항 분석 결과

(단위: %)



[그림 20] 대학 유형별 대학지원정책 사업의 지자체 권한 이양시 고려사항 분석 결과

(단위: %)



소속 대학 규모별 대학지원정책 사업(RISE, 글로벌대학 30)의 지자체 권한 이양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 분석 결과, 대규모 대학은 고등교육 부분에 대한 지자체의 전문성 결여에 따른 우려,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에 따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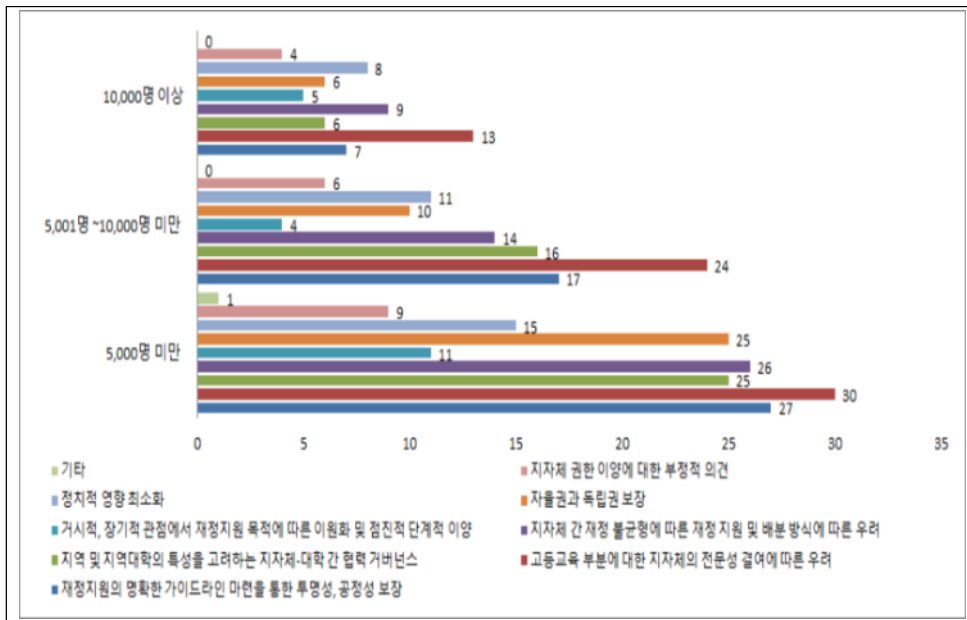
재정지원 및 배분 방식에 따른 우려, 지역 및 지역대학의 특성을 고려하는 지자체-대학 간 협력 거버넌스 등이었다.

중소규모 대학은 고등교육 부분에 대한 지자체의 전문성 결여에 따른 우려, 지원 정책 사업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한 투명성, 공정성 보장,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에 따른 재정지원 및 배분 방식에 따른 우려 등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기존 지원정책 사업들이 대규모 대학 위주로 기획되고 집행되는데 대한 중소대학들의 의구심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1] 대학 규모별 대학지원정책 사업의 지자체 권한 이양시 고려사항 분석 결과

(단위: %)



(7) RISE 체계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분석

RISE 체계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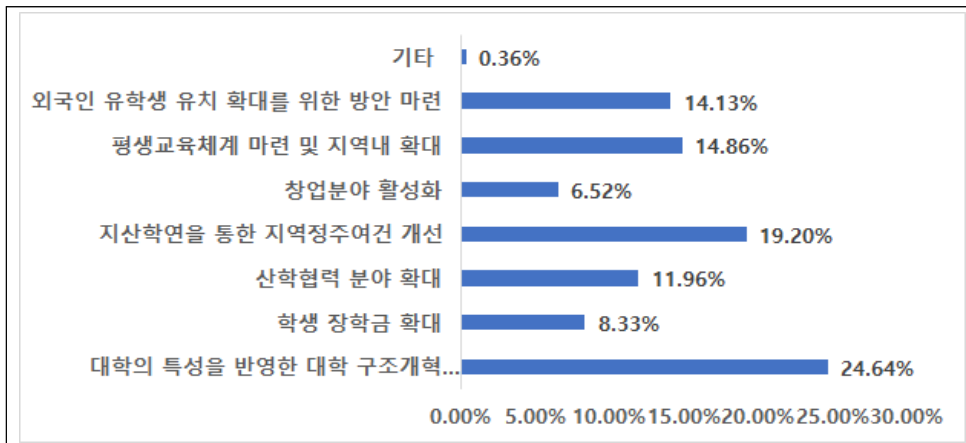
구조개혁 혁신 방안 마련(24.64%), 지산학연을 통한 지역정주여건 개선(19.20%), 평생교육체계 마련 및 지역내 확대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현 학령인구 감소, 지역소멸 대응 등에 대한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선행 질문에서와 동일한 결과치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일자리 해결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창업지원의 경우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대학내에서 할 수 있는 창업지원의 한계성으로 인하여 대학에 대한 기여도와 향후 고려 사항에서도 가장 낮은 응답이었다.

그리고, 소속 대학 규모별 RISE 체계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분석 또한 응답 비율에 대한 차이는 있었으나, 경향은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22] RISE 체계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분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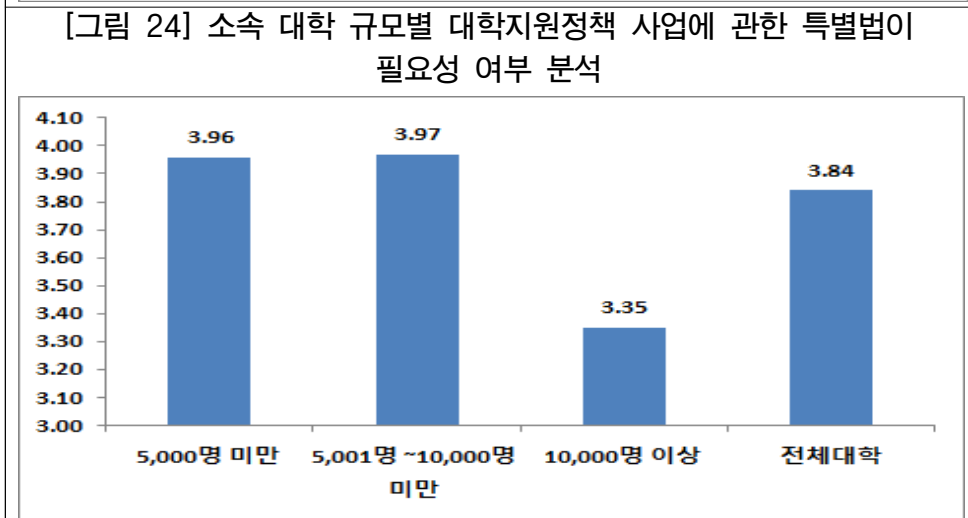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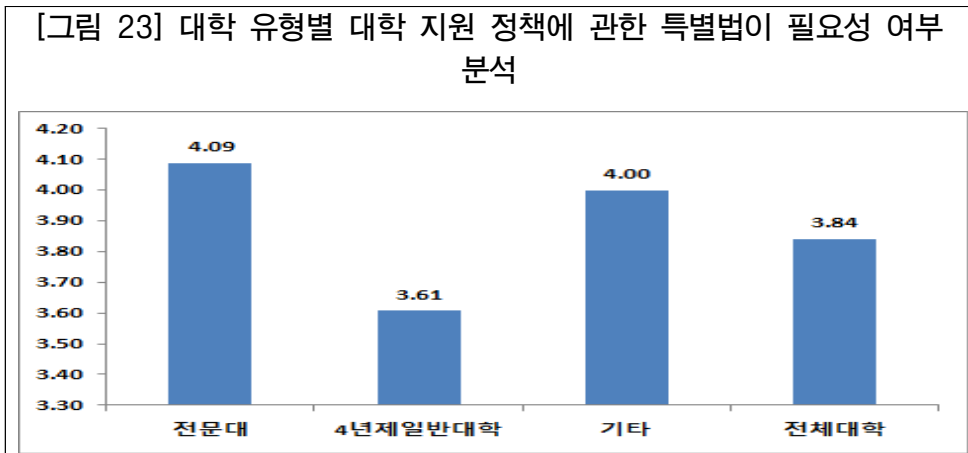
(8) 대학지원정책 사업에 관한 특별법이 필요성 여부 분석

대학 유형별 대학지원정책 사업에 관한 특별법이 필요성 여부 분석 결과, 대부분의 대학이 필요성에 있어 보통 이상(3.84/5점)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전문대학(4.09/5점)의 경우 4년제 일반대학(3.61/5점)에 비해 특별법 필요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소속 대학 규모별 대학 지원 정책에 관한 특별법이 필요성 여부 분석 결과, 대규모 대학의 경우 필요성 인식의 경우 인식 정도가 전체 대학의 인식 정도에 비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중소대학의 경우에는 필요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단위: 점/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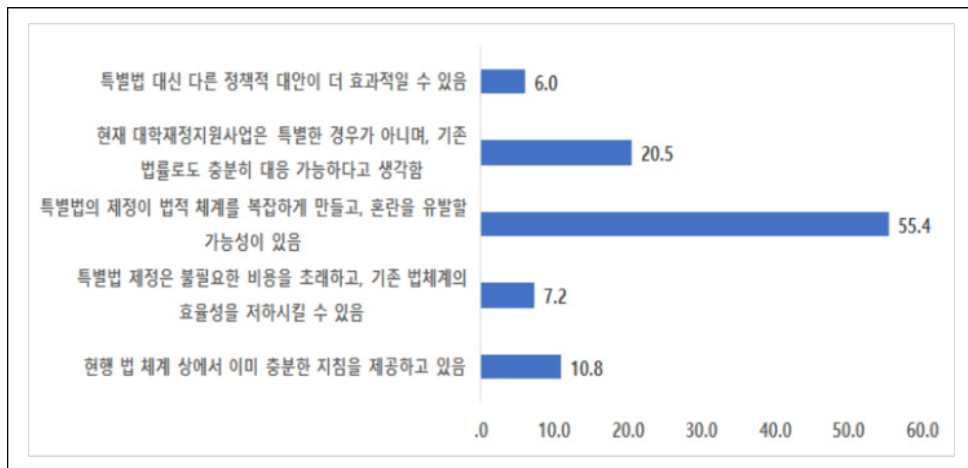


(9) 특별법이 필요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사항 분석

특별법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의 경우 특별법의 제정이 법적 체계를 복잡하게 만들고(55.4%), 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20.5%)을 가장 우려하고 있었으며, 현재 대학재정지원 사업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며, 기존 법률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25] 특별법이 필요하지 않는 이유 분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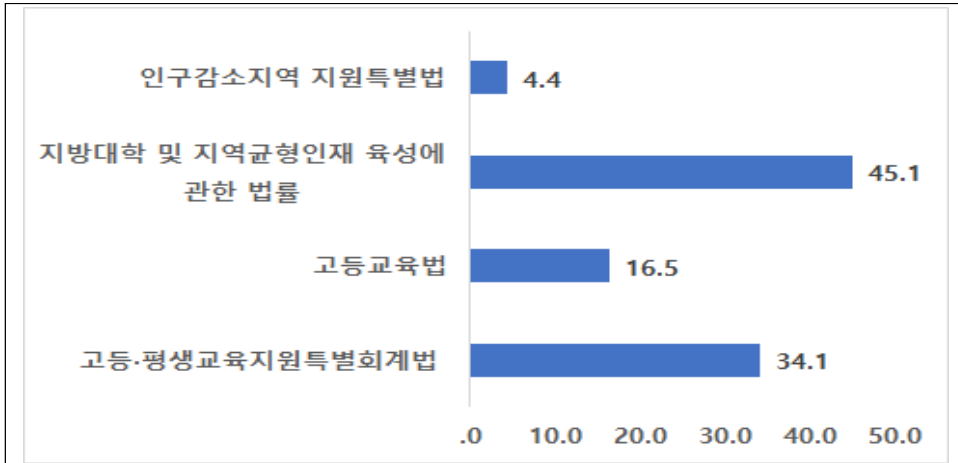


(10) 특별법이 필요하지 않다면, 대학지원정책 사업에 대한 규정을 어떤 법에 포함하는지 여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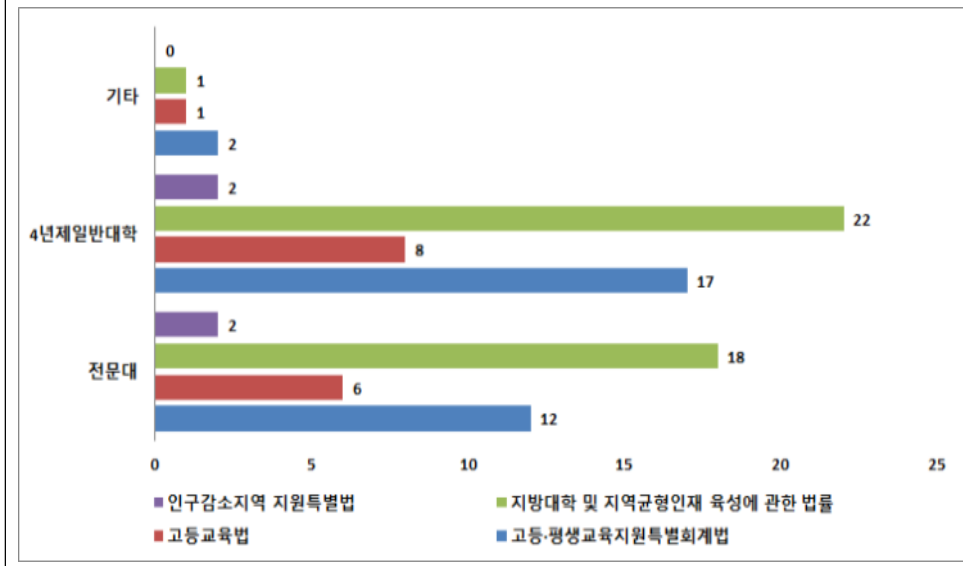
특별법이 필요 없을 경우 대학지원정책 사업을 어떤 법에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가장 높았다. 또한 대학 유형별 및 소속 대학 규모별 특별법이 필요하지 않다면, 대학지원정책 사업에 대한 규정을 어떤 법에 포함하는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도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그림 26] 대학 특별법 대신 대학지원정책 사업을 포함시킬 법률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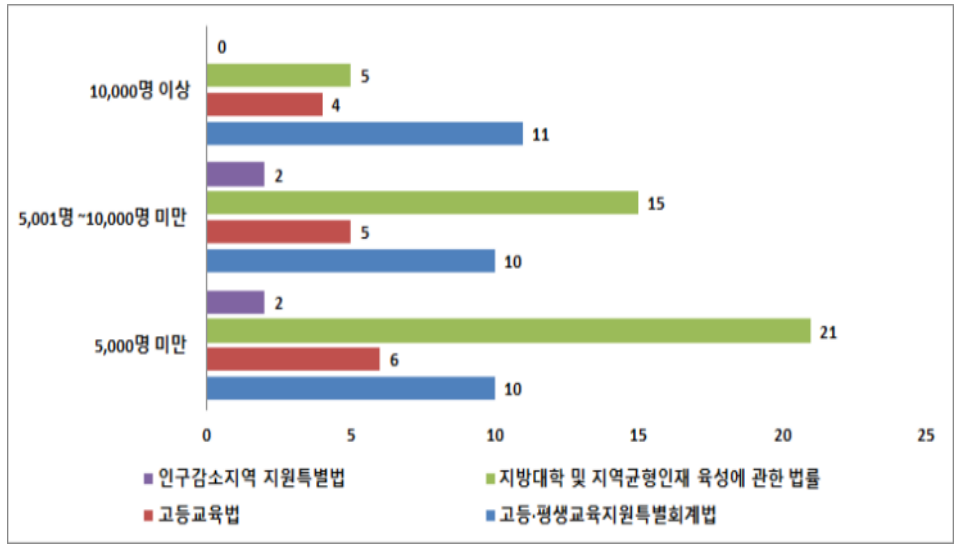
(단위: %)



[그림 27] 대학유형별 대학 특별법 대신 대학지원정책 사업 포함시킬 법률 분석



[그림 28] 대학 규모별 대학 특별법 대신 대학지원정책 사업 포함시킬 법률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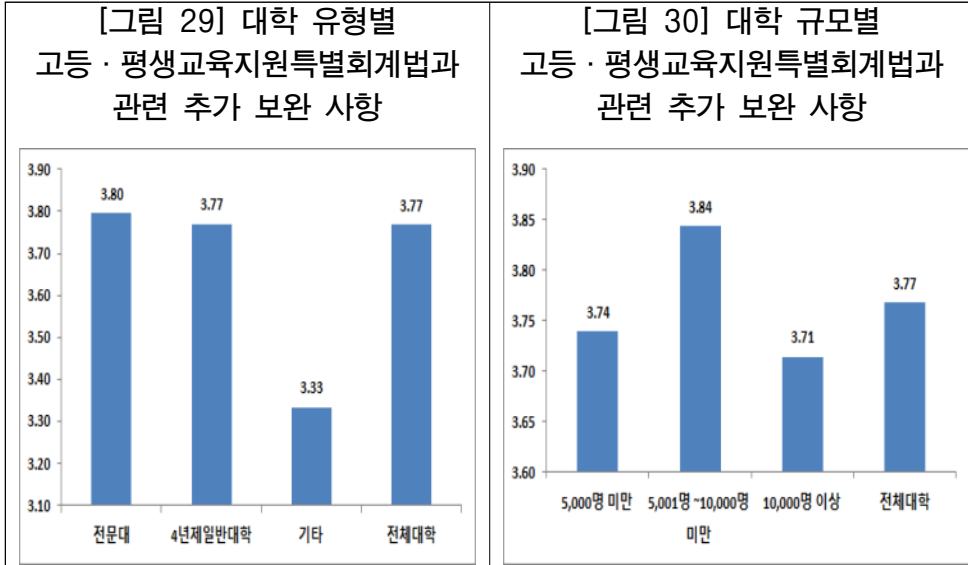


(11)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분석

대학 유형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분석 결과 보통(3.77/5점)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전문대학(3.80/5점)이 4년제 일반대학(3.77/5점)에 비해 높은 결과를 보였다.

대학 규모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분석 결과 중규모 대학이 가장 높게 응답(3.84/5점)하였으며, 소규모 대학(3.74/5점), 대규모 대학(3.71/5점) 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대학재정지원 사업 체계가 대규모 대학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단위: 점/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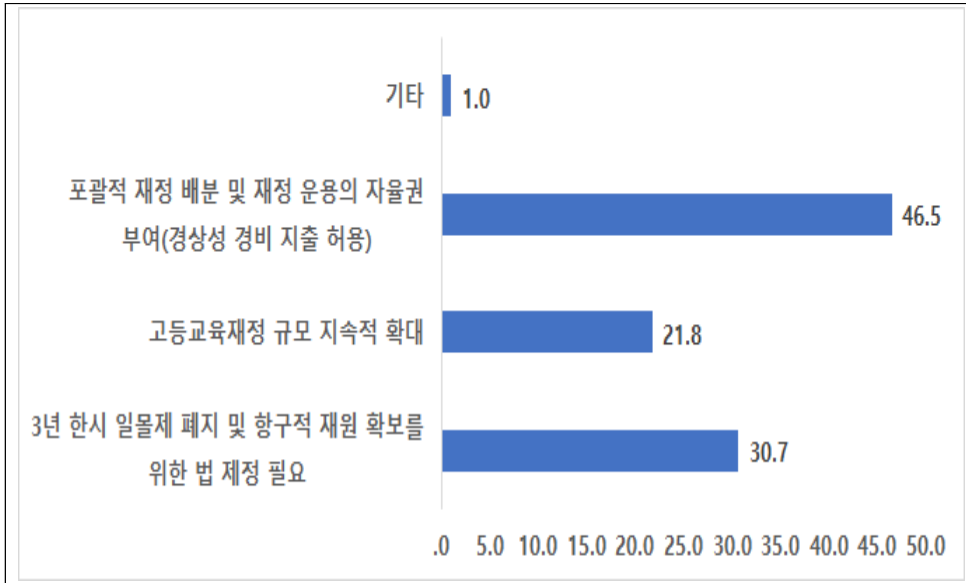
(12) 추가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사항 분석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보완 사항은 포괄적 재정 배분 및 재정 운용의 자율권 부여(경상성 경비 지출 허용), 3년 한시 일몰제 폐지 및 항구적 재원 확보를 위한 법 제정 필요, 고등교육재정 규모 지속적 확대 등의 순이었다. 또한, 대학 유형별 특별법이 필요하지 않다면, 추가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사항 분석 결과 4년제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경우 응답 비율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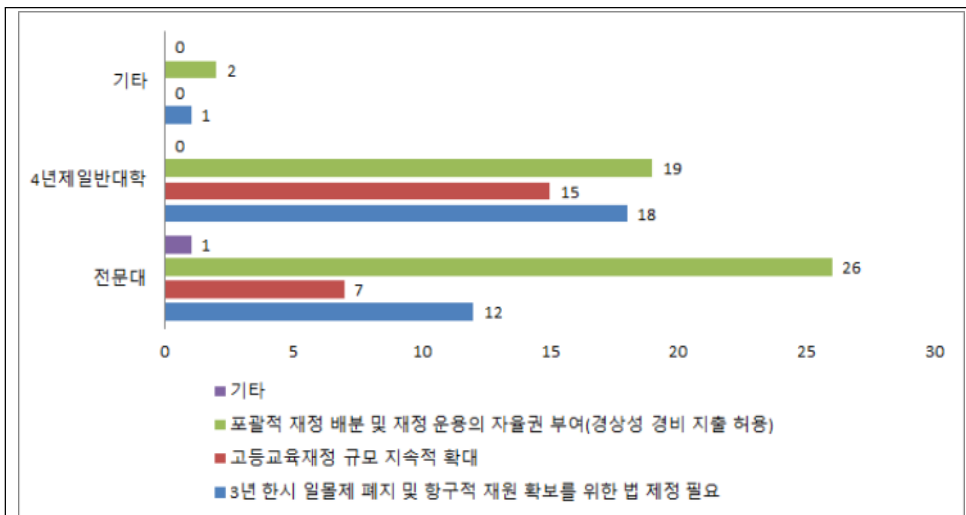
그리고, 소속 대학 규모별 특별법이 필요하지 않다면, 추가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사항 분석 결과 또한 대학 규모에 상관없이 동일한 값을 보였다.

[그림 31]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과 관련 추가 보완 사항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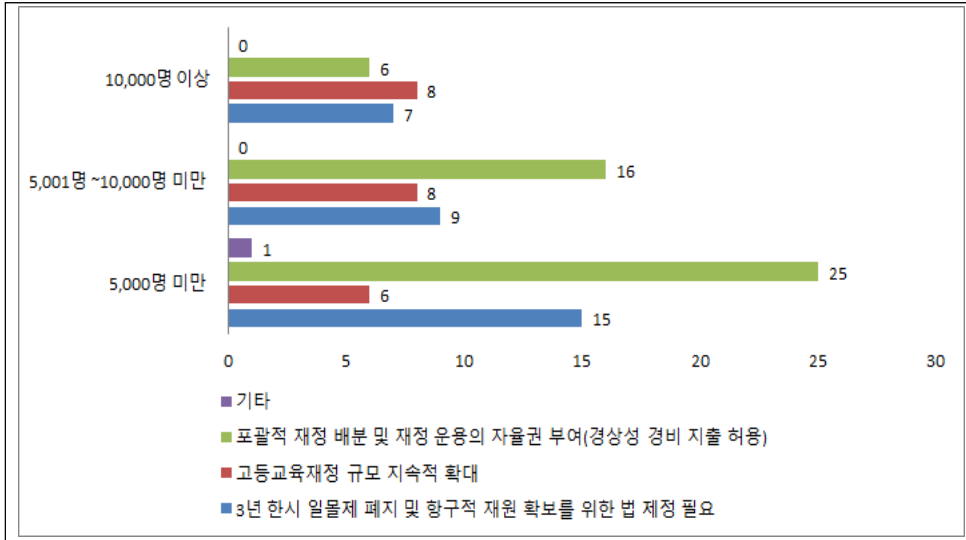


[그림 32] 대학 유형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과 관련 추가 보완 사항



[그림 33] 대학 규모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과 관련 추가 보완 사항

(단위: %)



(13) 대학 재정·세제 분야에서 규제 개혁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영역 분석

대학 재정·세제 분야에서 규제 개혁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영역 분석 결과, 1순위를 살펴보면 대학 재정·세제 분야에서 규제 개혁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 국가 장학금 II 유형 등록금 연계 정책 폐지(57.0%), 국책과제에 대한 대응 자금 부담 폐지 및 국가 R&D 사업 간접비 사용규제 완화(22.0%) 등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몰 규정 삭제를 통해 학교소유 교육용 부동산 지방세 연구면세 전환(7.0%), 수익용 토지 분리과세 폐지에 따른 재산세 부담 개선(5.0%) 등으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2순위는 국책과제에 대한 대응 자금 부담 폐지 및 국가 R&D 사업 간접비 사용규제 완화(2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몰 규정 삭제를 통해 학교소유 교육용 부동산 지방세 연구면세 전환(20.9%), 캠퍼스내 위탁 및 임대 운영 후

생복지시설에 대한 비과세(13.2%) 등의 순이었다.

3순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몰 규정 삭제를 통해 학교소유 교육용 부동산 지방세 연구면세 전환(24.6%), 캠퍼스내 위탁 및 임대 운영 후생복지시설에 대한 비과세(18.8%), 수익용 토지 분리과세 폐지에 따른 재산세 부담 개선(13%) 등의 순이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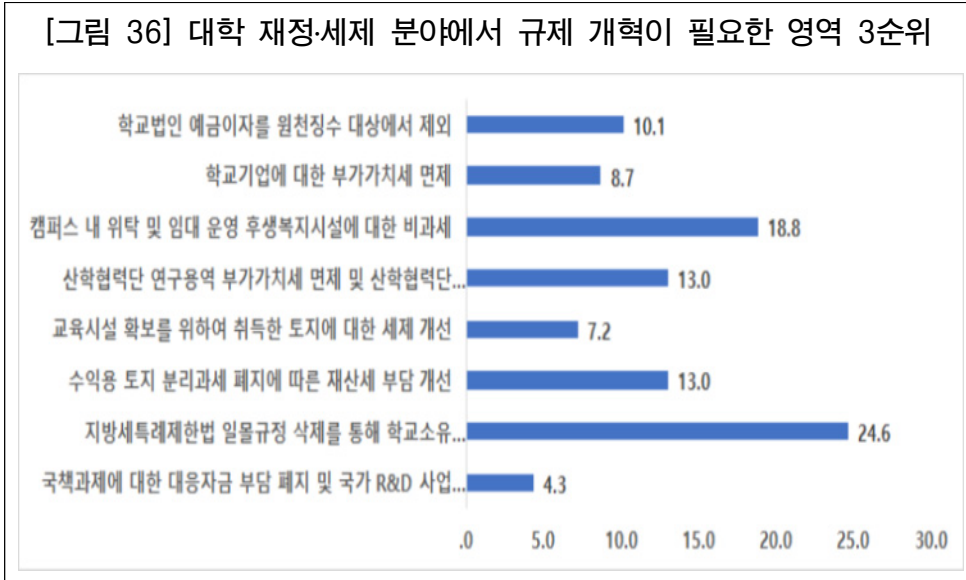
[그림 34] 대학 재정·세제 분야에서 규제 개혁이 필요한 영역 1순위



[그림 35] 대학 재정·세제 분야에서 규제 개혁이 필요한 영역 2순위



(단위: %)



(14) 기타 의견

지역대학의 지원 정책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 기타 의견을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시 주관식으로 질의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텍스트마이닝을 통해 범주화를 시킴으로써 중요한 내용들을 분석하였다. 기타 의견 분석 결과 RISE 체계 내 거점 국립대학 중심의 쏠림 현상에 대한 대응과 광역지자체의 역량 함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으며, 현 체계내에서는 옥상옥 형태의 참견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고등교육법 특례 규정의 제정으로 글로컬 대학의 학제 자율화 및 규제 개선 과제에 대한 선행 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고, 대학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자유롭게 투자하고, 특성화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일반재정지원사업에서 기타경비 및 인건비 사용 비율의 상향조정(현재 35%에서 50%까지)이 있어야 하며, 기초 지자체 규모, 보조금 편성 등에 따른 지역 대학 간 격차 확대 우려 등이 제기되었다.

대학일수록 국고지원의 기여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현 대학 재정 지원의 경우 선발에 있어 대학 규모가 큰 대학일수록 유리한 점에서 기인한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또한 기존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경우 지산학협력과 평생교육에 가장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인력양성, 지역정주 여건 개선, 창업지원 등으로 기여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창업지원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으나, 이는 대학지원정책 사업에서 창업에 대한 중요도를 강조하고 있는 현 정부 정책과는 괴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 향후 대학지원 정책 변경 시 지방대학의 위기를 불러오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예방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기여도가 낮게 나타난 지역정주 여건 개선과 창업지원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기존 교육부의 지원 정책의 경우 대학 간 형평성과 자율성 침해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각 대학의 주관식 답변을 통해서도 대학의 자율권과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차이에 대한 고려 등에 대한 형평성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고, 우리나라 고등교육 지원 정책의 전반적 방향성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대학이 보통으로 인식(3.84/5점)하고 있었다.

또한 정책 개편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지역적 특성과 대학들의 특성을 반영한 대학지원정책 사업(27.6%)이 가장 높았으며, 대학 지원 정책 목표와 수단에 공정한 배분 및 평등 고려(19.2%), 대학 특성화 저해 및 획일화 조장 방지(17.8%), 고등교육 전반 질 제고 확보(12.1%)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앞선의 주장과 비슷한 유형의 요구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향후 대학지원정책 사업(RISE, 글로벌대학 30)의 지자체 권한 이양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고등교육 부분에 대한 지자체의 전문성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대학 구조개

혁 혁신 방안 마련, 자산학연을 통한 지역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기존 답변의 연장선의 의견으로 수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지원 현황과 향후 과제’(2022)에서 제시한 것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대학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력의 양적 확대와 함께 관련 인력의 전문성 강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동일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또 다른 목적인 대학 유형별 대학지원정책 사업에 관한 특별법이 필요성 여부 분석 결과, 대부분의 대학이 필요성에 있어 보통 이상(3.84/5점)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전문대학(4.09/5점)의 경우 4년제 일반대학(3.61/5점)에 비해 특별법 필요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특별법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의 경우 특별법의 제정이 법적 체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을 가장 우려하는 결과를 통해서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기존 대학재정지원 사업의 경우 대부분이 4년제 일반대학의 혜택범위와 참여범위를 보장하고 있는데서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특별법이 필요 없을 경우 대학지원정책 사업을 어떤 법에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반영이 가장 높았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보완 사항은 포괄적 재정 배분 및 재정 운용의 자율권 부여(경상성 경비 지출 허용), 3년 한시 일몰제 폐지 및 항구적 재원 확보를 위한 법 제정 필요, 고등교육재정 규모 지속적 확대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대학 재정·세제 분야에서 규제 개혁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영역은 국가 장학금 II 유형 등록금 연계 정책 폐지, 국책과제에 대한 대응 자금 부담 폐지 및 국가 R&D 사업 간접비 사용규제 완화 등으로 대학들의 요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V. 교육기회균등을 위한 지역대학 지원 정책 개선 방안

1. 입법적 개선 방향 및 과제

교육기회균등을 위한 지역대학 지원 정책을 법률적으로 체계화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법적 기반을 바탕으로 지역대학의 발전과 교육 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육기회균등과 지역대학 발전을 위한 입법적 대응전략으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과 전문화된 법률들을 개정하는 방법이 있다.

가. 특별법 제정

특별법은 특정한 사안에 대해 적용되는 법률로, 일반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대학 유형별 대학지원정책에 관한 특별법의 필요성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대학이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인식했으며, 특히 전문대학이 4년제 일반대학보다 특별법의 필요성을 더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기회균등을 위한 지역대학 지원 정책의 추진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경우, 첫째,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 설정이 가능하다. 특별법은 특정 사안에 집중하여 목표와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으며 교육기회균등을 위한 지역대학 지원 정책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또한 특별법은 관련 분야에서 일반법보다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를 빠르게 실현할 수 있다.

둘째, 종합적인 정책 수립과 협력강화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특별법은 다

양한 정책 수단을 포함할 수 있어, 재정지원, 인프라 개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종합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대학,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강화하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셋째, 법률의 내용이 일관성에 의한 정책의 지속성이 보장될 수 있다. 특별법은 특정 주제에 대한 일관된 법적 틀을 제공하여, 혼선 없이 정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특별법으로 제정된 정책은 일관되게 유지되기 쉽고, 정치적 변화에 덜 영향을 받는다.

(1) 기존의 법제를 폐지하고 특별법 제정

교육기회균등을 위한 지역대학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고려할 때, 기존의 지방대학육성법을 폐지 여부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기존의 지방대학육성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한다면, 법적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현재와 미래의 교육정책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다.

특별법만 제정한다면 기존 법제의 모순점을 해결하고 보다 명확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새롭게 제정된 특별법이 교육기회균등을 위한 지역대학 지원에 대한 목표를 더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지역대학에 관련된 정책적 혼란을 줄일 수 있고, 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법률 체계가 간소화되어 관련 부처와 기관이 법적 기준에 맞추어 정책을 집행하기 용이하다.

그러나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경우 입법 절차의 복잡성과 시간적 한계가 있다.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은 입법절차의 복잡성과 여야간의 정치적 대립 등에 따라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특별법은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 아닌 개별적 구체적으로 규정되는 처분적 성격을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고, 법률개정이 필요할 경우, 절차가 복잡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

기존 법률을 유지한 채 특별법을 제정하면, 기존 법이 계속해서 효력을 유지하면서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법적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새

로운 정책 필요성을 충족할 수 있다. 다만, 두 법률 간의 중복이나 충돌 가능성에 대하여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법제가 여전히 유효한 정책적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면, 이를 보완하는 형태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2) 기존의 법제를 유지하면서 특별법 제정

기존 법을 유지하면서 특별법을 제정하면, 기존 제도의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여러 법률 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행정적 복잡성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특별법 제정이 기존의 지방대학육성법과 중복되거나 충돌하는 부분이 많지 않다면, 기존 법률을 유지하면서 특별법을 추가적으로 제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정책적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대학육성법이 현재 상황과 충돌하거나 법률 간의 모순이 발생한다면, 기존 법을 폐지하고 특별법을 제정하여 법적, 행정적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선택은 법률의 세부 내용과 그 법률이 다루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 그리고 현행 법률의 실효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나. 기존 법률 개정

본 연구에서 특별법을 제정보다는 기존의 법률의 개정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별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주된 이유는 법적 체계의 복잡성과 혼란 우려였다. 특별법이 없을 경우, 대학지원정책 사업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선호되었으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보완 필요성이 다수 제기되었다.

기존의 교육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교육기회균등을 위한 지역대학 지원

정책을 추진하면 첫째, 이미 존재하는 법적 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효율적이다.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은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보다 빠르게 시행될 수 있다. 기존 법률과 행정 구조를 활용할 수 있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없다.

둘째, 기존 법제의 부분적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적 특색과 변화에 유연한 정책 대응이 가능하다. 기존 법률의 개정은 필요한 부분만 수정하면 되므로,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전면적인 개정이 아닌 부분적인 수정만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셋째, 재정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 기존 법률 개정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기존 법률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재정적 지원의 출처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다. 기존 재원의 사용 방식을 재검토하고, 법률개정을 통해 우선순위와 사용 조건을 조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다. 기존 법률에 따른 재정지원 범위나 규모가 확대됨으로써, 교육기회균등을 위한 새로운 정책적 필요에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법률의 틀 안에서 개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을 포섭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기존 법률개정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부분적인 개선에 그칠 수 있다. 기존의 법률을 개정한다고 하여도 개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해결해야 한다. 기존 법률상 직접적, 반사적 이익을 얻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조율이 필요하여, 합의 도출이 어려울 수 있다.

기존 법률과의 조화, 일관성 유지가 어려워 정책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존 법률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개정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

(1) 지방대학육성법 개정

교육정책 및 지역대학 지원과 관련된 법률은 지역대학의 발전과 지역 균

형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행 지방대학육성법은 지역대학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재정지원 방법과 규모가 명확하지 않으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 계획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법률개정은 현행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대학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지방대학육성법 ‘제3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수도권 이외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조항은 지역대학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지만, 구체적인 재정 지원 비율 및 방법을 명시하지 않아 실행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대학을 지원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역대학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하고,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 지원을 위한 것이다.

동법 ‘제5조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항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 계획이 부족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별 특성에 따른 세부 육성 및 지원 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별 특화된 인재육성과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는 각 지역의 산업 및 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 및 연구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와 대학의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이처럼 법률개정은 시대적 요구와 사회 변화에 부응하여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고, 구체화 및 명확화를 통해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 특히 지역대학 지원과 관련된 법률개정은 지역대학의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따

라서 제시된 개정 제안은 현행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 효과적이고 공정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 할 수 있다.

(2)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

현행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첫째, 이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목적 조항은 대학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지역대학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래서 지역대학이라는 단서를 추가하여 ‘이 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연구, 운영 여건 개선 및 지역대학의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확하게 개정해야 한다.

둘째, 세출 항목의 불충분성이다. 현행 세출 항목은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 및 국가 인재양성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지역대학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지출 항목이 부족하다. 지역대학의 인재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개선 비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셋째, 한시법의 문제이다. 현행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지역대학에 대한 지원이 일시적이고 한시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한시법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하기 때문에 지역대학에 대한 지원이 일시적이고 한시적일 수 밖에 없다. 지역대학의 발전과 교육기회균등 실현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유효기간을 삭제함으로써 장기적인 정책 지원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한시법은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할 수 있다. 법률의 유효기간이 종료될 때마다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대학의 투자 계획이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유효기간을 삭제하면 매년 법률 갱신을 위한 행정 업무나 관련 예산 책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더 많은 자원을 직접적인 교육 지원에 투입할 수 있다. 지역대학의 발전과 교육기회균등 실현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유효기간을 삭제 또는 연장할 필요가 있다.

다. 검토

특별법 제정과 기존 법률개정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특별법 제정은 포괄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지만, 입법 과정의 복잡성과 예산 문제가 단점이다. 기존 법률개정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개정이 가능하여 포괄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기존 법률인 지방대학육성법과 고등교육·평생교육회계 특별법 등을 개정하여 최대한 활용한 후 추후 특별법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존 법률을 개정하여 빠르게 정책을 시행하고, 장기적으로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는 단기적인 대응과 장기적인 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방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법률 제정 및 개정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책의 수용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개정된 법률의 효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대학, 산업계,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도모해야 한다. 이러한 고려사항 등을 반영하여 법률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교육기회균등을 위한 지역대학 지원 정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정책적 개선 방향 및 과제

선행연구 분석 및 역대 정부의 지역대학에 대한 지원 정책 동향 분석, 설문조사 분석 등을 통하여 현 정부의 대학지원 정책에 대한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조사에서 기존 교육부 지원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대학 간 형평성과 자율성 침해가 가장 높게 나타나, 정부는 대학에 대해 지원은 하되 간섭은 최소화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대학은 자율성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자라나는 나무에 비유할 수 있다. 다양한 문헌 및 연구자들이 지적하고, 대학 등에서는 대학의 혁신 및 경쟁력의 제고와 지역산업과 연계한 인력양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자율과 책무라는 나무가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 주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대학을 둘러싼 각종 규제를 완화 혹은 철폐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설문조사에서 우리나라 고등교육 지원 정책의 전체적인 방향성에 있어 4년제 일반대학이 가장 잘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재정 지원 사업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구분하여 중복 지원 등에 대한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 정부의 핵심 대학지원 지원 사업인 두 사업은 목적이 대학의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특히, 대학가에서는 글로벌대학 선정 대학이 RISE 사업에서도 관련 영역에서 상대적 우위 선점을 통하여 재정 확보가 유리할 것으로 우려가 상존한다. 그러므로, 글로벌대학 30사업과 RISE 사업 간의 차별화를 통하여 중복 지원 등의 우려가 없도록 사업을 설계하고 지원하는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특정대학으로의 재정지원 쏠림 현상에 대한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

1차년도 글로컬대학 30에서 상대적으로 국립대학이 많았으며, RISE 사업 체계 하에서도 인적·물적 역량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국립대학으로의 재정 지원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앞 장의 설문조사 결과 분석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향후의 재정지원 사업이 기존의 5개 사업을 통합하고 일반지원 및 특별지원 방식이 혼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기는 하나 특정대학에 대한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도액 혹은 비율 설정 등을 고려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대학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대학기관평가 인증과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대학에서는 대학의 구조조정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설문조사에서 추가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과도 관련있는 제기되는 것이 재정지원금의 사용 제한에 대한 완화이다. 대학은 정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에 의해 대학재정 운영에 있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등록금 동결 정책이 변화하지 않는 한 이러한 대학재정 운영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학은 재정지원금을 일정 부분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RISE 체계하에서는 대학의 대한 예산 사용에 대해 지자체의 제약이 심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므로,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등의 노력으로 재정지원금의 일부를 경상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RISE 사업의 실행을 위해 RISE센터와 지역고등교육협의회를 통해 대학 지원 방향을 심의하고 조정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구조는 지역 내 대학의 통합적 지원, 자원 분배의 조정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여, 지역인재 양성, 지산학협력, 평생직업교육, 지역현안문제 해결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와 RISE센터가 대학재정지원의 중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제도적 및 재정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RISE 체계의 지자체 주도 재정지원에 대하여 지방대학육성법에 따라 아래 [표 12]와 같이 설치된 대학의 의견수렴을 위한 각종 위원회 등의 역할을 활성화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표 12] 지방대학육성법에 근거한 각종 위원회

위원회	단위	근거	목적·역할	구성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 지원 위원회	중앙	지방 대학 육성법 제8조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육성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교육부장관, 관계 중앙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광역자치단체장, 해당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 풍부한 자 등 20명 내외
고등교육 혁신특화 지역지정 관리분과 위원회	중앙	지방 대학 육성법 제8조의2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지정·변경·지정해제 및 특화지역계획의 확정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위원회에 내 설치 • 10-15명 내외, 위원장 교육부장관 •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 지원 협의회	시·도	지방 대학 육성법 제19조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 발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산업체, 연구기관 등이 참여 •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제정 • 위원장은 시·도 시장/지사(부시장/부지사)가 대부분임
지역협업 위원회	시·도	지방 대학 육성법 제19조	지역혁신체제 구축 및 지방대학의 지역혁신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장 • 고등교육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단위	근거	목적·역할	구성
			강화를 위한 지역의 협업체계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	사람도 공동위원장 가능 · 지역협업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여섯째, 현 정부에서는 지역대학의 재정지원과 관련하여서는 RISE 사업 추진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의 교육, 연구와 지역 사회의 경제 발전 사이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혁신과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기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즉 대학이 경제적 부가가치를 발생시켜 지역주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통로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마련한다(신하영 외, 2023).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대학에 대한 이러한 역할은 지역 대학의 재정 지원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이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고등교육 지원에 대한 입법적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방대학 육성법 제정과 지자체 조례, 지자체 내 대학 지원 전담 부서 신설 등 다양한 제안들이 있어 왔으며(김종성, 2019), 이러한 제도적 기반들이 갖추어질 때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대학에 대학 역할이 강화되고 제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곱째, 향후 대학 지원 정책사업(RISE, 글로벌대학 30)의 지자체 권한 이양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 설문 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지자체의 역할 강화에 따른 지자체 공무원의 고등교육과 대학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RISE 사업에 의해 대학 지원에 대한 권한이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의 이해와 역량이 대학과 지역 사회, 나아가 지역산업 발전의 주요한 기체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므로, 대학의 기능과 거버넌스, 학사제도, 연구개발, 교육과 봉사 역할 등에 대한 이해

와 역량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운영하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이다.

VI. 결론

본 연구는 국가 및 지자체, 지역대학의 지원 정책과 관련된 연구 및 정책 동향을 살피고 지역대학 지원 정책과 관련된 법률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지역대학의 지원 정책의 현황과 실태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실질적 교육기회 균등을 위한 지역대학 지원을 위한 입법적·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지역대학의 재정지원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정책동향을 분석하는 문헌 연구, 지역대학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법률 분석, 대학 지원에 대한 인식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입법적,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으며 입법 및 정책에 관한 실효성 높은 제언을 위해 관련 전문가 자문을 함께 진행하였다.

제 II절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의 지역대학 지원 정책 관련 연구 동향과 국가 및 지자체의 지역대학 지원 정책 동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국가 및 지자체의 지역대학 지원 정책 관련 연구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인 대학재정지원사업 분석, 지역대학의 고등교육재정지원 확충 방안, 지역대학 재정 지원 현황·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고등교육재정지원의 성과 분석, 지역대학 육성·생존·발전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외국의 대학 지원 정책 관련 선행연구에서 대학재정지원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정부가 대학을 직접적인 재정지원 외에도 지역사회와 대학 간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역에서 함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특정 국가에서는 정부와 대학 간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는 대학재정기구를 통해 대학별 재정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재정지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지역대학의 재정 지원 관련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제시하는 주요내용을 본 연구에서는 지역대학의 재정지원 문제점, 개선

방안, 그리고 지역대학의 육성·생존·발전 방안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역대학 지원 정책 동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역대 정부(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별 지역대학 지원 정책을 살펴 지역발전정책, 고등교육정책, 지방대학정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역대 정부별 지역대학 지원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도출하였다. 또한, 현 정부의 지역대학 지원 정책을 검토하고 그 중, 글로컬대학 30과 RISE 사업을 고찰하였다. 지역대학 지원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인력양성, 자산학 협력, 평생교육 등에서 지자체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의 마련과 담당자의 역량 제고를 위한 뒷받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 III절에서는 지역대학의 지원과 관련한 법률을 분석하였다.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과 국정과제, 2023~2024년 업무계획, 교육부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등 보도자료에 제시된 관련 법률안 추진 계획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한 시사점은 크게 4가지로 도출되었다. 첫째, 교육형평성 보장의 중요성으로 이를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지역대학에 대한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각 지역대학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지속가능한 재정 지원과 정책적 기반을 법제화해야 한다. 셋째,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책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마련하여 재정지원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대학의 특성,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역산업과의 협력 등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원정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제 IV절에서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역대학의 지원 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지역대학 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정책 및 입법 추진 전략과 방안 마련을 위하여 대학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다음의 4가지를 알 수 있었다.

첫째, 국고지원의 대학 재정 확충이나 대학의 실질적 발전 기여도는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대학 규모가 큰 대학일수록 국고지원의 기여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기존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경우 자산학협력과 평생교육에 가장 기여하고 있으며 인력양성, 지역정주 여건 개선, 창업지원 등으로 기여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현 대학 재정 지원의 경우 선발에 있어 대학 규모가 큰 대학일수록 유리한 점에서 기인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대학지원정책 사업에서 창업에 대한 중요도를 강조하고 있는 현정부 정책과는 다른 결과를 볼 수 있었는데, 지역소멸 예방을 위해서는 지역정주 여건 개선과 창업지원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기존 교육부의 지원 정책의 경우 대학 간 형평성과 자율성 침해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각 대학의 주관식 답변을 통해서도 대학의 자율권과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차이에 대한 고려,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원론적 경쟁력 차이에 대한 고려 등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을 알 수 있었다. 유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 고등교육 지원 정책의 전반적 방향성에 대하여 대부분의 대학이 보통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정책 개편을 위해 지역적 특성과 대학들의 특성을 반영한 대학지원정책 사업이 최우선으로 도출되었다. 다음으로 대학 지원 정책 목표와 수단에 공정한 배분 및 평등 고려, 대학 특성화 저해 및 획일화 조장 방지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대학지원정책 사업(RISE, 글로벌대학 30)의 지자체 권한 이양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고등교육 부분에 대한 지자체의 전문성이 제일 중요하고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대학 구조개혁 혁신 방안 마련, 자산학연을 통한 지역정주여건 개선 등으

로 의견이 수렴되었다. 이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지원 현황과 향후 과제(2022)’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대학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력의 양적 확대와 함께 관련 인력의 전문성 강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동일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대학 유형별 대학지원정책 사업에 관한 특별법이 필요성 여부 분석 결과, 대부분의 대학이 필요성을 보통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전문대학의 경우 4년제 일반대학에 비해 특별법 필요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특별법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로는 특별법의 제정이 법적 체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을 가장 우려하고 있었다. 이러한 견해는 대학재정지원 사업이 특별한 것이 아닌 기존 법률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보는 인식 및 기존 법률에 기반한 주요 혜택층이 전문대가 아닌 4년제 일반대학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서 기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별법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대학지원정책 사업을 어떤 법에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의 반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보완 사항은 포괄적 재정 배분 및 재정 운용의 자율권 부여(경상성 경비 지출 허용), 3년 한시 일몰제 폐지 및 항구적 재원 확보를 위한법 제정 필요, 고등교육재정 규모 지속적 확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대학 재정 및 세제 분야에서 규제 개혁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영역으로 교육 형평성 보장, 국가 장학금 II 유형 등록금 연계 정책 폐지, 국책과제에 대한 대응 자금 부담 폐지 및 국가 R&D 사업 간접비 사용규제 완화로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제V절에서는 2, 3, 4절을 바탕으로 한 시사점과 입법 및 정책관련 전문가 자문을 통해 교육기회균등을 위한 지역대학 지원 정책의 입법

적,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입법적 개선 방안으로 특별법을 제정 및 본 4절에서 전술한 법률 개정을 제안하였다. 특별법 제정은 보다 포괄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지만 입법 과정의 복잡성과 예산 문제가 단점이다. 한편으로 기존 법률 개정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책을 시행할 수 있지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개정이 가능하여 포괄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법률인 지방대학육성법과 고등교육·평생교육회계 특별법 등을 개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되, 장기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는 단기적인 대응과 장기적인 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이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정책의 수용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률 제정 및 개정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 도출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정책적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 및 역대 정부의 지역대학에 대한 지원 정책 동향 분석,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시사점 등을 통하여 글로컬대학 30과 RISE 사업을 중심으로 현 정부의 대학 지원 정책에 대한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대학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정부는 대학에 대해 지원은 하되 간섭은 최소화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야 하며, 재정지원금을 경상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둘째, 재정지원 사업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고 구분하여 중복 지원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특정대학으로의 쏠림 현상이 방지되어야 한다. 중복지원 및 특정대학에 대한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도액 혹은 비율 설정 등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지원의 중추적 역할 수행을 위한 제도적 및 재정적 기반 마련에 대한 입법적 논의와 지방자치단체와 RISE 센터에 대한 지

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대학에 대한 역할이 강화되고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방대학육성법에 근거한 각종 위원회 등의 역할을 활성화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대학 지원에 대한 권한이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의 이해와 역량이 대학과 지역사회, 나아가 지역산업 발전의 주요한 기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므로, 지자체의 역할 강화에 따른 지자체 공무원의 고등교육과 대학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관련 선행연구 및 관련 법률 분석, 국가와 지자체가 추진한 지역대학 지원 정책의 현황에 대한 인식 실태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입법적, 정책적 개선과제를 제시함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RISE 사업과 글로벌대학 30 사업의 지원 정책의 고찰을 통해 향후 고등교육 지원 정책 사업들의 방향을 모색하고 개선 과제를 제시함이 시의적절하고, 현장의 인식 및 요구사항을 실질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법적·정책적 개선 과제를 도출하였기에 현장 적용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본 연구를 통해 지역대학 지원의 바람직한 입법적, 정책적 개선이 이루어져 실질적 교육기회의 균등과 고등교육의 균형적 발전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바이다.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 「특성화를 위한 대학혁신 방안」, 2005.
- 교육부, 「지방대학 육성방안」, 2013.
- 교육부,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2021.
- 교육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시범지역 선정·운영 계획」, 2023.
- 김병주, 김민희, 이정미, 차성현, 서화정, 「고등교육 재정지원 계획 수립 연구」, 고등교육정책연구소, 2017.
- 김병주, 나민주, 이영,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고등교육재정 확보방안”, 교육재정연구, 2007, 16(1), 129-158.
- 김병주, 박동열, 허영준,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한 대학 특성화실태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2010, 19(4), 207-231.
- 김선연, 김병주, “대학의 재정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대학 성과 및 교육여건 차이 분석”, 교육재정경제학연구, 2020, 29(3), 147-172.
- 김수경, “한국과 영국의 대학재정지원기구 비교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022, 29(2), 261-280.
- 김정희,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정책 연구: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013, 17(1), 105-135.
- _____, “중앙정부 재정지원사업을 통해서 본 지방대학 육성정책의 한계와 과제: 수도권과 동남권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2013, 25(4), 219-247.
- 김종성, “지방정부의 지역대학 지원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안”, 사회과학연구, 2019, 30(3), 69-91.

- 김태현, 이태희, 윤기학, 「서울의 대학·지역사회 협력실태와 증진방안」, 서울연구원, 2017.
- 김학표, 신경순, 이상민, 곽윤식, “지방대학의 생존을 위한 행·재정 효율화 정책 연구: K대학 실증사례 중심”, 한국정보기술학회논문지, 2024, 22(1), 215-222.
- 나민주, “영국의 대학재정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2003, 12(23), 169-195.
- 나민주, 장지현, “지방자치와 고등교육재정의 성과와 과제”, 교육재정경제학연구, 2010, 19(3), 1-34.
- 류연택, 정희선, “대학-지역사회 파트너십과 지역사회 개발: 미국의 대학-지역사회 협력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007, 10(2), 89-103.
- 류장수, 백성준, 남기곤, 「지방대학·전문대학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2010.
- 문보은, 서영인, 최상덕, 윤진권, 이지영, 「대학재정지원 성과와 개편과제: 대학 혁신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2021.
- 박동찬, 「기초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 재정지원과 대학의 교육·연구 기능이 지역사회 경제적 발전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4.
- 박지윤, 조정래, “지방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과 영향요인 분석: 기초자치단체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014, 28(4), 417-447.
- 변기용, 이석열, 라은중, “교육부 대학 재정지원 사업 평가체제에 대한 메타평가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017, 35(5), 275-302.
- 변기용, 이석열, 변수연, 송경오, 서경화, “지방대학의 관점에서 본 현행 대학

- 재정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교육행정학연구, 2017, 35(3), 79-108.
- 변기용, 이석열, 송경오, 변수연, 「지방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본 현행 대학 재정 지원 사업 및 평가체제 발전 방안」, 대통령직속지역발전위원회, 2016.
- 서영인, 홍영란, 김미란, 김병주, 권도희,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 진단 및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7.
- 송기창, “대학재정지원정책의 과제와 개선 방향”, 교육재정경제연구, 2000, 9(2), 1-25.
- 송선영, “일본의 대학지원정책 동향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논문집, 2007, 23(2), 5-31.
- 신하영, 박소영, “지역연계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나타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쟁점”, 교육정치학연구, 2023, 30(4), 457-483.
- 윤정일, 「교육재정학원론」, 세영사, 2004.
- 이달곤, 김철희, 「지역혁신체제 구축과 지방대학 지원정책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7.
- 이덕난, 이일용, “이명박 정부 대학규제 개혁정책의 성과 분석: 대학자율화정책을 대상으로”, 교육정치학연구, 2024, 21(2), 25-54.
- 이덕난, 김범주, 조인식 외,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제8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2024.8.19.
- 이태호, 엄태호, “지방자치단체의 고등교육재정지원에 관한 탐색적 연구: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소멸위험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22, 34(2), 149-180.
- 이필남, 홍지인, “정부 재정지원이 대학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교육재정경제학연구, 2019, 28(4), 27-50.
- 장아름, 「대학재정지원정책 변화에 대한 역사적 신제도주의 분석」, 고려대학

- 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 장후은, 이종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대학 지원사업 추진 실태와 정책과제: 산학협력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018, 24(1), 99-110.
- 정영길, 배상훈, 김우승, 이재훈, 「지방거점대학 육성 및 특성화 방안 연구: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중심으로」, 교육부, 2013.
- 정재민, 「옹호연합모형(ACF)을 활용한 대학재정지원정책 분석」,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3.
- 조인식,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지원 현황과 향후 과제」, NARS 입법·정책 제118호, 국회입법조사처, 2022.12.21.
- 채윤정, “윤석열 정부의 지방대학 정책의 전망과 과제: RISE와 글로컬대학 30 정책 추진을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023, 24(9), 360-366.
- 최미리, “한국과 미국 여자대학의 교육재정 비교 연구”, 교육행정학회, 2008, 26(4), 265-292.
- 최정윤, 강충서, 김나영, 백승주, 임후남, 정혜주, 조옥경, 서재영, 정동열,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정책의 종합진단 및 발전방안」, 한국교육개발원, 2022.
- 하봉운, 강호수,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 지원 현황과 과제: Cooper의 4차원 정책분석 모형을 중심으로”, 국정관리연구, 2013, 8(2), 1-27.

<부록 1> 설문지

교육기회균등을 위한 지역대학 지원 정책의 추진실태 및 개선 과제 도출을 위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매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2024년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용역 사업으로 “교육기회균등을 위한 지역대학 지원 정책의 추진실태 및 개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설문조사입니다.

이 설문지는 이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지역대학 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정책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잠시 시간을 내서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사과정에서 얻은 모든 정보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제1, 2항에 의거 통계 목적 이외에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 ◎ 설문기간: 2024.05.20. ~ 05.27. (8일간)
- ◎ 주관기관 :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
- ◎ 응답방법 : E-mail (peterfanland@naver.com) 및 구글폼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본 설문조사는 교육기회균등을 위한 지역대학 지원 정책의 추진실태 및 개선과제 도출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귀하의 개인식별정보(담당자명 및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 고유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등)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PART 1. 기본 현황 조사

Q1. 귀하의 소속대학의 설립 유형은?

- ① 국·공립(국립대법인, 특별법국립, 특별법법인 포함) ② 사립

Q2. 귀하의 신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교수 ② 교직원 ③ 기타

Q3. 귀하가 해당기관에 근무한 경력은 얼마나 되십니까?

- ① 5년 미만 ② 10년 이상 ③ 15년 이상 ④ 20년 이상

Q4. 귀하의 소속대학 유형은?

- ① 전문대학 ② 4년제 일반대학 ③ 기타

Q5. 귀하의 소속대학 권역은?

- ① 수도권 ② 대구·경북·강원권 ③ 부산·울산·경남권 ④ 충청권
⑤ 호남제주권

Q6. 귀하의 소속 대학 재학생 수는?

- ① 5,000명 미만 ② 5,001명 ~10,000명 미만 ③ 10,000명 이상

PART 2. 재정지원사업 문제점 및 향후 방향성

Q7. 국고지원이 대학재정 확충이나 대학의 실질적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	기여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기여한다	매우 기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Q8. 기존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 등에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응답)

문제없다	대학 자율성 침해	대학 간 형평성 문제	사업간 유사 중복 발생
①	②	③	④
고등교육 전반 질 제고 미흡	특성화 저해 및 획일화 조장	사업운영의 비체계성 및 비효율성	명확한 근거법령 부재
⑤	⑥	⑦	⑧
교육의 안정성 미확보	대학 간 격차 확대	평가지표 및 평가 체제의 신뢰성과 타당성 미흡	기타
⑨	⑩	⑪	⑫

Q9.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전체적인 방향성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Q9-1. 재정지원 방향성이 좋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Q10.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지원사업 RISE에 대해 어느 정도나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른다	모르는 편이다	보통이다	알고 있는 편이다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Q11.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지원사업 글로벌대학30에 대해 어느 정도나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른다	모르는 편이다	보통이다	알고 있는 편이다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Q12. 정부가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재개편한다고 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응답)

- ① 지역적 특성과 대학들의 특성을 반영한 대학재정지원사업
- ② 대학재정지원 목표와 수단에 공정한 배분 및 평등 고려
- ③ 사업 간 유사·중복 발생 방지
- ④ 고등교육 전반 질 제고 확보
- ⑤ 대학 특성화 저해 및 획일화 조장 방지
- ⑥ 명확한 근거법령 마련
- ⑦ 평가지표 및 평가체제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
- ⑧ 사후관리와 피드백
- ⑨ 기타

Q13. 대학재정지원사업(RISE)이 대학재정 확충이나 대학의 실질적인 발전에 어떤 측면에서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	기여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기여한다	매우 기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① 인력양성					

② 자산학협력					
③ 평생교육					
④ 지역정주 여건 개선					
⑤ 창업지원					
※ 위의 내용 이외에 추가로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제시해 주세요. ☞					

Q14. 대학재정지원사업(RISE, 글로컬대학 30)의 지자체 권한 이양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 ① 재정지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한 투명성, 공정성 보장
- ② 고등교육 부분에 대한 지자체의 전문성 결여에 따른 우려
- ③ 지역 및 지역대학의 특성을 고려하는 지자체-대학 간 협력 거버넌스
- ④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에 따른 재정 지원 및 배분 방식에 따른 우려
- ⑤ 거시적,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지원 목적에 따른 이원화 및 점진적 단계적 이양
- ⑥ 자율권과 독립권 보장
- ⑦ 정치적 영향 최소화
- ⑧ 지자체 권한 이양에 대한 부정적 의견
- ⑨ 기타

Q15. RISE 체계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 ①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대학 구조개혁 혁신 방안 마련
- ② 학생 장학금 확대
- ③ 산학협력 분야 확대
- ④ 지산학연을 통한 지역정주여건 개선
- ⑤ 창업분야 활성화
- ⑥ 평생교육체계 마련 및 지역내 확대
- ⑦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 ⑧ 기타

Q16. 글로벌대학 선정이후 컨설팅을 받아 보셨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Q16-1. 글로벌대학 선정이후 컨설팅을 받아 보셨을 때 대학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 자율성을 많이 보장 받아 최대한 대학 특색을 반영하였습니까?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Q16-2. 글로벌대학 선정이후 컨설팅을 받아 보셨을 때 대학 최초 계획에서 많이 수정을 하였습니까?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Q17. 대학 재정지원 사업에 관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Q18. 특별법이 필요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현행 법 체계 상에서 이미 충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음
- ② 특별법 제정은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하고, 기존 법체계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
- ③ 특별법의 제정이 법적 체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 ④ 현재 대학재정지원사업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며, 기존 법률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생각함
- ⑤ 특별법 대신 다른 정책적 대안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
- ⑥ 기타 (주관식: _____)

Q19. 특별법이 필요하지 않다면, 대학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규정을 어떤 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 ② 고등교육법
- ③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 ④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⑤ 기타 (주관식: _____)

Q20.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Q20-1. 추가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 ① 3년 한시 일몰제 폐지 및 항구적 재원 확보를 위한 법 제정 필요
- ② 고등교육재정 규모 지속적 확대

- ③ 포괄적 재정 배분 및 재정 운용의 자율권 부여(경상성 경비 지출 허용)
 ④ 기타 _____

Q21. 대학 재정·세제 분야에서 규제 개혁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영역은 무엇입니까?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우선순위 번호			

- ① 국가 장학금 II 유형 등록금 연계 정책 폐지
 ② 국책과제에 대한 대응자금 부담 폐지 및 국가 R&D 사업 간접비 사용규제 완화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몰규정 삭제를 통해 학교소유 교육용부동산 지방세 연구면세 전환
 ④ 수익용 토지 분리과세 폐지에 따른 재산세 부담 개선
 ⑤ 교육시설 확보를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한 세제 개선
 ⑥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및 산학협력단 지방세제 개선
 ⑦ 캠퍼스 내 위탁 및 임대 운영 후생복지시설에 대한 비과세
 ⑧ 학교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⑨ 학교법인 예금이자를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
 ⑩ 기타 _____

Q22. 교육기회균등을 위한 지역대학 지원 정책의 추진실태 및 개선과제 도출을 위해 추가적인 의견 및 제안사항이 있으시면 기재해 주십시오.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록 2〉 기타 설문 의견 세부 내용

- RISE를 통한 지원의 경우 광역지자체의 일방적인 사업 목표에 따라 배분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 외 지역 거점 국립대학을 포함한 도가 위치한 지역에 대한 쏠림현상 방지, 지역 정주형 인재양성의 경우 지역에 큰 산업단지가 없는 경우 지역 정주를 시킬 수 있는 동력이 떨어졌다.
- 고등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특정 목적의 예산 지원 체계로 개편
- 학생 1인당 교육비를 OECD 기준에 맞도록 상향조정이 필요함. 등록금 자율화 및 재정지원 사업을 통한 대학별 특성화 지원 계획이 필요하다.
- 고등교육법 특례 규정의 제정으로 글로벌 대학의 학제 자율화 및 규제 개선 과제에 대한 선행 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 지방의 고등교육에 대한 전문성 확보 시까지 RISE의 점진적 추진
-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한 별도 재정적인 예산 지원 필요하다.
- 수도권에 본교가 있는 지방 소재 제2캠퍼스의 경우 분교와 차별을 받고 있는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지역대학에 교육 기회 균등을 위한 별도 예산 지원
- RISE 체제에서 영향력 있는 일부 대학에 재정지원 편중을 방지해야 한다.
- 일률적인 지원 보다는 현재와 같이 평가를 통하여 우수 대학으로서 검증된 대학에만 지원하는 것이 좋으며, 나눠주기식 지원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 대학재정지원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

-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재정 지원 방안(4년제와 전문대, 수도권과 지방, 대학의 규모별 차등 지원, 특성화 대학 지원 방안 등)
- 지자체 권한 이양 후 지역 내 정치적 영향력 최소화, 획일적 균등 배분 지양, 대학 특성화를 고려한 집중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보완 필요하다.
- 교육 자율성과 교육이 가지는 공공재적 성격을 조화롭게 해낼 수 있도록 하며, 인적자본에 대한 정부 지원 방향의 큰 지향점의 개선에 노력 필요하다.
- 중앙정부의 지자체 이양을 위한 RISE 체계의 근본적인 취지는 좋으나, 지역 지자체의 기본적인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역량이 부족하여 제2의 갑질의 행태로 대학에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지자체 정책을 대학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반강제적 정책 반영과 직접적인 공생 참여보다는 시어머니 노릇만 하고 있음. 지자체의 역량 강화 없이 RISE 체제는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 고등교육재정지원법(가칭) 만들어 지방대학의 경상비 지원(인건비, 공공요금 등)과 교육 정책 실현을 위한 다양한 재정지원사업을 마련하여 대학별 성과평가를 통한 차등 지원(지역, 규모, 특성화 등에 따라 선정 지원) 필요하다.
- 지역대학 선정 시 큰 대학만 재정지원사업을 독점하는 방식은 소규모 대학에게는 불리할 수 밖에는 없다. 큰 대학과 작은 대학들이 골고루 사업비를 받아 학교와 학생들에게 교육환경의 질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현장실습비, 간호 임상실습비 등 학생들의 현장실습에 따른 근로비 지원(학과에 따라 실습내용이 현직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이 많다)

- 지역대학의 교육 환경과 연구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최신 교육 장비와 연구 시설을 갖추는 것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
- 일반재정지원사업에서 기타 경비 및 인건비 사용비율의 상향조정(현재 35%에서 50%까지)
- 대학 자율성이 확보된 재정지원
- 지역대학의 정의에 제2캠퍼스 대학을 포함하여야 한다. RISE 체계에는 제2캠퍼스 구분을 하지 않고 있으나, 아직도 여타 인력양성사업에서 지역대학 가점 등의 불평등,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등의 면에서는 불이익이 존재한다. 지역학생이 제2캠퍼스에서 수학하고 지역인재로 남을 수 있도록 규제가 없어지기를 바란다.
- 대학설립준칙주의에 따라 대학이 난립 하도록 만든 정부가 지난 정책의 실패에 따라 대학을 구조조정하는 취지와 방향은 공감하나 공격적 재원과 인센티브를 통해서 정책이 실현되어야 한다. 특히 대학 구성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실효적인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 지역 범위를 검토할 시 수도권 외곽의 역할한 지역(경기 남, 북부 등) 등도 함께 고려하여 균형적 정책 입안이 될 수 있도록 검토
- 대학의 규모와 발전 계획에 따른 지원 후 자율적인 집행하도록 체계 변환 필요
-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각 시·도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지향해야 한다.
- 지역과 대학의 상생협력을 위한 지역의 균등 자원 배분 요구

-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 권역간 대학 산재 분포 및 규모별 안배에 따른 재정 지원 및 합리적 배분 방식 필요(비수도권 역차별 불식)
-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지역 정주 인력양성을 위한 (심할 정도로) 중복된 정부 재정 지원사업을 통폐합하고, 대학의 실질적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교부금 성격의 재정지원(교부금법 등)을 통해..대학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자유롭게 투자하고, 특성화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현재는 단기적 성과달성 위주의 심하게 노동력을 착취하는(행정력을 낭비하는) 재정지원사업 추진 형태이다. 이미 대학 예산은 각종 평가 등 저임금의 노동 강도가 심한 3D업종이 되어 버렸다. 단, 부정 비리 대학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등 과감한 정책이 병행되어야 하겠다.
- 지방과 수도권의 평가를 교육인프라와 성과를 기준으로 절대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특히 지방소재 캠퍼스만을 강제적으로 서울 소재 본교와 일원화시켜,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헌적이라 할 수 있다.
- 지역대학을 포함하여 고등교육을 위한 대계를 수립하고 그 바탕 위에 대학에 대한 지속적, 안정적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대학교육은 고등교육으로 국가경쟁력의 근간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를 획일적인 잣대로 들이댄다면 우리는 노벨상을 비롯한 경쟁력 있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화분에 꾸준히 물을 주듯이 대학에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계획할 필요가 있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몇 년짜리 사업으로 성과를 내겠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다. 학과를 하나 만들거나 없애도 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소 7년(남학생 군휴학 및 졸업 후 진로 확인을 위해)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대학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학지원도 장기적 지원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할 필요가 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비인기학과이나 국가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초 학문은 국립대학에서 부담하게 하고, 사립대학은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인력을 양성하므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 학력 인구 감소로 인한 모든 대학의 어려움이 발생됨에 따라 대학이 자발적이고 스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대부분 대학이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대학평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원정책 수립시 이에 대한 고민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 재정지원사업이 많아 기회가 늘어나는 것은 좋으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학생, 평가의 피로도가 너무 높다. 학생들이 사업 참여를 기피하고 참여율도 저조하게 된다. 등록금이 장기간 동결되고, 학교가 인적 재원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가져가려면 보수 및 관리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상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 경쟁보다 소통. 융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 명확한 가이드라인 필요하다.
- 글로벌대학, RISE체계 등 기존 교육부의 재정지원 권한이 지자체로 대거 이관됨에 따라 지방 거점 국립대 위주의 재정지원으로 방향성이 잡혀가고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우려된다.. 차라리 사업 수주와 재정지원 시 국립대와 사립대를 따로 구분하여 국립대간 또는 사립대간 제한경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재의 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제안한다.
- RISE 체계에 대한 교육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 재정지원사업에 있어서 자율성(경상비 사용 등 대체 사업 다양화) 보장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수도권정비법에 따른 수도권 역차별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 됨.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 사업에 수도권 대학들이 원칙적으로 배제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고, 정부 재정지원에 따라 비수도권 대학의 약진에 비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며, 대외 평가에서도 지속적으로 수도권 대학의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 대학 구분없이 공모할 경우 일반대, 전문대의 학교설립 목적 및 운영성과 등 특성을 적절히 반영할 수 없다.
- 취업률/지역 산업체 취업 등 일반대 및 타권역 전문대학 대비 지역 정주 효과가 우수함에도 재정지원 규모가 축소되면서 교육 활동 등이 위축되어 지역 정주 효과가 저하될 수 있다.
- 연구중심/행정관리 중심 일반대와 현장실무/기술 전문인력양성중심 전문대학은 교육과정, 인력 양성 방법, 산학협력, 지역사회 기여 등에서 각각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 동일 프로젝트내에서 일반대와 전문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과제 설정 필요
- 기초 지자체 규모, 보조금 편성 등에 따른 지역 대학간 격차 확대 우려
- 기초 지자체별 자율적 편성되는 보조금이 대학의 지정학적 제약에 더해 대학간 지원금차별이 더커지는 문제 발생 가능
- 타재원의 희생없이 총량 증가가 필요. 예측 가능한 재정지원 규모 예고 필요
- 교육부 의도에 따라 대학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

- 대학 자율에 의한 재정지원사업을 운영하기 보다 연구재단의 운영지침에 의해 예산 집행의 자율성이 제한받고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현재 대학의 평가체계(재정진단 등)는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의 역할이 아닌 일반 사업체의 경영 성과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 재정지원 방향이 목적성 사업의 운영으로 추진, 교육은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 필수, 기본요소임. 사업이 아닌 교육 그 자체로 수용될 수 있길 바란다.
- 획일화된 성과지표에 따른 사업비 배분
- 재정지원을 통한 대학 격차 확대, 대학 특성화 저해, 지속가능성 약화
- 장기적인 등록금 동결로 인한 지방대학의 재정건전성 악화로 시설 개선 및 신규 투자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되어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필요